



2026. 6. 30.

국회에산정책처 | 사업평가

금융취약계층 지원 채무조정제도 운영 평가

이병철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금융취약계층 지원 채무조정제도 운영 평가

금융취약계층 지원 채무조정제도 운영 평가

총괄 | 김경호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작성 | 이병철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예산분석관

지원 | 이연지 경제산업사업평가과 행정실무관
홍채원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자료분석연구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 02) 6788-3777 | eie@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금융취약계층 지원 채무조정제도 운영 평가

2026. 6.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6. 6.18.)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요 약 / 1

I. 서론 / 1

- 1. 평가 배경 및 목적 1
- 2. 평가 방법 및 구성 6

II. 현황 / 9

- 1. 채무조정제도 개요 9
- 2. 채무조정제도 운영 현황 14
 - 가. 상시적 채무조정제도 14
 -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14
 - (2)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제도 18
 - (3)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제도 20
 - 나. 한시적 채무조정제도 22
 - (1) 새출발기금 22
 - (2) 새도약기금 24

III. 주요 쟁점 분석 / 27

- 1. 상시적 채무조정제도 27
 - 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27
 - (1) 취약계층 채무원금 감면율과 채무상환 기간 개선 필요 28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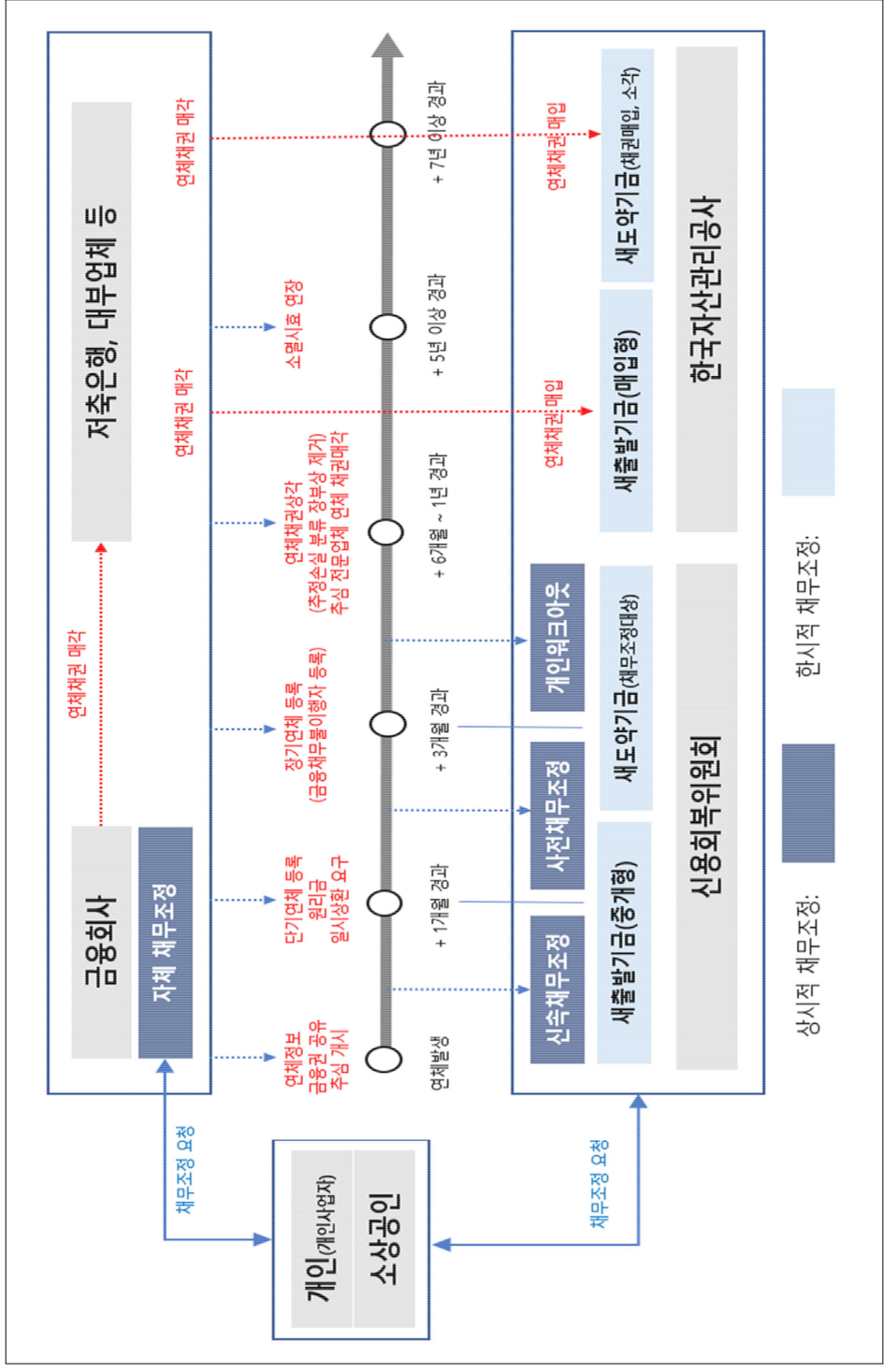
(2) 채무조정 체결 절차 및 채무 감면 방식 개선 필요	38
(3) 비금융채권의 채무조정 확대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의 활성화 필요	45
나.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제도	54
(1)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제도 활성화 필요	54
(2) 공공기관 개인금융부실채권의 지속적인 조정정리 및 채무조정 필요	63
2. 한시적 채무조정제도	85
가. 새출발기금 및 새도약기금 채무조정제도	85
(1) 새출발기금 운영방식 개선 필요	85
(2) 새도약기금 채권매입 및 채권 소각 촉진 방안 마련 필요	92
나. 채무자 도덕적 해이 방지와 성실상환자 형평성 제고	99
3. 채무조정제도 운영체계	103
가. 채무조정제도 운영기관	103
(1) 신용회복위원회의 합리적인 기관 운영 방안 마련 필요	103
(2) 한국자산관리공사 재무건전성 개선 필요	112
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체계	115

IV. 결론 및 시사점/ 124

< 한 눈에 보는 채무조정제도 운영 평가 >

<p>분석 배경</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data-bbox="342 274 614 548"> <h3>[가계 및 자영업자 부채]</h3> <p>자료: 한국은행</p> </div> <div data-bbox="628 274 899 548"> <h3>[장·단기 연체 채무자]</h3> <p>자료: 금융위원회</p> </div> <div data-bbox="913 274 1185 548"> <h3>[개인회생·채무조정 신청]</h3> <p>자료: 대법원, 신용회복위원회</p> </div> </div>																						
<p>제도 개요</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data-bbox="314 578 828 754"> <h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h3>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신속채무조정</th> <th>사전채무조정</th> <th>개인워크아웃</th> </tr> </thead> <tbody> <tr> <td>대상</td> <td>연체기간 30일 이하</td> <td>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td> <td>연체기간 90일 이상</td> </tr> <tr> <td>지원 내용</td> <td>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조정, 추심중단, 단기연체정보해제 등</td> <td>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조정, 추심중단, 단기연체정보해제 등</td> <td>채무감면,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조정, 추심중단, 연체정보해제 등</td> </tr> </tbody> </table> <p>자료: 신용회복위원회</p> </div> <div data-bbox="842 578 1178 754"> <h3>[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h3>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새출발기금</th> <th>새도약기금</th> </tr> </thead> <tbody> <tr> <td>대상</td> <td>자영업자 연체 90일 이상</td> <td>개인(개인사업자) 연체 7년 이상</td> </tr> <tr> <td>지원 내용</td> <td>순부채 기준 60~80% (취약계층 최대90%)</td> <td>상환능력 심사 후 일괄 소각 또는 채무조정</td> </tr> </tbody> </table> <p>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p> </div> </div>	구분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대상	연체기간 30일 이하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연체기간 90일 이상	지원 내용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조정, 추심중단, 단기연체정보해제 등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조정, 추심중단, 단기연체정보해제 등	채무감면,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조정, 추심중단, 연체정보해제 등	구분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대상	자영업자 연체 90일 이상	개인(개인사업자) 연체 7년 이상	지원 내용	순부채 기준 60~80% (취약계층 최대90%)	상환능력 심사 후 일괄 소각 또는 채무조정	
구분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대상	연체기간 30일 이하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연체기간 90일 이상																				
지원 내용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조정, 추심중단, 단기연체정보해제 등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조정, 추심중단, 단기연체정보해제 등	채무감면,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조정, 추심중단, 연체정보해제 등																				
구분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대상	자영업자 연체 90일 이상	개인(개인사업자) 연체 7년 이상																					
지원 내용	순부채 기준 60~80% (취약계층 최대90%)	상환능력 심사 후 일괄 소각 또는 채무조정																					
<p>쟁점 현황 ① 신복위 채무 조정</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data-bbox="342 774 614 1097"> <h3>[채무조정 평균 감면율]</h3> <h3>[채무조정 평균 상환기간]</h3> <p>자료: 한국은행</p> </div> <div data-bbox="628 774 899 1097"> <h3>[채무조정안 평균 부동의율]</h3> <p>(업권별 상위 5개 기관 기준)</p> <p>자료: 신용회복위원회</p> </div> <div data-bbox="913 774 1185 1097"> <h3>[채무조정 실패자 수]</h3> <p>자료: 신용회복위원회</p> </div> </div>																						
<p>쟁점 현황 ② 금융회사 자체 채무 조정</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data-bbox="342 1107 614 1391"> <h3>[금융회사 채무조정 요청률]</h3> <p>자료: 금융감독원</p> </div> <div data-bbox="628 1107 899 1391"> <h3>[주요 공공기관 개인부실채권]</h3>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2025</th> <th>2018</th> </tr> </thead> <tbody> <tr> <td>부실채권액 (조원)</td> <td>44.4</td> <td>28.0</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25년기준)</th> <th>전체</th> <th>3천만원 미만</th> <th>비중 (%)</th> </tr> </thead> <tbody> <tr> <td>채무자수 (만명)</td> <td>238.4</td> <td>221.8</td> <td>93.0</td> </tr> <tr> <td>부실채권액 (조원)</td> <td>44.4</td> <td>17.6</td> <td>39.6</td> </tr> <tr> <td>비중 (%)</td> <td></td> <td>상각채권 16.6</td> <td>미상각채권 83.4</td> </tr> </tbody> </table> <p>자료: 국회예산정책처</p> </div> <div data-bbox="913 1107 1185 1391"> <h3>[주요 공공기관 채무조정 현황]</h3> <p>자료: 국회예산정책처</p> </div> </div>		2025	2018	부실채권액 (조원)	44.4	28.0	(*25년기준)	전체	3천만원 미만	비중 (%)	채무자수 (만명)	238.4	221.8	93.0	부실채권액 (조원)	44.4	17.6	39.6	비중 (%)		상각채권 16.6	미상각채권 83.4
	2025	2018																					
부실채권액 (조원)	44.4	28.0																					
(*25년기준)	전체	3천만원 미만	비중 (%)																				
채무자수 (만명)	238.4	221.8	93.0																				
부실채권액 (조원)	44.4	17.6	39.6																				
비중 (%)		상각채권 16.6	미상각채권 83.4																				
<p>쟁점 현황 ③ 새출발 기금/새도약 기금</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data-bbox="342 1401 614 1724"> <h3>[새출발기금 운영 현황]</h3> <p>(2025년말 기준)</p> <p>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p> </div> <div data-bbox="628 1401 899 1724"> <h3>[새도약기금 운영 현황]</h3> <p>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p> </div> <div data-bbox="913 1401 1185 1724"> <h3>[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협약 현황]</h3> <p>자료: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p> </div> </div>																						

< 금융회사 연체채권 관리와 채무조정제도 연계 현황 >



요 약

I. 서론

-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기조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내수 경기 회복 지연이 맞물리면서 가계 및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신규 장기연체자는 2021년 18만 명 수준에서 2025년 3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2025년 말 기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액은 16.6조 원, 부실채권 비율은 0.57%에 달하며, 이 중 가계 여신은 2022년 1.4조 원에서 2025년 3.1조 원으로 증가하였음
- 정부는 금융권의 부실채권과 연체 채무자 증가에 대응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제도 개선을 지속해오고 있어, 채무조정제도의 운영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
 - 본 보고서의 평가 대상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에 근거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한시적 채무조정제도인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복합지원 서비스 등

II. 현황

1. 채무조정제도의 개요

-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장기연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의 신용회복과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하는 것임

-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의하는 ‘채무조정’이란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개인금융 채권에 대하여 원리금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 새로운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의 변제, 분할 변제, 변제기간 연장 등으로 채무 내용을 변경하는 것
- 채무조정제도는 조정 주체에 따라 법원의 중재, 판결 등에 따른 공적 채무조정제도와 채무자와 채권자 간 합의를 통한 사적 채무조정제도가 있으며, 제도 운영 기간에 따라 상시적·한시적 제도로 구분할 수 있음
 - 상시적 채무조정제도는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 제도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제도 등
 - 한시적 채무조정제도는 정부 재정과 금융회사 출연금 등으로 특별 채무조정 기구를 만들고 금융회사가 보유한 연체 채권을 매입하여 채권 소각과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등이 있음

[국내 채무조정 제도 현황]

구분	사적 채무조정	공적 채무조정
상시적 채무조정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지원	법원 개인회생·개인파산
한시적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감사원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작성

2. 채무조정제도 운영 현황

가. 상시적 채무조정제도

-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금융법 제56조에 근거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채무조정을 중개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연체가 우려되는 개인채무자에게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신속채무조정’, 31일 이상 일시적으로 연체가 발생한 개인채무자를 지원하는 ‘사전채무조정’, 90일 이상 장기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개인워크아웃’,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등이 있음

- 2024년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제정되어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법률상 제도로 명문화
 - 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가 자력으로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등의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 개인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채권금융기관은 자체 채무조정 내부 기준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을 검토하고 채무자와 채무조정을 합의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관리공사법”)에 근거해 금융회사에서 정리되지 못한 부실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개인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또는 소각 등의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 중

나. 한시적 채무조정제도

- 한시적 채무조정제도는 경제 위기 등으로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취약 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 기간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를 의미
-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2022년 10월 출범
 - 부실이 심화된 채무자는 원금감면 중심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부실우려차주에게는 금리 조정과 분할상환 중심의 채무조정을 지원함
- 새도약기금은 장기연체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기소액 연체채권의 일괄 매입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2025년 10월 출범
 -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 개인 채권을 대상으로 금융회사의 연체 채권을 매입한 뒤 차주의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여 채권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지원

Ⅲ. 주요 쟁점 분석

1. 상시적 채무조정제도

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 취약계층의 신속한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원금 감면을 확대와 상환기간의 단축 등 실질적인 재기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정부의 채무조정제도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향과 다르게 채무원금 감면율은 2021년 이후 정체되었고, 채무상환 기간은 이전보다 다소 증가
 -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과 자산 축적도가 낮은 청년층은 최근 채무 상환 부담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취약 채무자 특별면책 제도'¹⁾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신속한 경제적 활동 복귀를 지원할 필요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안에 대한 대부업권의 높은 부동의율을 해소하기 위해 동의권 부여 기준을 채무총액에서 채무원금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서민금융법에 채무조정안 동의권이 채권 총액 기준으로 부여되면서 상대적으로 고금리 채권을 보유한 대부업체에 과도한 의결권을 갖게되면서 채무조정안 체결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동의권 부여 기준을 채권 총액에서 채권 원금으로 변경하는 법률개정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원금 감면을 산정에 채무자의 채무원금과 가용소득 기반의 획일화된 방식에서 벗어나 채무자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
 -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원금 감면율은 채무원금과 가용소득을 기초로 산출된 채무과중도와 채권의 상각 여부, 연체 기간 등에 따라 결정하고 있어 채무자의 나이, 성별, 직업 구분(근로·자영·일용 등), 부양가족 수, 주거 현황 등 채무자별 여건을 고려한 감면율 방식 도입을 검토할 필요

1) 채무원금이 5,000만 원 이하인 취약계층이 최소 3년 이상 상환하고 조정 채무액의 2분의 1 이상을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

- 채무조정 대상에 미포함된 건강보험료, 수도·가스요금, 국세·지방세 등의 비금융 공적 채권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채무조정 연계 체계를 마련할 필요
 - 건강보험료와 수도·가스 등 공과금이 체납되어 공공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경우, 특히 취약계층은 일상 생활의 어려움이 크므로 채무조정 신청 시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감면제도 등을 안내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검토할 필요
-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이 커짐에 따라, 채무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정부는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지속해서 도모해 왔지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2025년 83건에 불과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제도가 채권자의 채권 회수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아 채무조정 동의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효과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나.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제도 분석

- 금융회사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차별성 있는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구축하고, 정부는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제도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개인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되었지만, 금융회사 채무조정률은 5.92%에 그치고 있음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요청 정보를 채무자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채무조정 절차가 법령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필요
-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회수 가능성 없는 개인금융부실채권의 조정·정리와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하여 장기연체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필요
 - 공공기관²⁾의 개인금융부실채권은 2018년 28.0조 원에서 2025년 44.4조 원

- 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금융부실채권에 대한 상각과 소각매각 실적은 미흡
- 공공기관의 개인금융부실채권에 대한 전체 채무조정 체결 건수는 2018년 12.4만 명에서 2025년 28.7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공공기관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비중은 2018년 45.7%에서 34.6%로 감소
 - 2025년 기준 공공기관의 자체 채무조정 평균 감면율은 29.3%로 대외 채무조정 감면율(54.8%)보다 낮았고, 공공기관의 자체 채무조정 실효율은 9.8%로 대외 채무조정 실효율(3.9%)보다 높아 효과적인 채무조정 체계 마련이 필요

2. 한시적 채무조정제도 분석

가. 새출발기금 및 새도약기금 채무조정제도

- 정부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해 왔지만, 당초 계획 대비 지원 실적이 미흡하므로 남은 사업 기간을 고려한 실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새출발기금의 2025년 말 기준 누적 채권 매입액은 13조 3,939억 원으로 매입 계획(33조 4,000억 원)의 40.1% 수준이었으며, 새출발기금 신청 채무자의 채무조정 약정 비율은 65.5% 수준
- 새출발기금의 중개형 방식은 금융회사의 높은 부동비율로 채권매입 비용이 증가했고, 채무자의 실효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새출발기금 중개형의 채무조정안 동의율이 평균 32.4%로 낮았고, 부동비율 높은 금융회사의 채권을 매입하게 되면서 채권매입가율이 평균 76.2%에 달함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실효율은 매입형보다 중개형의 실효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내실있는 채무조정 지원이 필요
- 새도약기금의 채권매입과 소각 실적이 계획 대비 미흡하므로 미파악된 장기연체채권 보유 금융회사와의 협약을 확대하여 채권 매입·소각 실적을 높일 필요

2) 본 보고서의 분석 대상 공공기관은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장학재단 등 12개 기관이다.

- 새도약기금의 채권매입액 목표 대비 매입 실적 비율은 50.3%, 채권매입액 대비 채권 소각액 비율은 21.3%에 그치고 있음
- 채권 매입과 소각 대부분이 공공기관 보유 채권으로 장기연체채권을 다수 보유한 대부업체, 자산관리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참여가 미흡
- 금융위원회는 장기연체채권 보유 금융회사를 추가 조사하고 해당 금융회사와 협약 체결을 추진하여 채권 매입과 소각 실적을 높일 필요

나. 채무자 도덕적 해이 방지와 성실상환자 형평성 제고

- 채무조정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최소화되도록 연체 원인과 상환 능력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체계 마련과 함께 금융회사의 선제적인 연체채권 관리와 효과적인 채무조정 체계를 정착시킬 필요
 - 새도약기금과 같은 배드뱅크형 부실채권 일괄 매입 방식에서는 채무자의 채무 원인과 상환능력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채무조정 확정 이후에도 채무자의 소득·재산 변동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허위 신고자를 적발하기 위한 사후 점검을 지속할 필요
 -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불이행 상태의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되 장기적으로는 금융회사가 연체 발생 초기부터 선제적인 연체 채권 관리를 강화하고 자체적인 채무조정제도를 활성화할 필요

3. 채무조정제도 운영체계

가. 채무조정제도 운영기관

-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과의 이해 상충 우려가 없도록 신용회복위원회의 독립적인 기관장 선임체계를 마련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역할 수행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이행할 필요
 -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 설립 이후 위원장 임면을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의

겸임 방식으로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높여 했던 당초 입법 취지와는 상이한 측면이 있음

- 최근 채무조정 수요 증가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수입과 지출 예산이 증가하고 관련 사업이 지속 확대되고 있으므로 신용회복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가계·기업 재기지원 및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업 확대로 공사의 금융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장기 미회수자산 회수 강화,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중장기 재무건전성 제고에 노력할 필요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2026년 부채비율은 235.6%로 2025년 대비 29%p 증가하는 등 재무적 부담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채비율 악화에 대응해 합리적인 투자 계획과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부채손익관리 계획 수립과 이행으로 재무건전성을 높일 필요

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체계

- 정부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으로 취약계층의 금융 여건이 개선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부처 간 복합지원 연계 고도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
 -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서민·취약 계층의 복합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고용·복지를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운영 중이나 복합지원 고도화를 위한 업무인력연계 및 상담 인력 교육 강화, 복합지원 연계 혜택 확대 등이 필요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서민금융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채무조정 지원 등을 수행 중으로 효과적인 센터 운영을 위한 상담 인력 재배치, 상담 인력 역량 강화, 상담 서비스 편의성 강화 등을 검토할 필요

IV. 결론 및 시사점

- 정부는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 활동 복귀를 위해 채무조정제도의 채무 감면율과 상환 기간의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정부는 채무조정 대상에 금융 채무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및 비금융 채권까지 포괄하는 통합 채무조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채무자의 주거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제도 활성화에 노력할 필요
- 정부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규정한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고, 공공기관 보유 회수 가능성이 없는 개인금융부실채권이 적기에 조정정리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행할 필요
- 정부는 일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채무자 상환능력에 대한 정교한 채무조정 심사체계를 구축하고, 성실 상환자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균형있고 공정한 채무조정제도가 운영되도록 노력할 필요

서론

1 평가 배경 및 목적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기조의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내수 경기 회복 지연이 맞물리면서, 가계 및 자영업자의 금융부채가 증가하고 채무 상환 능력은 저하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누적된 채무가 금리 상승과 맞물려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가계부채는 2018년 1,536.5조 원에서 2025년 1,978.8조 원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가계부채 연체율¹⁾은 2021년 0.52%까지 하락하며 일시적으로 안정되는 듯했으나, 이후 반등하여 2025년에는 0.93%를 기록하였다. 특히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층에 해당하는 취약 차주의 비율은 2018년 7.4%에서 2021년 6.0%로 감소했다가 2025년 6.7%로 상승하면서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잔액 및 연체율 현황]

(단위: 조 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가계부채	1,536.5	1,600.1	1,728.	1,861.3	1,865.4	1,882.6	1,922.7	1,978.8
연체율	0.78	0.81	0.65	0.52	0.66	0.86	0.93	0.93
취약 차주 비율	7.4	7.1	6.4	6.0	6.3	6.6	6.9	6.7

주: 1. 가계신용 기준, 연체율은 전 금융권 기준, 취약 차주 비율은 차주수 기준

2. 취약 차주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자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금융안정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2018년 627.2조 원에서 2025년 1,092.9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자영업자 연체율은 2018년 0.79%에서 2025년 1.86%로 높아졌고,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은 2018년 6.50%에서 2025년 12.14%로 증가했다.

1) 연체율은 원금 혹은 이자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잔액(연체액, 분자) 대비 전체 대출잔액(분모)이다. 연체액은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자영업자 대출잔액 및 연체율 현황]

(단위: 조 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자영업자 대출잔액	627.2	686.1	803.5	909.2	1,019.8	1,053.2	1,083.8	1,092.9
자영업자 연체율	0.79	0.79	0.56	0.52	0.69	1.22	1.68	1.86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	6.50	6.33	4.99	4.32	5.4	8.9	12.16	12.14

주: 1. 전 금융권(은행, 비은행 포함), 각 연도 말 기준

2. 취약 자영업자란 다중채무자(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이면서 저소득(하위 30%)이거나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자영업자 차주를 의미

자료: 한국은행 제출자료

2021년 이후 가계와 자영업자의 연체율 증가로 매년 신규로 발생하는 장기 연체자는 2021년 18만 명 수준에서 2025년 29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 기준 단기 연체 채무자는 23.7만 명, 장기 연체 채무자는 93.6만 명에 이른다.

[장단기 연체 채무자 현황]

(단위: 만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단기 연체자	32.5	29.3	22.5	19.9	25.3	30.6	31.1	23.7
장기 연체자	93.0	88.4	81.8	74.8	73.1	81.3	88.3	93.6
신규 등록	41.0	38.6	31.4	18.1	19.4	27.8	28.8	29.1

주: 1. 단기 연체는 10만 원 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

2. 장기 연체는 100만 원 이상, 90일 이상 연체

자료: 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2025년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액은 16.6조 원, 부실채권 비율은 0.57%로 2022년 최저점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부실채권 대부분은 기업 여신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가계 여신도 2021년 1.4조 원에서 2025년 3.1조 원으로 증가하면서 기업 여신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체 채무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금융회사는 2018년 이후 지속해서 높은 이자이익을 올리고 있다. 2025년 기준 국내은행은 60.4조 원, 저축은행이 5.4조 원, 생명보험사가 20.5조 원, 손해보험사가 7.7조 원의 이자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 및 부실채권비율 추이]

(단위: 조 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부실채권액	18.2	15.3	14.0	11.8	10.1	12.5	15.0	16.6
기업여신	16.3	13.3	12.1	10.2	8.3	10.0	12.0	13.2
가계여신	1.7	1.9	1.8	1.4	1.7	2.3	2.8	3.1
신용카드	0.2	0.2	0.1	0.1	0.1	0.2	0.3	0.3
총여신	1,872.6	1,980.6	2,171.8	2,371.9	2,532.4	2,629.0	2,799.1	2,905.8
부실채권비율	0.97	0.77	0.65	0.50	0.40	0.47	0.54	0.57

주: 각 연도말 기준, 부실채권비율 = 부실채권 / 총여신

자료: 금융감독원 제출자료

[주요 금융회사 이자 이익 현황]

(단위: 조 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국내은행	40.5	40.7	41.2	46.0	55.9	59.2	59.3	60.4
저축은행	4.2	4.5	5.0	5.9	6.7	5.4	5.5	5.4
생명보험사	18.0	17.8	17.7	18.1	19.1	19.7	20.2	20.5
손해보험사	6.1	6.2	6.0	6.0	6.7	6.8	7.7	7.7

주: 1. 국내은행은 일반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 전문은행)과 특수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을 포함

2. 이자이익 = 이자수익 - 이자비용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정부는 금융권의 부실채권과 연체 채무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특화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과 7년 이상 장기연체자의 신용회복을 위한 '새도약기금' 등 정부 재원을 활용한 한시적인 특별 채무조정 기구를 신설·운영 중이다. 또한, 2024년 10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 보호법”）」을 시행하여 개별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법제화하였다. 최근 정부는 포용적 금융 정책의 서민금융강화 차원에서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장기 연체 채무자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경제적 활동이 제약되어,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며, 사회보장 비용 증가와 내수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생산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채무조정제도 개선 관련 주요 정책 방안]

- 금융위원회·법무부·금융감독원,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2026.2.
 -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관리책임 강화, 금융기관 무분별한 소멸 시효 연장 관행 개선
- 금융위원회,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방향, 2026.1.
 - 취약계층 채무조정 확대(새도약기금 운영,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신복위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내실화), 연체관리 개선 및 신용회복 지원 등
-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 2025.10.
 -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연체채권 일괄 매입하여 소각·채무조정 등
- 관계부처 합동,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 2025.2.28.
 -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강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특례제도 상시화, 다중채무자 등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 관계부처 합동,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 2024.10.2.
 - 신용회복위원회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한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2024.1.24.
 - 고용복지센터 내 채무조정 상담창구 마련, 채무조정이용 청년 고용지원 강화
- 금융위원회,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2022.7.
 - 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설 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이러한 정부의 취약계층 중심의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와 부실채권 연체관리로 가계와 자영업자의 전반적인 대출 연체율은 다소 완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채무조정 제도의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가계부채 잔액 및 연체율]

(단위: 조 원, %, %p)

구 분	2024년				2025년				증감 (B-A)
	1Q	2Q	3Q	4Q	1Q(A)	2Q	3Q	4Q(B)	
가계부채	1,879.4	1,892.7	1,911.4	1,922.7	1,925.0	1,950.0	1,964.8	1,978.8	53.8
연체율	0.97	0.94	0.95	0.93	1.05	1.03	1.00	0.93	△0.12
취약차주 비율	6.6	6.7	6.7	6.9	6.9	6.8	6.4	6.7	△0.2

주: 1. 가계신용통계 기준, 연체율은 전 금융권 기준, 취약차주 비율은 차주수 기준
 2. 취약 차주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자
 자료: 한국은행 제출자료

[최근 자영업자 대출잔액 및 연체율]

(단위: 조 원, %, %p)

구 분	2024년				2025년				증감 (B-A)
	1Q	2Q	3Q	4Q	1Q(A)	2Q	3Q	4Q(B)	
대출잔액	1,075.4	1,079.4	1,084.1	1,083.8	1,087.4	1,090.1	1,092.6	1,092.9	5.5
연체율	1.53	1.59	1.72	1.68	1.96	1.93	1.93	1.86	△0.10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	11.65	11.48	12.41	12.16	13.27	12.55	12.42	12.14	△1.13

주: 1. 전 금융권(은행, 비은행 포함), 각 연도말 기준
 2. 취약 자영업자란 다중채무자(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이면서 저소득(하위 30%)이거나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자영업자 차주를 의미
 자료: 한국은행 제출자료

한편,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이 당초 계획 대비 추진 실적이 미흡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에 근거한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이 아직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과도한 채무원금 감면과 반복되는 신용회복 지원은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훼손,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를 지속해서 낳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현재 운영 중인 채무조정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제도의 운용 실태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주요 채무조정 운영기관의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채무조정제도가 개인 채무자의 단순한 채무 감면에 그치지 않고, 채무자가 경제활동의 주체로 복귀하여 자립하는 데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정책 개선방안과 입법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보고서의 평가 대상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에 근거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금융회사²⁾ 자체 채무조정제도, 한시적 채무조정제도인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복합지원 서비스 등이다. 다만,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는 제외하였다³⁾.

[국내 채무조정제도 개요]

운영기관	채무조정제도	지원 대상	지원내용
법원	개인파산	상환 불능 채무자	재산처분 후 면책
	개인회생		고정소득자, 3~5년 변제 후 면책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3천만 원 미만 개인 채무자	금융회사별 내부 기준에 따른 이자 및 원금감면 등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	연체이자 및 원금감면 등
	사전채무조정	연체 31일~89일 이하 채무자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조정 등
	신속채무조정	연체 30일 이하 채무자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조정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채무자 조건별 금리 및 원금조정, 이자 감면, 분할 상환 등
	새도약기금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장기 연체 채무자	채무자 조건별 채권소각 또는 채무 조정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채무조정제도 분석을 위해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공식적인 자료 수집, 주요 쟁점 도출 등을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국내외 정책 동향, 국회와 정부의 입법 동향, 정부 기관의 연구보고서 등에 관한 문헌 조사도 수행하였다.

2) 본 보고서에서 말하는 “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금융회사”를 의미하지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 편의상 “금융회사”로 통일하여 기술하였다.

3) 채무조정제도는 일반적으로 채무조정 중재 주체에 따라 사적, 공적 채무조정으로 구분하고, 제도의 운영 기간에 따라 상시적, 한시적 채무조정제도로 구분한다. 자세한 내용은 제2장 현황의 채무조정제도 개요에 설명하였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장에서 평가의 배경 및 목적, 보고서의 구성 및 방법을 설명하였다. 이어 II장은 현황으로 채무조정제도 개념, 채무조정제도 정책 현황, 제도 운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III장의 쟁점 분석에서는 상시적 채무조정제도, 한시적 채무조정제도, 채무조정제도 운영체계로 구분하여 주요 쟁점 및 개선과제를 검토하였다.

상시적 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와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제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는 취약계층 채무조정 지원 성과와 채무조정 감면 방식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금융회사 채무조정제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자체 채무조정 운영 현황 평가, 공공기관의 개인금융부실 채권 관리 실태를 평가하였다. 한시적 채무조정제도는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을 중심으로 사업계획 대비 지원 실적과 운영방식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채무조정제도 운영체계와 관련해서는 운영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기관 운영 적정성과 재무 건전성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금융·고용·복지 상담 지원체계에서는 부처 간 연계 체계를 살펴보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 IV장 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주요 쟁점 사항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효과적인 채무조정제도 운영을 위한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보고서의 구성과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I.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배경 및 목적 ▪ 평가의 구성 및 방법
II.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조정제도 개요 ▪ 채무조정제도 정책 및 운영 현황
III. 주요 쟁점 분석	상시적 채무조정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채무조정 지원 성과 평가 - 채무조정 감면 방식의 적정성 평가 ▪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채무자보호법 채무조정제도 운영 평가 - 공공기관 개인금융부실채권 관리 실태 평가
	한시적 채무조정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출발기금 지원 성과 평가 - 새출발기금 운영 적정성 평가 ▪ 새도약기금 채무조정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도약기금 운영 적정성 평가
	채무조정제도 운영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조정제도 운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회복위원회 기관 운영 분석 - 한국자산관리공사 재무건전성 분석 ▪ 금융·고용·복지 복합상담지원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고용·복지 상담체계 분석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 분석
IV. 결론 및 시사점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채무조정제도 개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말하는 ‘채무조정’이란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원리금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 새로운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의 변제, 분할 변제, 변제기간 연장 등의 방법으로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⁴⁾. 채무조정의 목적은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여 채무상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다. 하지만 채무조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기연체로 인해 어려움에 있는 채무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신용회복지원의 핵심 제도로 기능한다.

[채무조정제도의 개념]

구분	주요 내용
신용회복지원	정상적으로 채무상환이 힘든 채무자들이 파산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거나, 청산 이후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
채무조정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위해 법원의 중재, 판결 또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 합의를 통해 채무 내용을 조정하여 채무상환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고용·복지 연계	채무자에 대한 취업 지원, 직업훈련 등의 고용지원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의 복지지원제도
기타	무료 법률구조지원, 신용회복 교육 및 컨설팅 제도 등

자료: 고재현, 「주요국 채무조정제도 분석」, 한국주택금융공사, 2023.10.

4)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채무조정”이란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원리금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
 - 나. 새로운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의 변제
 - 다. 분할 변제
 - 라. 변제기간 연장
 - 마. 그 밖에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우리나라의 채무조정제도는 법원의 중재, 판결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제도가 있으며, 채무자와 채권자 간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제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법원의 채무조정제도는 공적 채무조정제도로 채무자와 채권자 간 합의에 기반한 채무조정제도는 사적 채무조정제도로 구분하기도 한다⁵⁾⁶⁾. 한편 채무조정제도는 운영 기간에 따라 상시적 제도와 한시적 제도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채무조정제도가 법적·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며 채무자의 연체 상황에 따라 상호 보완적 성격을 가진다.

상시적 채무조정 제도는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 제도,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제도가 해당한다. 한시적 채무조정 제도는 정부 재정과 금융회사 출연금 등으로 한시적인 특별 채무조정 기구를 만들고 금융회사가 보유한 연체 채권을 매입하여 채권 소각과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22~'26), 새도약기금('25~'26) 등이 있다⁷⁾.

[국내 채무조정 제도 현황]

구분	사적 채무조정	공적 채무조정
상시적 채무조정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지원	법원 개인회생·개인파산
한시적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감사원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작성

5) 구정환·이규복, 「사적 개인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20.2.

6)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를 조정하는 비영리 특수법인(민·상법 외 기타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금융회사와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이 사실상 의무이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가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어 '행정형 채무조정'에 가까운 구조이기 때문에 공적 채무조정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공기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정부 재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넓게 보면 공적 채무조정에 해당할 수도 있다.

7)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처음으로 한시적 매입형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이후 한마음금융('04~'20년), 희망모아('05~'20년), 신용회복기금('08~'13년), 국민행복기금('13년~현재) 등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였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늘어난 금융소외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신용회복기금'은 2013년 '국민행복기금'으로 확대·개편되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 새출발기금, 장기연체자 지원을 위한 새도약기금 등이 있다.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는 공적 조정제도로서 2004년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으나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이 3~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자는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인 수입이 있고, 채무총액이 일정 규모 이하이며, 지급불능 상태에 있어야 한다.

법원의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자기 재산으로 모든 부채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법원은 개인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 및 미래소득의 청산 가치가 부채에 비해 적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현재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파산절차와 함께 잔여 채무에 대한 상환의무를 면책시킬 수 있다⁸⁾.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자격 비교]

개인회생	개인파산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5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함(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 없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음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음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함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됨
낭비,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어도 가능	낭비, 도박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다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음
채무한도에 제한 있음(담보 15억원, 무담보 10억원)	채무한도 제한 없음

자료: 서울회생법원

8) 파산자가 파산절차를 모두 마치더라도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에서는 파산이 선고됨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권자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조사하고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심사하고, 그 과정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밝혀진 경우 면책신청이 불허가되기도 하고, 이러한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면책심문기일이나 의견청취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면책이 기각될 수도 있다(자료: 서울회생법원)

[상시적 채무조정제도 비교]

구분	법원		한국자산 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조정	개인 워크아웃	사전 채무조정	신속 채무조정
시행시기	'62.1월	'04.9월	'97.11월	'02.10월	'09.4월	'19.9월
대상 채무자	상환불가자 (소득·재산-無)	상환불능 상태이나 고정소득자	공사 매입 채권 (민간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 채권, 금융공공 기관의 상각채권)	연체기간 90일이상	연체기간 31일~89일	연체기간 30일이하 및 연체우려자
대상 채권	제한없음 ※세금, 건보료 면책불가	제한없음 ※세금, 건보료, 사채 등 포함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자 (대부업체, 통신·전기요금 포함) ※세금, 건보료, 개인채무 등 비협약기관 채무 조정불가		
채무액	제한 없음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	제한 없음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중소기업인 30억원)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변제기간	-	3~5년	10년 이내 (2천만원 이상 : 12년, 취약계층 : 15년)	10년 이내 (주택담보 35년)	10년 이내 (주택담보 35년)	10년 이내
채무감면	재산처분 배분 후 잔여채무면책 (원금감면 100%)	보유 재산 이상변제	이자채권 전액, 원금감면 최대 60% (취약계층 최대 90%)	이자채권 전액, 원금감면 최대 상각채권 70%, 취약계층 90%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70% 인하 (취약계층 원금 최대 30% 감면)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50%인하 (취약계층 원금 최대 15% 감면)
담보대출	제외(별제권)		조정가능	조정가능	조정가능	조정불가
보증인 추심여부	보증인에 대한 추심 가능		독촉 가능	보증인에 대한 추심 불가		
법적효력	판결효력		공사-채무자간 계약효력(민사)	당사자간 계약효력(민사)		
채무조정 정보 공유기간	면책결정 후 5년간	변제계획 인가 후 1년간	미등록	신용회복 확정 후 1년간	미등록	미등록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최근 한시적 채무조정제도 주요내용]

구분	국민행복기금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매입 기간	매입 종료	'20.6월~'26.12월	'22.10월~'26.12월 (신청 기간)	'25.10월~'26.10월 (<small>합계</small> 1년)
운영 주체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하여 출자*) * '16.9월 캄코 보유 보통주 서금원 전량 이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회계)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spc)을 설립하여 출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새도약기금(spc)을 설립하여 출자), 신용회복위원회
대상 채권	'13.2월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권	'20.2월~'26.12월 중 연체가 발생한 무담보 채권	'20.4월~'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자가 보유한 담보·무담보 채권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권 (협약체결하여 매입 예정)
개인 /법인	개인	개인	개인사업자 + 법인소상공인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지원 한도	1억 원	-	무담보 : 5억원 담보 : 10억원	5천만원
지원 구조	일괄 매입 및 채무자 신청 매입	일괄 매입 및 채무자 신청* 매입 * 신복위 탈락/실효자	채무자 신청 채무조정 및 매입	일괄매입
상환 기간	10년 이내	10년 이내	•무담보: 10년 이내 •담보: 20년 이내 •저소득(매입형에 한함)· 사회취약계층 무담보 채무도 20년 이내	10년 이내
채무 감면	순부채 20~70% 이내 (소외계층 90%)	순부채 30~60% 이내 (소외계층 90%)	•연체 3개월 미만: 연체 이자 감면, 이자율 조정 •연체 3개월 이상: 순부 채 60~80% 감면(저소 득·사회취약계층 90%)	소각 요건 미충족시 최대 80% 감면
소각	-	-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채권 소각 •(재산) 생계형 재산 외 처분가능재산 無 (상환능력 별도 심사)
채무조정 정보 공유기간	채무조정 확정 후 2년간 성실 상환시 해제	채무조정 확정 후 2년간 성실 상환시 해제	•연체 3개월 미만: 등 록정보 없음 •연체 3개월 이상 : 채 무조정 확정 후 1년간 성실 상환시 해제	공공정보 미등재

자료: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가. 상시적 채무조정제도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금융법 제56조⁹⁾에 근거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서민금융법에 근거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된 채권자와 개인채무자 간의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은 서민금융법 제75조¹⁰⁾에 따른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은 서민금융법 제75조 제2항, 제3항¹¹⁾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5조에서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회사,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이다. 2026년 1월 말 기준 7,008개 기관이 해당 협약을 체결했다.

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설립) ①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신용회복지원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진흥원
 2. 금융회사
 3.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3의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 3의3.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 3의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대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 3의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자로서 위원회가 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 ③ 제2항제2호·제3호 또는 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요청하면 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개인채무조정 원칙)
제2장 개인채무조정 기준	제4조(신청대상), 제5조(개인채무조정 채권의 범위), 제6조(최저생계비)
제3장 개인채무조정 절차	제7조(신청), 제8조(채권신고), 제9조(심의), 제10조(동의), 제11조(합의), 제12조(이행), 제13조(재조정 및 수정 조정), 제14조(면책), 제15조(효력의 상실)
제4장 개인채무조정 방법	제16조(개인채무조정 방법), 제17조(상환기간 연장), 제18조(분할상환), 제19조(이자율 조정), 제20조(상환유예), 제21조(채무감면), 제21조의2(구상채권의 채무감면)
제5장 개인채무조정 효력	제22조(신청의 효력), 제23조(합의의 효력), 제24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력), 제25조(채권의 양도금지), 제26조(소액채권의 양도), 제27조(신용정보의 관리)
제6장 개인채무조정 특례	제28조(개인채무조정 특례), 제29조(취약채무자에 대한 특례), 제29조의2(신속채무조정 특례), 제29조의3(사전채무조정 특례), 제29조의4(취업성공자에 대한 특례), 제29조의5(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제30조(특별면책), 제30조의2(소액 채무 면책), 제31조(중소기업인 등에 대한 특례), 제32조(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제33조(재창업 중소기업인 개인채무조정 특례), 제34조(주택담보 대출 특례), 제35조(담보권 실행유예), 제36조(담보주택 매매지원)
제7장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에 따른 채무조정	제37조(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제38조(적용범위), 제39조(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대상), 제40조(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채권), 제40조의2(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 제41조(수정조항 제한), 제42조(채무조정 부동의 및 효력상실의 통지), 제43조(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내용), 제44조(보증부채권에 관한 사항), 제45조(새출발기금지원 채권의 양도)
제8장 보칙	제46조(협약 체결), 제47조(협약의 해지), 제48조(협약의 개정과 폐지), 제49조(협약 준수 의무), 제50조(통지 및 신고), 제51조(수수료), 제52조(제재금), 제53조(세부사항)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기관 현황]

(단위: 개)

구 분	협약 기관 수	구 분	협약 기관 수	구 분	협약 기관 수
은행	21	증권/투신	5	공공기관	6
카드사	8	농협/축협	1,115	파산금융기관	38
할부금융사	37	수협	91	대부업	2,371
리스/신기술금융	25	새마을금고	1,431	사업수행기관	52
생명보험사	19	산림조합	141	자산관리회사	208
손해보험사	12	이동통신사	3	유동화전문회사	327
상호저축	79	소액결제사	19	기타	20
보증기관	28	알뜰폰	54	합계	7,008
신협	897	공공요금	1		

주: 신용회복지원, 새출발기금 협약 기관 포함(2026.1월 기준)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가 우려되는 개인채무자에게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신속 채무조정’, 31일 이상 일시적으로 연체가 발생한 개인채무자를 지원하는 ‘사전채무 조정’, 90일 이상 장기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개인워크아웃’,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중개형)’, 장기연체 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도약기금’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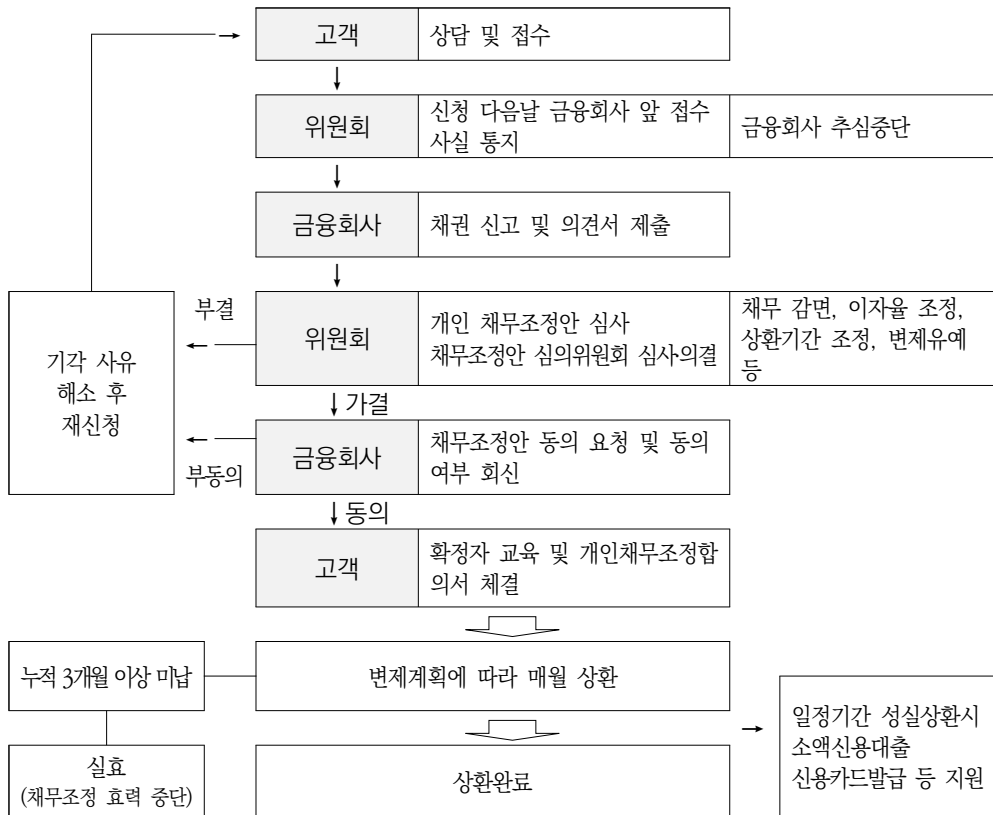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사업별 개요]

구 분	사업개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속채무조정	일시적 소득 감소 등으로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의 채무가 과중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채무조정 지원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자 또는 연체우려자	이자율 인하(30%~50%), 분할상환(최장 10년)
	특례 취약채무자에 대해 연체 발생 전에도 원금 감면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중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자	이자 전액, 원금 최대 15% 감면
사전채무조정	1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일시적 상환불능자의 연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이자율 인하 및 장기분할상환 지원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자	이자율 인하(30%~70%), 분할상환(최장 10년)
	특례 취약채무자에 대해 연체 90일 전에도 원금감면	사전채무조정 지원대상 중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자	이자 전액, 원금 최대 30% 감면
개인워크아웃	장기연체자가 경제적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원금 감면 및 장기분할상환 지원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이자감면(전액), 원금감면(최대 90%), 분할상환(최장 10년) *미상각채권 최대 50%, 상각채권 최대 70% 감면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미상각채권 최대 50%, 상각채권 최대 90% 감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담보대출이 연체된 경우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지원	주택담보대출 연체 31일 이상, 1주택 소유자	연체이자 전액 감면, 최장 3년 거치,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새출발기금 (중개형)	채무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이자율 조정 및 분할상환 지원	연체 90일 미만 소상공인·자영업자 ('20.4.1.~'25.6.30. 중 사업영위)	연체기간에 따른 금리 차등 조정(최대 9%), 분할상환(최대 10년), 거치기간 부여(최대 3년)
새도약기금 (채무조정 대상)	새도약기금 매입채권 중 상환 능력이 있는 소각 제외 대상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지원	연체기간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개인연체자(개인사업자)	원금 최대 80% 감면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절차는 먼저 개인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채무조정 요청을 신청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접수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지하고, 금융회사가 채권 신고 및 의견서를 신용회복위원회에 제출한다. 이후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 채무조정안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통보한다. 금융회사가 개인채무조정안에 동의하면 개인채무자는 개인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고,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상환함으로써 신용회복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절차]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2)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제도

정부가 장기연체자 증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에서는 기계적인 소멸시효¹²⁾ 연장 관행이 지속되어 왔다¹³⁾. 이에 국회와 정부는 2024년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와 추심·조정 에 필요한 금융회사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법률상 제도로 명문화하였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2항¹⁴⁾에 따라 채무조정제도를 갖추어야 하는 금융회사는 「은행법」 등에 따라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 등으로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채무조정제도를 갖추어야 하는 금융회사 범위]

구분	주요 금융회사
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특수은행 등
카드/캐피탈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금융투자	증권사, 자산관리회사
보증기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공공기관	공공기관 중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기관
대부업자	등록 대부업자
기타	정리금융회사, 유동화전문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투자한 회사

자료: 개인채무자보호법을 바탕으로 작성

- 12) 소멸시효는 채권자의 추심 권리 행사 시점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부실채권(금융기관 대출채권 등)은 「상법」 제64조에 근거해 상행위 채권으로 분류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13) 금융회사는 일정기간 추심 후에도 회수되지 않은 채권을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해 관행적으로 시효를 연장해왔다.
- 14)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채권금융회사등”이란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승인 등을 받아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는 자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15)에 따르면, 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가 자력으로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등의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개인 채무조정 요청 대상은 계좌별 총 대출원금 3천만 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로서, 연체 시작일이 2024년 10월 17일 이후인 개인금융채권으로 한정된다. 또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및 제36조 제1항16)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 요청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다.

개인채무자가 적합한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채권금융기관은 동 법률 제34조17)에 따라 채무조정 내부 기준에 맞춰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채무조정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8조18)에 따라 개

15)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채무조정의 요청)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1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폐지·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16)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채무조정의 거절)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을 제37조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거절할 수 있다.

1. 제35조제1항 각 호의 경우
2. 개인금융채무자가 제35조제3항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의 수정·보완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9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채무조정을 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7)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채무조정내부기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원·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기준(이하 “채무조정내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18)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채무조정의 효력)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가 제36조제2항 또는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채무조정의 당사자는 그 조정서에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고 당사자가 조정서에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하면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제도 절차]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3)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제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관리공사법”)에 근거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자산관리공사법 제1조19)에 따라 개인채무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 금융회사에서 정리되지 못한 부실채권의 직접 매입을 통해 개인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또는 소각 등 채무종결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지원체계를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

- ② 개인금융채무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여부를 제36조제2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제안받은 날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효력은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개인금융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에게도 미친다.

19)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부실자산의 정리와 개인채무자 및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국가기관 등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제주체들의 재기를 도모하며 공공자산의 가치를 제고하여 금융산업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금융시장 안정 시에는 민간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등을 통해 정리되지 못한 부실채권 및 회수가능성이 없는 공공기관의 상각채권을 상시 매입하고 채무조정을 지원하며, 금융시장 위기 시에는 정부정책에 따라 배드뱅크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부실화된 대량의 채권을 일시에 매입하여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은 법원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와 같이 상환기간 연장, 원리금 감면 등을 지원하는 한편, 채권자 지위에서 금융취약계층을 불법·과잉추심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으며, 상환능력이 없는 개인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 종결까지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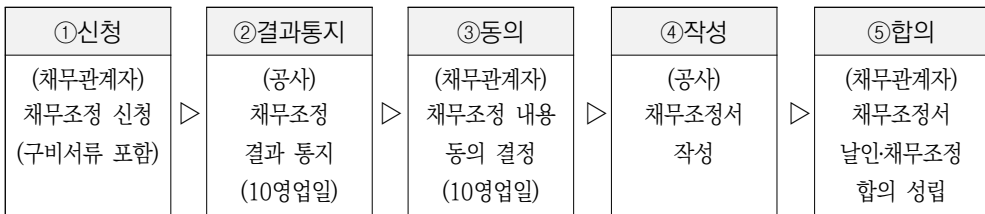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상시적 채무조정제도의 절차는 개인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상담을 진행하고, 채무자의 동의하에 재산, 소득 등 상환능력을 분석하여 채무조정 결과를 통지한다. 개인채무자가 채무조정 내용에 동의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무조정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채무조정서에 날인함으로써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된다. 이후 채무자는 채무조정서에 따른 변제계획안에 따라 상환함으로써 신용회복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시적 채무조정제도 개요]

구분	사업개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주요 내용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공공·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 채무자	원금감면을 최대 60%(취약계층 90%) 상환기간 최대 10년(취약계층 15년)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제도 절차]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나. 한시적 채무조정제도

한시적 채무조정제도는 경제위기, 감염병 대응, 고금리 지속 등으로 특정 시기에 채무상환 곤란이 급증한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일정한 기간 운영되는 특별 채무조정제도를 말한다. 상시적 채무조정제도가 일반 개인채무자에 대한 지속적 지원체계라면 한시적 채무조정제도는 대규모 연체나 구조적 부실이 단기간에 확대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보고서는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채무조정제도²⁰⁾ 중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에 대해 분석하였다. 두 제도는 모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형태로 설립하고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운영²¹⁾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지원 대상과 채무조정 방식, 정책목표에는 차이가 있다.

(1)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와 고금리 부담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2022년 10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현재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부실 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이며, 채무조정 대상 채무와 한도는 사업·영업 관련 모든 대출이며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까지이다.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방식은 채무자 및 대출 유형에 따라 매입형과 증개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새출발기금의 매입형 채무조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신청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추어 원금과 이자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순 부채 기준으로 원금을 60~80% 감면할 수 있으며, 저소득·취약 차주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할 수 있고, 이자와 연체이자도 전액 감

20)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한시적 채무조정제도는 1억원 이하 무담보대출을 6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채무자 지원 프로그램인 '국민행복기금',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의 정리를 위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고금리 장기화 및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정상적 사업운영과 재기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채무 상환능력을 상실한 장기연체자 채권(연체 7년 이상&원금 5천만원 이하)의 일괄 소각을 위한 '새도약기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1)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용회복위원회와 공동으로 운영 중에 있다. 새출발기금의 증개형과 새도약기금의 채무조정 대상 채권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면된다. 또한 최대 1년의 거치기간과 최대 10년의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반면 새출발기금의 증개형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동의를 거쳐 채무조정을 증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증개형은 원금감면은 없고 연체이자 감면과 금리 조정, 상환기간 연장 중심으로 지원하는 구조이다. 연체 30일 이하의 고금리 채무는 금리를 9%로 조정하고, 연체 30일 초과 채무는 별도의 조정금리를 적용하며,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연체 기간이 짧더라도 조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처럼 새출발기금은 동일한 제도 안에서도 차주의 연체 정도와 상환능력에 따라 지원방식을 달리 설계하고 있다. 즉, 부실이 심화된 차주에게는 원금감면 중심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아직 회생 가능성이 남아 있는 부실우려 차주에게는 금리 조정과 분할상환 중심의 채무조정을 적용하고 있다.

[새출발기금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장기·분할 상환 전환, 금리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 ◦ (지원내용) ① 원금조정(순 부채 60~80%), ② 금리감면, ③상환기간 연장(최대 10년, 부동산담보 및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최대 20년), ④ 거치기간 부여(최대 1년, 부동산담보 및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최대 3년), ⑤ 추심중단 등 ◦ (지원대상) 2020.4월~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부실(우려) 차주 ◦ (사업기간 / 수행주체) 2022.10.4~2026.12월 /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 (지원방식) 채무자 및 대출 유형에 따라 매입형 및 증개형으로 구분 		
구분	매입형 채무조정(한국자산관리공사)	증개형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지원 방식	새출발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신청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지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거쳐 채무조정 지원(비동의 시 새출발기금이 매입하여 지원)
대상채권	부실차주 신용·보증 채권	부실우려차주 신용·담보·보증채무, 부실차주 담보채무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금조정: 순부채의 60~80% 감면 (저소득·취약차주 최대 90%) ◦ 금리조정: 이자·연체이자 전액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금조정: 없음 ◦ 금리조정: (연체 30일 이하) 9% 초과 고금리는 9%로 조정, (연체 30일 초과) 조정금리 적용 * 취약차주에 한하여 연체 30일 이하도 조정금리 적용
만기연장	최대 1년 거치(부동산담보는 최대 3년), 최대 10년 분할상환(부동산담보, 취약계층 20년) * 저소득(매입형만 해당)·취약차주의 경우 최대 거치 3년 최대 20년 분할상환	
<p>* 취약차주: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이상 고령자</p> <p>* 저소득: 총채무액 1억 원 이하 & 중위소득60%이하 차주</p>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절차]

구분	개요
매입형	<p>[새출발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하여 채무조정 지원]</p> <pre> graph LR 1[① 새출발기금 신청] --> 2[② 신청자격 확인] 2 --> 3[③ 서류 제출] 3 --> 4[④ 도덕적해이 심사] 4 --> 5[⑤ 매입대상 확정] 5 --> 6[⑥ 채권 매입 새출발기금] 6 --> 7[⑦ 추가 서류 제출] 7 --> 8[⑧ 채무조정안 검토] 8 --> 9[⑨ 약정안 발송] 9 --> 10[⑩ 약정 체결] </pre>
	<p>[신용회복위원회 상담 및 접수, 담당 심사역 심사, 심의위원회 심의, 채권금융회사의 동의회신을 거쳐 채무조정 지원]</p> <pre> graph LR 1[① 중개형 채무조정 신청] --> 2[② 심사역 심사 및 접수] 2 --> 3[③ 채권신고요청 채권금융회사] 3 --> 4[④ 채무조정안 작성] 4 --> 5[⑤ 심의위원회 심의] 5 --> 6[⑥ 채권금융회사 동의 요청] 6 --> 7[⑦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 채무자] </pre> <p>* 심사, 심의, 동의요청 중 지속적 도덕적 해이 검증</p>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2) 새도약기금

정부는 2025년 취약계층이 부채 부담을 덜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특단의 채무 부담경감 방안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이하 “새도약기금”)을 추진하였다. 새도약기금은 대출 연체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경감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배드뱅크(Bad Bank)’ 역할을 하는 채무조정 기구를 설립하고 장기 소액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 개인 채권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심에 노출된 채무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2025년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하였고, 2026년부터는 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새도약기금은 금융회사와의 협약을 통해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추심을 즉시 중단하고 행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차주의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이에 따라 상환 능력을 사실상 상실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권을 소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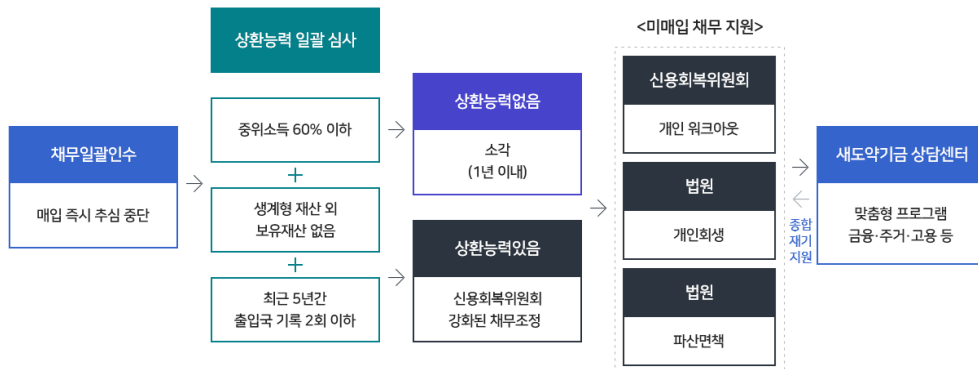
하고, 상환 능력이 일부 남아 있으나 채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원금 최대 80% 감면, 최장 10년 분할 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새도약기금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간(7년 이상) 채무 추심의 고통에 처해 있는 서민(개인, 무담보)의 채무를 소각(5천만 원 한도) 또는 채무 조정하여 정상 경제주체 복귀를 지원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출발기금과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하고, 협약 금융회사는 대상 채권을 기금에 일괄 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 → 소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 처분가능재산 無 ②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보다 강화된 채무조정 지원(예: 원금 최대 80% 감면, 분할상환 10년)
향후계획 및 지원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하여, '26년부터 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 실시 예정(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 지원목표: 차주수 113.4만 명, 채권액 규모 16.4조 원

자료: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추진 절차]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새도약기금은 신청 중심의 개별 조정보다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정리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새출발기금과 구별된다. 특히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처분 가능 재산이 없는 등 사실상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의 상환 불능 상태에 대해서는 채권 소각을 통해 재기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 채무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축형 채무조정제도이고,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개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구조적 정리 프로그램에 가깝다. 또한 새출발기금은 신청에 기초한 개별 심사가 중심인 반면, 새도약기금은 채무자 신청 없이 장기연체채권 매입 후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차이가 있다.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 비교]

구분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매입형	중개형	
출범시기	2022.10월		2025.10월
대상	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연체기간	90일 이상	연체우려 또는 90일 미만	7년 이상
지원 내용	순부채 기준 60~80% (저소득·취약계층 최대90%)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조정	상환능력 심사 후 일괄 소각(소각대상 아닐 경우 채무조정)
채무조정 심사기준	소득, 자산(신청 이후) * 가상자산 : 신청자 제출시 확인 가능		소득, 자산(일괄 매입) * 가상자산 :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일괄 확인(신용정보법 개정 중)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1

상시적 채무조정제도

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는 연체 우려 단계부터 장기 연체 단계까지 폭넓은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이다. 특히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에 비해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명하고 취약 차주의 초기 연체를 장기부실로 전이시키지 않는 예방적 기능과 장기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장점이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증개형 채무조정, 새도약기금 관련 채무조정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연체 기간, 채무 규모, 상환 능력, 취약계층 여부 등에 따라 적용 대상과 감면 수준을 달리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다수의 금융회사와 협약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가 제도적 기반과 운영 규모에 비해 충분히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취약계층 채무 감면 기준과 상환기간의 적정성, 채무조정 실효율²²⁾ 개선, 채무조정제도 간 형평성 문제 등은 주요한 쟁점으로 제기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현황]

구분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연체기간	연체기간 30일 이하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연체기간 90일 이상
지원 내용	연체이자 감면	연체이자 감면	연체이자 및 이자, 원금감면
	분할 상환, 상환유예, 이자율 조정	분할 상환, 상환유예, 이자율 조정	분할 상환, 상환유예
	추심 중단, 단기 연체 정보 해제	추심 중단, 단기 연체 정보 해제	추심 중단, 연체정보 및 채무불이행자 정보 해제 등

주: 제도별 지원내용은 일반대상 기준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22) 채무조정 실효(失效)란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채무조정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의미한다.

(1) 취약계층 채무원금 감면율과 채무상환 기간 개선 필요

코로나19 시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서민, 자영업자 등은 생계비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부채가 증가했다. 최근까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내수가 회복되지 못하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2025년 기준 연간 약 38만 명에 달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및 법원 개인회생·개인파산 연도별 신청·접수 현황]

(단위: 만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채무조정 신청	9.3	10.7	11.6	11.4	12.1	16.8	17.5	18.9
개인회생 접수	9.1	9.3	8.7	8.1	9.0	12.1	12.9	14.9
개인파산 접수	4.3	4.6	5.0	4.9	4.1	4.1	4.0	4.1
합계	22.7	24.6	25.3	24.4	25.2	33.0	34.4	37.9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통계 월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정부는 2016년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과 감면 폭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양적인 채무조정 건수의 증가에 비해 실질적인 재기 지원 효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정부는 2019년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개편하여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에 대한 신속 지원, 연체 초기 채무원금 차등 감면, 상환 능력이 취약한 채무자의 특별감면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도 서민·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자, 2024년에는 취약계층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였고, 2026년에는 새도약기금 등을 통한 장기연체채권 소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청년, 자영업자 등 상환 능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해 신속채무조정 및 사전채무조정 특례, 개인워크아웃 특례, 주택담보대출 특례 등을 운영하면서 일반 채무자보다 높은 수준의 감면과 상환 유예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주요 채무조정제도 개선 정책 방안 개요]

구분	주요 내용
<p>「효율적 개인채무조정을 위한 개선방안」 (2016.1.)</p>	<p>① 연체 이전 단계: (연체 우려자 지원) 은행권 공동으로 연체 우려 채무자 지원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사전 채무관리)” 도입</p> <p>② 연체 이후 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권 자체 워크아웃) 채무자의 실질 상환능력을 반영한 채무조정, 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폭 확대, 미상각채권 채무조정 적극 추진 • (신복위 워크아웃) 채무자의 가용소득에 따라 채무감면폭 차등화, 매입채권 탄력적 감면을 적용, 취약계층 채무부담 대폭 완화, 소멸시효 완성채권 채무조정대상 제외, 채무조정 심사강화 <p>③ 수요자 중심의 채무조정: 연체 발생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안내 의무화, 신용상담 내실화, 취약계층 법원절차 연계</p>
<p>「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2019.2.18.)</p>	<p>① (연체 前~연체 초기) 연체가 우려되는 성실상환채무자에게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 도입</p> <p>② (연체 90일~채무상각) 미상각 연체채무에 대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미상각채무에 대한 원금감면 제도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미상각 채무원금 미감면 → (개선) 미상각 채무원금 0~30% 차등 감면 <p>③ (채무상각 後) 채무감면율을 추가 확대하고 채무자별 상환능력을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채무감면율 산정체계 개편 및 최대감면율 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채무원금 30~60% 감면 → (개선) 채무원금 20~70% 감면 <p>④ (상환불능 단계)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능력이 취약한 취약계층이 잔여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특별감면제도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연금수령자, 만 70세 이상, 장기소액연체자 등
<p>「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 (2024.10.2.)</p>	<p>① 과중 채무자를 선제적으로 선별하여 대상별 맞춤형(금융교육, 컨설팅 등)</p> <p>② 신용회복위원회 맞춤형(취약층, 청년층 등) 채무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층) 단기연체자(30일 이하) 원금감면,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 (청년층) 일시완제시 원금 20% 감면, 직업훈련비 지원, 교육멘토링 • (취업자) 취업 성공시 채무조정 감면을 확대 <p>③ 새출발기금 확대, 주택연금을 통한 지원 강화</p> <p>④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한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p>
<p>「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방향 (2026.1.)</p>	<p>[취약계층 채무조정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도약기금 설치운영: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연체채권 소각채무조정 •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지원대상 확대, 저소득층 취약계층 원금감면을 상향 및 상환기간 연장, 소요기간 단축 등 • 취약채무자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대상 확대(1.5천만 원→5천만 원) •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금융업권 채무조정 내실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첫째, 정부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에서 취약계층의 채무원금 감면율을 높이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해 왔음에도, 실제 취약계층의 채무원금 감면율은 과거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채무원금 감면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인원은 2018년 9.3만 명에서 2025년 18.9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최근 사전채무조정과 신속채무조정 인원의 증가율이 높았지만, 전체 채무조정 실적 절반 이상을 개인워크아웃이 차지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연도별 실적 현황]

(단위: 만 명)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누계
신속채무조정	-	-	0.1	0.6	1.1	1.7	4.3	4.7	5.4	17.8
사전채무조정	12.2	2.1	2.5	2.2	1.7	2.3	3.8	3.5	3.6	33.9
개인워크아웃	132.2	7.2	8.1	8.7	8.6	8.1	8.7	9.3	10.0	200.9
합계	144.3	9.3	10.7	11.6	11.4	12.1	16.8	17.5	18.9	252.6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현재 신속사전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에게 이자율 감면을 지원하되, 특례 대상(취약계층)은 원금 일부(최대 15%~30%)를 감면한다. 개인워크아웃의 채무원금 감면율은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최대 70% 감면(미상각 30%, 상각 70%)이 가능하며, 취약계층은 최대 90%(미상각 50%, 상각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감면율 기준]

구분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일반	이자율 인하(30%~50%), 분할 상환(최장 10년)	이자율 인하(30%~70%), 분할 상환(최장 10년)	이자 전액 감면, 채무원금(상각 채권 20~70%, 미상각채권 30%) 원금감면, 분할 상환, 상환유예 등
특례	이자 전액, 원금 최대 15% 감면	이자 전액, 원금 최대 30% 감면	이자 전액 감면, 채무원금 최대 90% 감면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정부는 여러 정책 방안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통한 채무 감면율은 2025년 기준 신속채무조정의 이자율 감면율은 평균 44.3%, 사전채무조정의 이자율 감면율은 평균 62.2%, 개인워크아웃의 원금 감면율은 평균 44.1%로 이전보다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별 감면율 현황]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신속채무조정	-	33.2	31.2	27.8	27.5	40.3	43.2	44.3
사전채무조정	55.4	54.4	53.1	53.8	63.0	62.4	61.9	62.2
개인워크아웃	26.8	30.1	39.3	43.6	43.8	41.0	42.7	44.1

주: 신속/사전채무조정은 이자율 감면, 개인워크아웃은 원금 감면을 의미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에 취약계층인 특례 대상은 채무 원금을 감면해준다. 신속채무조정은 2025년 기준 평균 14.1%(최대 15%), 사전채무조정은 평균 27.9%(최대 30%)로 최대 감면율 기준에 근접하였다. 그러나 개인워크아웃은 2025년 기준 일반 평균 감면율은 40.8%(최대 70%), 특례 대상인 취약계층은 평균 56.9%(최대 90%)로 일반보다 약 16%p 정도 높은 편이지만 2021년 이후 큰 변동은 없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유형별 이자 및 원금 감면율 현황]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신속	일반	제도	33.2	31.2	27.8	27.5	40.3	43.2	44.3	
	특례	시행 전	제도 시행 전						14.1	
사전	일반	55.4	54.4	53.1	53.8	63.0	62.4	61.9	62.2	
	특례	제도 시행 전						28.0	27.8	27.9
개인워크아웃	일반	25.0	27.2	35.6	39.0	38.9	37.2	39.6	40.8	
	특례	기초수급	50.9	57.8	63.1	65.2	66.0	64.1	64.8	66.4
		중증장애	43.3	50.2	54.6	56.6	54.8	54.9	54.3	59.5
		고령자	30.3	36.3	48.0	56.7	57.1	56.3	55.7	55.8
		기타	29.1	33.5	43.6	46.5	45.5	43.0	44.9	46.0
평균	38.4	44.5	52.3	56.3	55.9	54.6	54.9	56.9		

주: 1. 확정자 중 지원구분 새출발기금 감면을 산정 제외
 2. 신속/사전 채무조정의 일반은 이자율 감면, 특례는 원금 감면이며, 개인워크아웃은 모두 원금 감면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특례 대상의 평균 채무감면율이 평균 56.9%이고, 법원 개인회생의 2022년~2025년간 평균 채무감면율²³⁾이 64.6%²⁴⁾로 나타

23) 개인회생 변제율은 총채무액 중 실제 갚아야 할 변제금 총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100%에서 변제율을 제외하면 채무감면율이 된다.

나 법원의 취약계층 감면율이 다소 높은 수준이다. 한편, 법원의 개인회생은 채무상환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보다 조기 신용회복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법원의 개인회생은 법적 강제력에 의한 채무면책 제도이고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자의 동의 기반의 자발적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이라는 차이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법원 연도별 개인회생 사건 변제율 및 감면율]

(단위: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	평균
변제율(중위값)	38.0	36.0	34.2	33.2	35.4
감면율	62.0	64.0	65.8	66.8	64.6

주: 변제율은 채권현재액 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감면율은 (100%-변제율)로 계산
 자료: 서울회생법원, 「2025년 상반기 개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2025.11.6.

정부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개인워크아웃 기준)에서 사회취약계층, 대학생, 미취업청년, 군 복무자 등은 70~90%까지 채무 원금감면을 규정하고 있지만, 미상각채권의 채무감면이 최대 50%까지로 제한되어 실제 채무감면율은 이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정부는 취약 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대상²⁵⁾을 확대하였지만, 채무원금의 월 상환액 감면이 아니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상환 여력을 높이는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²⁶⁾.

정부는 최근 취약계층 비중이 점차 상승²⁷⁾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여 효과적인 신용회복이 되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4) 개인회생 채무자의 평균 70.6%가 감면율 50% 이상을 받고 있다고 한다.

25) 정부는 2026년부터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이 채무조정 계획에 따라 3년 이상 성실 상환한 경우 (조정된 채무 절반 이상)에 잔여 채무를 면책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대상 금액을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였다.

26) 채무조정 이후 1년 이내에 합의안을 이행하지 못하고 실효하는 비율이 가장 빈번하기 때문에 채무조정 초기에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자료: 임형석, "채무조정 실효율 특징과 시사점", 「금융 포커스」, 2022.10.)

27) 2025년 4/4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은행(0.39%→0.38%)이 완만한 내림세를 유지하였다. 차주수 기준으로 취약 차주 비중은 정부의 신용회복 지원정책 등에 힘입어 감소하다가 연말 소폭 증가(6.4%→6.7%)하였으며, 잠재 취약 차주 비중은 상승세(17.8%→18.0%)를 지속하고 있다.(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 2026.3.26.)

둘째, 정부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의 채무원금 변제기간을 축소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음에도, 평균 상환기간은 여전히 1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은 신속한 경제적 재기 지원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채무상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주요국은 채무조정제도의 변제기간을 5년 내외로 운용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채무조정 기간을 단축하여 장기적인 채무상환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해외사례로만 변제기간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인 판단 근거로 보기 어렵고, 변제기간 축소보다는 월 변제금을 하향 조정하여 채무자의 상환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채무조정 성공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다²⁸⁾.

[주요국의 사적채무조정제도 비교]

구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한국
채무조정 중재기관	NFCC 등 민간단체	CA, SCDC 등 민간단체	변호사, 소비자 단체 등	크레디트카운 셀링협회, 변호사	신용회복 위원회
조정대상 채무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협약가입 기관채무
신청자격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변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중채무자	다중채무자, 채무액, 자산 등 자격제한
변제기간	3~5년	최장 10년	통상 6년	3~5년	최장 10년

자료: 남주하, “채무조정제도의 특징과 개선방안”, 하나금융경영연구소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제14권10호, 2024

금융위원회는 2019년 채무조정제도 개편을 통해 채무 감면 폭이 확대되면 채무상환 기간도 6.4년에서 5년 미만으로 단축되고, 그에 따라 채무조정 실효율도 하락하여 채무자의 재기 지원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의 평균 채무상환 기간은 약 9~10년, 개인워크아웃은 평균 채무상환 기간은 약 7.5년(90.4개월)로 오히려 다소 길어지고 있다.

28) 오윤해, 「개인채무조정제도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KDI, 2014.1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평균 채무감면율 개선 26.1% → 42~45%	⇒	평균 채무상환 기간 단축 6.4년(77개월)→4.9년(59개월)	⇒	실효율 하락 28.7%→25% 미만
-------------------------------	---	--	---	------------------------

자료: 금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2019.2.18.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평균 상환기간 현황]

(단위: 개월)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신속채무조정	-	113.5	111.5	1137	1120	1136	113.6	115.0
사전채무조정	104.2	106.0	109.2	1112	1115	1140	115.0	116.2
개인워크아웃	78.8	80.6	82.5	84.2	85.4	87.6	88.6	90.4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실효 건수는 2018년 2.1만 건에서 2025년 2.9만 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고금리·고물가와 내수부진 등으로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저하되어 채무조정 확정자 수가 증가한 것이 가장 주된 이유일 수 있지만, 취약계층 중심으로 채무조정제도의 평균 채무감면율과 평균 상환기간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채무조정 실효건의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²⁹⁾.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실효자 수 현황]

(단위: 천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신속채무조정	-	-	0.3	1	3	5	9	14
사전채무조정	6	5	5	6	7	9	12	15
개인워크아웃	21	18	15	18	20	22	24	29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특히, 코로나19 이후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과 자산 축적도가 낮은 청년층(20~30대)은 주택 구입, 주식투자 등을 위한 부채가 증가하면서 고위험가구³⁰⁾ 중 청년층 비중의 증가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 청년층의 채무조정 수요가 높은 편이다.

29) 취약계층의 경우 채무상환의 부담으로 채무조정안 이행이 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상당하며, 개인워크아웃의 채무감면율이 낮을수록 실효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료: 박정수·남주하, “개인 워크아웃제도의 유효성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Vol 23(3), 2017.)

30) 한국은행에서 정의하는 고위험가구는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DSR) 40%),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상환이 어려운(DTA)100%) 가구이다.

[고위험가구 연령별 비중 증감]

(단위: %, %p)

구분	청년층			중년층			고령층		
	2020	2025	증감	2020	2025	증감	2020	2025	증감
비중	22.6	34.9	12.3	59.8	53.9	△5.9	17.6	11.2	△6.4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 2026.3.26.

실제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의 특례 대상 중 2025년 기준 ‘미취업청년·대학(원)생’ 특례 적용 인원은 11,723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청년층의 채무감면율은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낮았고, 평균 상환기간도 다른 연령에 비해 큰 차이는 없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확정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신속 사전	특례	제도 시행 전						-	4,095
	특례	제도 시행 전						3,143	5,330
개인 특 례	미취업청년· 대학(원)생	4,575	5,098	5,962	9,465	9,656	10,726	10,464	11,723
	군복무자	203	333	354	286	321	368	379	362
	중소기업인· 재창업	215	115	120	161	74	79	70	57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	1,137	2,458	3,846	4,258	4,456	5,115	5,787
	소액채무자 특별면책	제도 시행 전						-	633
	해외동포	3	1	12	10	8	10	6	2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연령별(법인제외) 평균 감면율 현황]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개인 워크 아웃	20대	17.8	20.8	28.7	28.0	28.5	29.1	32.5	36.5
	30대	22.9	25.4	34.4	37.6	37.3	36.0	39.3	41.1
	40대	27.6	30.9	40.1	44.1	44.3	41.2	42.9	45.1
	50대	30.8	33.2	42.0	47.5	48.0	44.8	44.8	45.4
	60대 이상	32.0	36.6	46.3	53.1	54.8	51.5	50.8	49.5
	전체	26.8	30.1	39.3	43.7	43.8	41.1	42.8	44.3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연령별(법인제외) 평균 상환기간 현황]

(단위: 개월)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개인 워크 아웃	20대	68.5	69.9	72.3	76.7	80.5	83.0	83.7	86.5
	30대	76.7	78.4	79.5	80.9	83.0	85.1	85.6	88.1
	40대	81.3	82.9	84.7	85.6	86.6	88.9	90.2	91.6
	50대	81.3	83.1	85.8	86.7	87.2	89.2	90.1	91.5
	60대 이상	82.3	83.1	85.0	86.3	87.1	89.7	91.1	92.3
전체		78.8	80.6	82.5	84.1	85.4	87.5	88.6	90.3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를 통해 채무원금이 5,000만 원 이하인 취약계층이 조정 채무액을 최소 3년 이상, 2분의 1 이상을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는데 신청 대상에 청년층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신용회복위원회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신청 대상]

채무원금 합계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취약 채무자(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연체 기간이 10년 이상인 채무자)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실적]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기초수급자	미시행	776	1,981	3,451	3,804	4,059	4,753	5,223
중증장애인		19	40	106	138	116	140	187
고령자		61	67	57	51	71	64	89
장기연체자		281	370	232	265	210	158	288
합계		1,137	2,458	3,846	4,258	4,456	5,115	5,787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자 평균 채무원금 감면율 및 채무상환기간]

(단위: %, 개월)

구분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전체
평균 채무원금 감면율	94.1	95.5	85.6	82.7
평균 채무상환 완제기간	40.3	40.1	40.3	39.8

자료: 신용회복위원회(2025년 12월 기준)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과 유사하게 2024년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의 신속한 구제와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개인회생 사건에서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게 규정을 개정하였다³¹⁾.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증장애인, 30세 미만의 청년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30세 미만의 청년의 비율이 64.5%로 채무상환 단축 수요가 가장 높았다.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사건 변제기간 단축 사건 사유별 현황]

(단위: %, 개월)

구 분	2024년		2025년 상반기	
	비율	평균 단축 기간	비율	평균 단축 기간
원금 100% 변제	24.9	27	30.9	27
65세 이상 노인	5.1	25	6.6	24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0.9	26	0.7	25
30세 미만의 청년	64.5	25	57.0	24
다자녀 양육자	0.6	26	2.4	25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1.2	26	0.3	26
전세사기피해자	2.8	25	2.1	24

자료: 서울회생법원

채무조정제도는 원활한 채무원금 상환을 도모하는 데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채무자의 신속한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 지원에 있다. 따라서 채무조정제도 운영에 취약계층의 채무 감면율과 상환기간 단축 효과를 높이고 특히, 경제활동 복귀의 수요가 높은 청년층의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청년층 채무조정이 단순한 채무감면에 그치지 않도록 청년층 맞춤형 금융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안정적인 금융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31) 「서울회생법원 실무 준칙」

제424호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2024.12.17. 개정)

제2조(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②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도 그 변제기간을 3년 미만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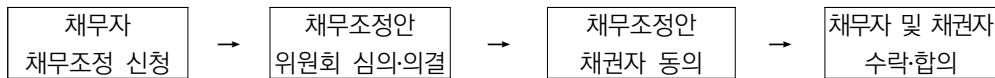
1.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30세 미만의 청년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6. 전세사기피해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이르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 받은 자

(2) 채무조정 체결 절차 및 채무 감면 방식 개선 필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① 개인채무자가 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② 위원회가 금융회사로부터 신고받은 채무내역과 개인채무자의 자산, 소득 수준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안을 심의·의결하며, ③ 채무조정안에 대해 채권 총액 중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하는 금융회사가 동의하고 이에 대해 개인채무자가 수락하면 합의가 성립되는 구조이다³²⁾.

채무조정 방법은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 감면 등이다³³⁾. 이자율 조정과 채무 감면 범위는 신용회복지원협약 기준에 따라 채권의 종류와 채무자의 자산 및 상환 여력, 변제계획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3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채권금융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의 채무내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금융회사는 그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해당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에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확정된다.
-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는 경우 그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 및 채권금융회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의 세부절차 및 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8.>

1. 상환기간 연장
2. 분할상환
3. 이자율 조정
4. 상환 유예
5. 채무감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첫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안이 채권총액 비중이 높은 대부업체의 부동의로 인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채무원금을 기준으로 채무조정안 동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과 담보채권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확정된다³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안에 대한 금융회사의 동의율은 2020년 이후 93.9~94.5% 수준이며, 부동의율은 5.5%~6.1%로 나타나고 있다³⁵⁾. 2025년 기준 전체 금융회사는 총 2,432,453건의 동의 회신 요청(채무자 423,367명, 1인당 5.7개 기관), 이 중 동의는 2,338,332건으로 동의율은 96.1%, 부동이는 94,121건으로 부동의율은 3.9%였다.

[금융회사 개인채무조정 동의율 현황(채무자 기준)]

(단위: 명,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동의회신 대상(a)	171,586	196,916	284,743	262,480	257,077	330,532	365,721	423,367
동의처리건(b)	157,061	178,404	267,370	247,078	241,941	312,473	343,895	397,682
부동의처리건(c)	14,525	18,512	17,373	15,402	15,136	18,059	21,826	25,685
동의율(b/a)	91.5	90.6	93.9	94.1	94.1	94.5	94.0	93.9
부동의율(c/a)	8.5	9.4	6.1	5.9	5.9	5.5	6.0	6.1

주: 부동의처리건이란 금융회사의 부동의 의결권이 50%를 초과하여 부동의 처리된 신청자 수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2025년 기준 업권별 동의율은 이동통신사, 소액결제사, 공공요금(한전) 등이 100%로 가장 높고, 동의율이 낮은 업권은 손해보험사 87.2%, 대부업 88.3%, 유동화전문회사 88.4% 등의 순이었다.

3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채무조정절차)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회사등에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금융회사등은 그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해당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에서 유효 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등이 동의하는 경우 확정된다.

35) 1차 부동의라도 재심사 등을 통해 최종동의되는 비율은 0.9%라고 한다.

[금융회사 업권별 개인채무조정 동의율 현황(채권자 기준)]

(단위: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카드사	98.9	98.1	99.3	99.4	99.5	99.6	99.5	98.8
자산관리회사	93.1	93.0	97.8	96.7	95.4	93.9	93.6	96.0
대부업	88.7	86.8	89.8	90.1	90.0	89.9	87.6	88.3
은행	96.8	95.0	98.5	98.3	98.4	98.0	97.8	98.6
보증기관	95.9	96.5	97.4	97.5	98.1	98.4	97.7	98.0
상호저축	96.1	96.0	97.7	97.9	97.7	98.2	98.1	99.1
할부금융사	97.0	96.2	97.8	97.4	97.1	97.2	96.7	95.5
이동통신사							100	100
소액결제사							100	100
증권/투신	100	100	100	100	100	100	99.6	97.4
유동화전문회사	97.2	98.3	99.0	97.8	98.0	98.3	95.2	88.4
농협/축협	97.0	96.5	97.2	97.1	96.8	97.3	97.3	98.5
생명보험사	88.2	88.4	95.0	91.1	92.0	93.5	94.6	90.6
공공기관	95.2	94.5	95.9	98.1	95.9	95.2	87.3	92.9
리스/신기술금융	77.9	80.8	85.1	85.0	86.7	87.8	85.1	90.4
신협	98.4	98.6	98.4	98.8	98.4	98.6	98.2	98.8
새마을금고	97.3	97.9	98.2	98.3	98.3	97.9	97.8	98.4
파산금융기관	72.4	81.8	89.4	99.3	99.6	99.4	99.4	99.5
사업수행기관	99.6	99.6	99.7	99.5	99.7	99.5	99.6	99.6
손해보험사	65.2	69.2	85.7	83.7	84.2	90.4	93.3	87.2
알뜰폰							100	99.9
수협	97.7	95.2	98.5	98.3	98.8	98.9	98.8	98.5
산림조합	99.0	99.1	98.5	98.1	95.7	98.4	99.0	98.5
공공요금(한전)								100
평균	93.9	93.2	95.8	95.8	95.9	96.0	95.3	96.1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그런데 주요 업권별 동의 요청 건수 상위 5개 기관의 요청 건수는 평균 75.2%의 비중을 차지하며, 이들의 부동의율은 3.7%로 전체 기관 평균 4.0%보다 낮았다³⁶⁾. 그러나 대부업은 전체 360개 중 상위 5개 업체(1.6%)가 전체 동의 요청 건수의 28.3%를 차지하고, 상위 5개 업체의 부동의율은 14.3%로 전체 부동의율(11.6%) 보다 높았다.

36) 금융회사 업권 내에서는 기관별 동의 요청 건수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동의 요청 건수 상위 기관을 중심으로 동의율과 부동의율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 업권별 개인채무조정 동의요청 상위 5개 기관 부동의율]

(단위: 개, 건, %)

구 분	기관수	전체 기관 기준			동의요청 상위 5개 기관 기준			상위 5개 기관 비중 (C/A)
		동의요청 (A)	부동의 (B)	부동의 회신율 (B/A)	동의요청 (C)	부동의 (D)	부동의 회신율 (D/C)	
은행	20	234,724	3,385	1.4	138,887	2,425	1.7	59.2
카드사	8	552,088	6,484	1.2	468,200	2,586	0.6	84.8
보증기관	28	231,885	4,547	2.0	209,508	3,540	1.7	90.3
대부업	360	397,966	46,095	11.6	112,819	16,117	14.3	28.3
자산관리회사	94	495,182	19,635	4.0	156,052	4,178	2.7	31.5
리스/신기술금융	13	9,791	925	9.4	9,633	918	9.5	98.4
상호저축	77	192,675	1,677	0.9	92,995	224	0.2	48.3
할부금융사	30	84,922	3,811	4.5	69,137	2,001	2.9	81.4
생보사/손보사	26	20,347	2,004	9.8	15,411	1,232	8.0	75.7
공공기관	6	12,423	878	7.1	12,422	878	7.1	100.0
이동통신사	3	54,033	1	0.0	54,033	1	0.0	100.0
알뜰폰	28	2,274	2	0.1	1,801	0	0.0	79.2
소액결제사	7	41,402	0	0.0	41,387	0	0.0	100.0
평균	-	-	-	4.0	-	-	3.7	75.2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이처럼 대부업체의 부동의율이 높은 원인에는 현재 서민금융법에서 채권총액(원금+이자+비용)을 기준으로 채무조정 동의권을 부여하여 고금리 또는 장기 연체 채권을 보유한 대부업이 큰 비중의 채무조정 동의권을 갖고 채무조정안의 부동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인다. 이에 따라 채권총액이 아닌 금융회사가 실제로 감수한 손실위험인 채권 원금에 상응해 채무조정안 동의권을 부여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채무조정안 동의 절차 개정법률안]

의안명	의안번호 (발의일자)	대표발의자	주요 내용	비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489 (2025.11.24.)	이인영의원	채무조정안 확정 절차가 채권 총액 기준에서 채권 원금 기준에 부합하는 채권금융회사등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	-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고금리 대부업체 채무를 보유한 채무자는 상대적으로 취약 금융 계층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대부업체가 채무상환의 위험이 큰 저신용자에게 자금을 제공한 것은 더 높은 수준의 위험을 감수한 것이기 때문에 채권총액 기준으로 동의권을 부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채무조정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환 여력을 높여 경제적 재기를 도모한다는 목적을 고려할 때, 현행 채무총액에 따른 의결권 부여 기준은 대부업체에게 과도한 의결권을 부여하면서 채무자의 채무조정 체결을 저해하거나, 채무조정의 거절로 인해 취약계층인 채무자가 과도한 추심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³⁷⁾.

장기 연체채무자를 보호하는 채무조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서민금융법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안 체결 동의 기준을 채권총액이 아니라 채권원금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³⁸⁾.

둘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원금 감면율이 채무자의 채무원금, 가용소득, 연체 기간을 중심으로 산정되어 채무 발생 사유와 미래 상환 가능성 등을 폭넓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채무조정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통상 90일 이상 연체자에 한해 채무원금 감면을 적용한다. 채무조정 신청자의 채무원금 감면율은 먼저 채무원금과 가용소득을 기초로 ‘채무과중도’를 산출한 다음, 산출된 채무과중도를 선형확률회귀모형에 넣어 산정하는 방식이다³⁹⁾. 그리고 채권의 상각 여부에 따라 감면율 범위가 달라진다. 이처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감면율은 가용소득 대비 채무원금에 기초한 채무과중도, 채권의 상각 여부, 연체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37) 채권자의 실질적인 손실위험은 실제 투입자본인 채무원금으로 채무원금에 대한 이자는 채권자의 기대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채무원금에 채무이자까지 포함하여 채무총액으로 동의권을 부여하게 되면 적은 자본투입에도 고금리를 이용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38) 금융위원회는 현행 의결권(동의권) 산정 기준은 상대적으로 고금리 채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대부업체에 과도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채무조정 거절 시 취약계층인 채무자를 과도한 추심환경에 노출시킬 수 있어 채무자의 채무조정 실효성을 저해하고, 채무 총액 기준 의결권 산정은 금융회사가 실제 감수한 손실위험(원금)에 상응하는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에게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채권원금 기준으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자료: 정무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26.3.)

39) 신용회복위원회의 현행 채무감면 모형은 한국개발연구원(2019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구축하였고, 이후 자체 모형 개발(2021년, 2023년, 2024년)을 추진해 왔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감면을 산정 개요]

(1) 채무과중도

$$\text{채무과중도} = \text{채무원금 (백만원)} - 36 \times \text{가용소득 (백만원)}$$

*가용소득 = 월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생계비 - 제외채무 월 상환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시세 - 담보채무 잔액 - 면제재산액) × 월 1.04%

- 생계비: 법정 최저 생계비의 150% (기준 중위소득 60%)
- 담보채무 잔액: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대출잔액을 의미, 채무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 보증금도 포함
- 면제재산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에 따라 파산신고시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 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액과 6개월간의 생계비

(2) 감면을

$$\text{상각채권 기본감면율} = \max [20, \min [1.38 \times \text{채무과중도} + 20, 70]]$$

$$\text{미상각채권 기본감면율} = \max [0, \min [0.83 \times \text{채무과중도} + 20, 30]]$$

* 채무자 연체기간이 길수록 추가감면 가산치 부여 (상한 5%)

(~36개월) 0%, (37~72개월) 1.0%, (73~119개월) 3%, (120개월~) 5.0%

* 자영업자는 추가감면율 적용 (상한 5%): 일반과세자 2.5%, 간이과세자 5.0%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방법(채무감면 기준) 비교]

구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중개형)
무담보 채권	미상각채권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원금 최대 50% 범위 내(채권발생일로부터 12개월 경과, 연체기간 3개월 이상에한함)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원금의 최대 30%
	상각채권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원금 20 ~ 70% 범위 내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원금의 최대 70%
담보 채권	미상각채권	·담보설정액을 초과하는 연체이자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연체이자, 이자 순으로 감면(단, 부동산 담보채권은 이자 감면 불가)
	상각채권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원금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연체이자, 이자, 원금 순으로 감면하고, 원금은 최대 70%까지 감면(단, 부동산 담보채권은 이자 및 원금 감면 불가)
보증채권		·채무관련인 수로 안분 후 감면기준 적용	-
이자채권		·이자 또는 연체이자의 90% 범위 내	-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인채무조정방법(별표1)(2025.11.11.)을 바탕으로 작성

이러한 채무원금 감면방식에서는 채무 연체 기간이 길수록, 채무 금액이 많을수록, 상각 채권 비중이 높을수록 감면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채무자가 감면 폭을 확대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연체를 장기화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⁴⁰⁾.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의 감면 기준이 서로 다르고, 채무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채권자인 금융회사의 상각 여부에 따라 감면 수준을 달리한다면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⁴¹⁾⁴²⁾.

우선 단순한 채무원금-가용소득 기반의 획일화된 산식에서 벗어나, 채무자의 나이, 성별, 직업, 부양가족, 주거 현황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는 채무 감면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위원회 내 심의위원회가 채무조정안을 조정하고 있는 만큼, 정성적 심사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여 채무자별 맞춤형 채무 조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⁴³⁾. 그리고 채무조정 기준과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여, 신청자가 사전에 자신의 채무 감면 수준을 예측할 수 있고 외부에서 채무조정 기준의 정합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는 단순히 채무조정 확정자의 실효건수만 관리하고 있는데, 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주기적인 조사와 평가를 통해 채무조정 방식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40) 신용회복위원회는 의도적 연체 장기화가 이론적으로는 제기될 수 있지만, 연체 장기화 시 신용정보 등록추심·금융거래 제한 등의 채무자의 불이익을 고려할 때 인해 의도적으로 연체를 장기화할 유인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하였다.

41) 대표적으로 보증기관의 보증채무는 상각유인이 크지 않아 채권이 상각되는 경우가 적고 이에 따라 보증부대출은 일반 금융회사에 비해 감면율이 낮아 채권자의 형평성도 저해된다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1.12.29.)

42) 본 보고서에서 공공기관의 상각 기준을 조사한 결과 상각 기준이 모호하거나, 채권 소각에 준하는 상각 기준을 적용하면서 공공기관 보유 부실채권의 상각 비중은 평균 16% 정도에 불과했다.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공공기관 개인금융부실채권에 대한 분석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43) 신용회복위원회는 심의위원회에서 개별 사안에 대한 조정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3) 비금융채권의 채무조정 확대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의 활성화 필요

2025년 국회와 정부는 서민금융법과 같은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취약 개인 채무자의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였다⁴⁴⁾.

이에 따라 같은 법률 시행령은 알뜰폰 사업자⁴⁵⁾와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자⁴⁶⁾, 한국전력 등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⁴⁷⁾. 2025년 기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체결 건수 중 이동통신사, 알뜰폰, 소액결제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력 등은 6.3만 건이 체결되었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된 채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1주택 소유자이며, 지원내용은 연체이자 감면, 최장 3년 거치, 최장 35년 이내 분할 상환 등이다. 특례 대상인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채무자에게는 약정이자율 인하, 담보권 실행 유예, 담보주택 매매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4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의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3의3.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3의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3의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5) 기간통신사업자(SKT, KT, LGU+)로부터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동통신사업(사물인터넷 제외)을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46)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시 휴대폰 인증을 통해 이용대금을 다음 달의 통신 요금과 함께 청구될 수 있도록 하는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47) 신용회복위원회는 2024년 6월에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융·통신채무의 채무조정을 지원해왔으며, 2022년 한국장학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학자금대출 통합 채무조정을 지원해왔다.

[신용회복위원회 비금융채무 채무조정 체결 계좌 건수]

(단위: 건)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체 기관	656,337	706,540	693,601	774,022	1,087,607	1,160,072	1,277,467
이동통신사	제도 시행 전					11,827	34,560
알뜰폰	제도 시행 전					478	1,170
소액결제사	제도 시행 전					3,118	23,626
한국장학재단	제도 시행 전			3,127	3,350	3,201	3,946
공공요금(한국전력)	제도 시행 전						57
소계							63,359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제도 개요]

구 분	신청대상	지원내용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 1주택 소유자(공유지분은 지원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감면: 연체이자 전액 감면 • 거치기간: 1년 단위 최장 3년 거치 • 분할상환: 최장 20년 이내(원리금균등)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 (실수령액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감면: 연체이자 전액 감면 • 거치기간: 1년 단위 최장 5년 거치 • 분할상환: 최장 35년 이내(원리금균등) • 이자율 조정: 약정이자율의 최대 50% 인하 • 담보권 실행유예 및 담보주택 매매지원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법원이 결정한 자(+특례대상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치기간: 1년 단위 최장 3년 거치 • 분할상환: 최장 35년 이내(원리금균등) • 이자율 조정: 약정이자율의 최대 50% 인하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한편 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에서는 채무조정 대상에 신용대출만 포함되고, 담보대출은 담보 처분을 통해 변제되도록 제외된다.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의 협력을 통해, 개인회생 개시 결정 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특례 대상 채무자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첫째, 정부는 통신비, 전기요금 등의 비금융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점차 포함하고 있지만, 현재 채무조정에 포함되지 않는 건강보험료, 수도·가스요금, 국세·지방세 등의 공적 채권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대상 통합적 채무조정 연계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 채권은 신용회복지원협약이 체결된 기관의 채권이며, 채권의 범위는 서민금융법 제71조 제2항48)에 따라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채무조정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채권으로 대출,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49)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 채권의 범위]

구분	주요 내용
대상 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 신용카드, 할부금융, 보증을 제공한 채권금융회사가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한 전기에 대한 요금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요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금 • 부동산담보대출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보물건이 주택일 것,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주택담보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일수가 31일 이상일 것, 담보물건인 주택에 채무자가 거주할 것. 다만, 채무자가 원격지 근무, 부모 부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개인채무조정 대상채권으로 인정하는 채권
비대상 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이 협약에 의한 개인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이미 상환조건이 변경되어 있는 채권 • 법령에 의해 개인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권 • 조세에 대한 보증,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에 대한 보증, 재해보상금·임치금 및 신원에 대한 보증 등에 의한 대지급금 채권 • 고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채권 • 심의위원회가 효과적인 개인채무조정을 위해 개인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채권

자료: 신용회복지원협약 제5조(개인채무조정 채권의 범위)

2025년 2월 본회의를 통과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해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 전기사업자 등의 비금융기관이 추가로 포함되었다. 다만 다른 개정법률안에서 제안되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도·가스 사업자는 제외되었다.

개정안 논의 당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체납요금의 채무조정이 불평등 또는 특혜 시비를 초래하고, 요금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4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채무조정의 신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75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채무조정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49) 채무조정 대상 채권은 협약기관의 대출, 신용카드, 할부금융, 구상채권, 전기요금, 통신요금, 요건에 충족된 부동산담보대출 등이다.

특히 수도 요금은 납부 특성상 개인의 개별채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도·가스·전기요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⁵⁰⁾에 따라 회생절차에서 원금조정을 받을 수 있고, 개별 공급약관이나 조례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대상 비금융기관 추가에 관한 개정법률안]

의안명	의안번호 (발의일자)	대표발의자	주요 내용	비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2208483 (2025.2.26.)	정무위원장	신용회복지원 협약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사업자 포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포함	본회의가결 (25.2.27)
	2207369 (2025.1.9.)	강준현의원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가스·전기사업자 포함	
	2201064 (2024.6.27.)	천준호의원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도·가스·전기 사업자 포함	
	2200443 (2024.6.13.)	김현정의의원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222 (2024.6.7.)	위성곤의원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안반영 폐기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는 체납 시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고, 이러한 제한은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채무조정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체납액 감면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 도덕적 해이 가능성,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 등으로 인해 관련 부처의 신중한 입장이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위원회가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약을 통해 취약 청년의 체납 건강보험료 일부 지원⁵¹⁾과 잔여 체

5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8.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51)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체납보험료가 40만 원 이하면 전액을, 4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면 49만 원 범위에서 최대 50%를 대납한다.

납액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경감⁵²⁾과 체납보험료 분할납부도 가능하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었다⁵³⁾).

[건강보험료 누적 체납 현황]

(단위: 천 세대, 억 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연도 말	인원	1,279	1,187	1,100	993	928	936	941	925
누적	체납액	20,898	19,602	18,473	17,026	15,401	15,087	15,266	15,416

주: 1. 6개월 이상 체납세대 중 자격 유지자(보수와 소득월액 제외)
 2. 기준 연도 12월까지 남아 있는 누적 체납금액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국회에는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감면 및 분할납부 특례를 신설하는 법률개정안도 발의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체납액의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징수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 감면 및 분할납부 특례 개정법률안]

의안명	의안번호 (발의일자)	대표발의자	주요 내용	비고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2202532 (2024.8.2.)	백혜련의원	채무조정이 확정자에 대해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 분납 특례 신설	조세소위 원안가결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2202541 (2024.8.2.)	백혜련의원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춰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 분납 특례 신설	법안심사 소위 계류중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52)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①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53) 정무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24.8.

국세 체납액 중 현실적으로 강제징수가 거의 불가능한 정리보류체납액이 2024년 기준 91.4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 동 개정안은 적극적인 상환 의지를 보이는 채무조정자에게 징수 특례를 부여하면 체납세금 상환 의지를 높이고 세수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상임위 검토 보고에서는 성실납부자와의 과세형평 문제, 소득요건 미비로 인한 실효성 부족, 분할납부 미이행에 따른 특례 취소 행정비용 증가, 가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등을 지적하였다⁵⁴).

[국세 누계 체납액 현황]

(단위: 명, 건, 억 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인원	1,275,513	1,325,937	1,336,759	1,329,622
건수	4,858,022	4,992,052	5,248,272	5,512,763
체납액	998,607	1,025,140	1,060,597	1,107,310
정리중체납액	114,536	155,673	177,491	193,562
정리보류체납액	884,071	869,467	883,106	913,748

자료: 국세통계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상당수는 일용직 또는 무직으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60대 이상의 고령층도 다수를 차지한다. 또한 채무조정제도 이용자의 채무발생 원인에 생활비 마련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이용 취약계층 특성]

(단위: %)

구분		채무조정 진행단계별 비중		
		완제	실효	진행 중
연령	20대 이하	3.2	3.8	2.4
	30대	19.3	17.9	12.5
	40대	35.4	30.5	27.0
	50대	17.4	16.5	17.9
	60대 이상	24.7	31.3	40.1
직업	급여소득자	29.7	22.8	23.3
	일용직	46.4	46.7	47.4
	무직	17.1	20.5	21.5
	자영업자	6.7	10.1	7.7

주: 채무조정 이행계획을 완료한 경우 '완제', 이행계획을 진행 중인 경우 '진행 중', 이행계획 미이행은 '실효'로 구분
 자료: 임형석, 「취약계층 및 청년층 채무조정 성공요인 분석」, 한국금융연구원, 2023.12.

54)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24.11.,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24.11.

[채무조정제도 이용자 중 생활비 및 공과금 체납경험 비율]

(단위: %)

구분	개인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채무조정제도 이용전 생활비 채무발생비중	43.2	45.6	39.0
공과금(사회보험, 전기, 가스, 수도요금) 미납경험	40.9	26.1	13.8

자료: 박정민, 「채무조정제도 이용자의 경제적 재기와 삶의 질 변화」, CCRS 세미나, 2023.

건강보험료와 수도·가스 등의 공과금이 체납되어 공공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경우, 취약계층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지만 이들 채무는 현재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관계부처와 사업자는 취약계층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자체 조례상 수도 요금 감면제도, 건강보험료 체납액 경감, 분할납부 제도 등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선제적으로 연계하는 방식의 통합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⁵⁵⁾.

둘째,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조정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채무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부채는 2018년 7,668만 원에서 2025년 9,534만 원으로 증가했다. 2025년 가구 부채의 담보대출 비중은 58.4%이며, 담보대출 주요 용도는 주택 마련으로 그 비중은 2018년 75.0%에서 2025년 83.9%로 증가했다.

[연도별 가구 부채 및 원리금 상환액]

(단위: 만 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부채 평균	7,668	7,910	8,256	8,801	9,170	9,186	9,128	9,534
금융부채	5,539	5,755	6,050	6,518	6,803	6,694	6,637	6,795
원리금 상환액	1,102	1,175	1,187	1,265	1,159	1,259	1,250	1,328

자료: 국가데이터치,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55)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가 국세·지방세 또는 건보료 및 통신채무 등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채무조정 특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자료: 임형석, 「취약계층 및 청년층 채무조정 성공요인 분석」, 2023.12.)

[2025년 가구 부채 유형별 보유액 및 구성비]

(단위: 만 원, %)

구분	부채	금융부채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관련 대출	기타	임대보증금
부채 평균	9,534	6,795	5,565	833	53	343	2,739
구성비	100.0	71.3	58.4	8.7	0.6	3.6	28.7

자료: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연도별 담보대출 용도별 비중]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주택 관련	거주주택마련	45.2	44.8	43.8	45.6	47.0	48.6	49.7	49.7
	거주주택이외 부동산마련	21.9	20.9	21.7	20.1	20.4	19.1	20.1	21.7
	전(월)세 보증금 마련	7.9	9.7	11.2	12.2	14.0	14.5	13.5	12.5
	소계	75.0	75.4	76.7	77.9	81.4	82.2	83.3	83.9
부채상환		2.0	1.5	1.7	1.4	1.0	1.2	1.1	0.9
사업자금(영농자금포함)마련		16.9	16.6	16.1	15.0	11.5	11.7	11.6	11.4
생활비 마련		2.4	2.2	2.3	2.3	2.5	2.3	1.8	1.7
기타 용도 등		3.6	4.2	3.2	3.5	3.6	2.7	2.2	2.1

자료: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가계대출의 전체 연체율은 2018년 0.78%에서 2025년 1.00%로 증가 추세에 있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18년 0.35%에서 2021년 0.19%까지 감소했다가 2025년 0.44%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채권 채무조정⁵⁶⁾ 건수는 2018년 2,034건에서 2025년 34,90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가계대출 연체율]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체 연체율	0.78	0.81	0.65	0.52	0.66	0.86	0.93	1.00
주택담보대출	0.35	0.39	0.29	0.19	0.24	0.35	0.40	0.44
기타 대출	1.28	1.32	1.10	0.94	1.22	1.61	1.80	1.98

주: 각 연도 분기말 기준이며 2025년은 3/4분기 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각 연도 「금융안정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

56)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보증자리론 등을 금융회사를 통해 공급하고 있으며, 취약차주의 재기 지원을 위해 원금상환유예, 지연배상금 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채권 연도별 채무조정 건수]

(단위: 건)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원금상환유예	1,624	2,190	3,969	6,300	9,517	12,649	20,911	33,128
지연배상금감면	410	660	662	490	356	607	1,039	1,779
합계	2,034	2,850	4,631	6,790	9,873	13,256	21,950	34,907

주: 학자금대출채권을 제외한 모든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학자금대출채권 및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제외한 모든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감면할 수 있음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정부는 가계부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전부터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해 왔다. 법원의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제도를 연계하였고,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방식을 다양화하여 채권자의 담보가치 훼손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2025년 기준 83건, 확정 건수는 32건에 불과하다.

[2019년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 ① 개인회생 연계형 신복위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규 도입
 - (개요) 채무자가 신복위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과 법원의 개인회생을 동시에 병행 이용 허용
 - (조정방법) 신용채무를 우선 변제완료한 이후 주담대가 상환되는 방식
- ② 신복위 채무조정 주담대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개선
 - (현황) 주담대 채권에 대한 건전성 분류기준은 채권자가 신복위 채무정보보다 조기 경매·매각을 선택하도록 유도
 - (개선) 채무조정 후 1년간 성실상환시 주담대를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도록 건전성 기준 개정
- ③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방안의 다양성 제고
 - (현황)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경우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른 차등 없이 일률적인 조정조건을 적용
 - (개선) 주담대 채무자의 재기지원과 채권자 회수가치 제고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다양한 주담대 채무조정 방식 도입(채무조정 참여 채권자의 회수가치 훼손 완화)

자료: 금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2019.1.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신청·확정 연도별 현황]

(단위: 건)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신청	27	50	46	32	30	84	81	83
확정	26	40	37	26	16	32	36	32

주: 2025년 신청 후 절차 진행 중(미확정)인 건은 11건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의 거주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채권자의 채권 회수 측면에서는 여전히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조정 동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⁵⁷⁾⁵⁸⁾. 따라서 정부는 채무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제도

(1)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제도 활성화 필요

첫째,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규정한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개인 채무조정제도가 아직 충분히 안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부는 금융회사의 개인 채무조정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2024.10.17.)으로 원금 3천만 원 미만 대출을 연체 중인 개인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되었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연체정보 등록을 안내할 때 채무조정요청권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32조⁵⁹⁾와 시행령 제27조⁶⁰⁾에 따라 금융

57) 주택담보대출은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담보권 실행(경매)을 통해 원금과 지연배상금까지 회수할 수 있지만, 채무자는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반면 채권자가 채무조정안을 따르면 오랜 기간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하고 부실채권 비율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58) 개인채무자보호법 전면 시행으로 금융기관은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지만, 채무자가 법적으로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연체 채무 중 대출금액 3천만 원 미만에 한정되어 있다. 대출 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으나, 금액 상한을 고려하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에는 사실상 적용되기 어렵다.

59)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채무조정의 안내)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채권금융회사등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0)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채무조정의 안내)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34조에 따른 채무조정내부기준에 관한 정보
 2. 법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 절차에 관한 정보
 3. 법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조정의 거절·처리·효력,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및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에 관한 정보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에 관한 정보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제4절에 따른 채무조정의 지원 절차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회사가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금융회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채무조정 요청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상황이 어려운 경우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 요청 가능(3천만 원 미만 대출)
연체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한이익 상실시 기존 약정에 따른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고(5천만 원 미만 대출), 상각채권 양도시 장래 이자채권 면제(3천만 원 미만 대출)
추심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심금지채권 명문화(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 등), 추심총량제 등 과도한 추심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심총량제) 추심연락 횟수를 7일 7회 이하로 제한 -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특정 방식·시간대의 추심연락 금지를 요청 가능 - (추심유예제) 채무자의 중대한 재난상황 등에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
채권매각 규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 양도시 양도예정 통지, 양수인 평가 등 의무화, 양도금지채권 명문화
채무자보호 내부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내부기준 등 5개 내부기준 마련 의무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양도내부기준, 채권추심내부기준,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채무조정내부기준,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여기서 말하는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란 채무조정 내부기준, 채무조정 요청 절차, 채무조정의 거절·처리·효력,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및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에 관한 정보,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 채무조정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

채무조정 내부기준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말한다⁶¹⁾. 이 기준에는 전담 조직 및 전담 인력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채무조정 안내에 필요한 사항, 채무조정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밖에도 채무자가 작성하거나 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양식, 즉 채무조정 요청서, 채무조정안, 채무조정 결과통지문, 채무조정서 등의 표준양식이 구비될 수 있다.

61)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채무조정내부기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원·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기준(이하 “채무조정내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금융회사의 채무조정내부기준 포함 사항]

- 채무조정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 및 전담 인력에 관한 사항
- 임원·직원의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 채무조정의 안내에 필요한 사항
- 채무조정을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채무조정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평가 사항
-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으로 정하는 사항
 - 채무조정 서류 작성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사항
 - 채무조정 업무 관련 의사결정 체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채무조정내부기준의 운영과 그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평가를 담당하는 임원·직원의 자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의 이행 관리에 관한 사항
 -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와 그 안내 방법에 관한 사항
 - 채무조정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 위탁 업무의 범위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자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8조 등을 바탕으로 작성

금융위원회는 2024년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전에 개별 금융회사가 각자의 상황에 맞는 내부기준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업계와의 소통을 거쳐 내부기준 모범사례(표준안)를 마련하였다⁶²⁾.

그러나 아직까지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요청권을 연체 사실 통지 안내문 하단에 간략히 기재하는 수준에 그쳐 채무조정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고 한다⁶³⁾, 금융회사 홈페이지에도 채무조정 요청권의 개념과 간략한 절차 등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면서 채무조정 내부기준 모범사례에서 제시한 채무조정 지원내용이나 구비서류 양식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⁶⁴⁾.

6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회사들이 10.17일까지 마련해야 할 「개인채무자보호법」상 5개 내부기준 모범사례 마련·제공”, 2024.8.14.

6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강화하고, 휴면금융자산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 제고를 유도하겠습니다”, 2026.1.6.

64)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연체채무자가 채무조정 제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연체 초기부터 차주에게 문자 등을 통해 안내(LMS)하며, 연체 관련 정보와는 구분하여 문자를 발송하도록 지도하였고, 워크숍, 간담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 홈페이지 채무조정요청권 소개 사례]

채무조정요청권

글자 인체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기업은행의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규정”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요청대상

> 대상자

- 계좌별 대금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능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반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셜시프가 완성된 대금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 요청방법

- 영합점 신청 : 영합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 비대면 신청 : 개인/기업 인터넷뱅킹, I-ONE뱅킹(기업) 앱

>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 채무조정요청서, 채무조정안¹⁾,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여신금융거래), 채무자의 반제능력에 관한 자료, 필요시 대금거래약정서, 거래조건변경추가약정서 작성시 요구될 수 있음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 채무조정 내용

> 채무조정 관련 별도 상품 및 은행 내부 심사기준에 따른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조정, 채무감면 등)

□ 채무조정 절차

1.요청 (채무자)	2.심사 및 결과통지 (채권금융회사)	3.동의 (채무자)	4.채무조정서 작성 (채권금융회사)	5.합의 (채무자)
· 채권금융회사에 채무 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 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채무조정 효력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 조정서를 작성, 서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제안받은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의사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은행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됩니다.

□ 채무조정의 절차 종료

> 채무조정 절차 진행 중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거절대상에 해당(법 제36조)하여 은행에서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한 경우
- 채무자가 10영업일 이내 채무조정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료: 중소기업은행 홈페이지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이 같은 채무조정 사항을 규정한 목적은 금융회사의 채무관리체계가 연체 발생 이후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등에 의한 사후적 채무조정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금융회사가 선제적으로 채무자의 연체를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연체 이후에는 금융회사와 개인 채무자 간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규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⁶⁵⁾.

그러나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이후 개인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한 비율은 평균 5.92%이며, 대부업권은 0.77%로 가장 낮았다⁶⁶⁾.

[금융회사 업권별 채무조정요청률]

(단위: 건, %)

구분	은행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	대부	합계
총 개인 연체채권 수	520,824	126,137	227,069	31,448	2,140,978	136,241	3,192,926
누적 채무조정 요청 건수	35,916	7,355	12,831	1,173	130,778	1,057	189,109
채무조정요청률	6.90	5.83	5.65	3.73	6.11	0.77	5.92

주: 채무조정요청률은 총 개인 연체채권(원금 3천만 원 미만) 수 대비 누적 채무조정 요청 건수 비율
자료: 금융감독원

업권별 채무조정 총신청 건수는 여신전문회사가 130,7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35,916건, 저축은행 12,83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채무조정안 승인율(승인 건수/처리 완료 건수)은 평균 90.9%이며 보험회사가 100.0%, 상호금융이 99.8%, 여신전문회사가 97.4%였으며, 은행은 64.3%로 가장 낮았다.

채무조정 방식별로는 원리금 감면이 231,198건(34.4%)으로 가장 많았고, 변제 기간 연장 61,921건(26.8%), 대환대출 44,439건(19.2%), 분할 변제 21,467건(9.3%), 이자율 조정 18,171건(7.9%) 등의 순이었다.

6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24.7.4.

66)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타 업권 대비 연체율이 높은 대부업권의 특성상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전부터 자체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은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요청하는 것이나, 대부업권 자체 채무조정은 연체채권에 대해 회사가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먼저 제시하는 방식으로 해당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은 자체 채무조정을 포함할 경우 대부업권의 채무조정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금융회사 업권별 자체 채무조정 실적(2025년말 기준)]

(단위: 건, %)

구분	총신청 (A=B+C+D+E)	거절 (B)	처리완료 (C=C1+C2)	승인		검토중 (D)	기타 (E)	승인율 (C1/C)
				(C1)	(C2)			
은행	35,916	5,465	30,379	19,543	10,836	72	-	64.3
보험	7,355	14	7,313	7,312	1	-	28	100.0
저축은행	12,831	1,095	9,637	7,743	1,894	355	1,744	80.3
상호금융	1,173	7	932	930	2	201	33	99.8
여신전문	130,778	1,006	128,485	125,200	3,285	84	1,203	97.4
대부	1,057	5	1,036	954	82	1	15	92.1
합계	189,109	7,593	177,780	161,680	16,100	713	3,023	90.9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업권별 채무조정 유형별 실적(2025년말 기준)]

(단위: 건, %)

구분	합계	유형별 채무조정					
		원리금 감면	이자율 조정	대환대출	분할 변제	변제기간 연장	기타
은행	27,911	3,072	5,870	6,431	2,779	8,477	1,282
보험	7,708	150	193	-	2,156	2,538	2,671
저축은행	8,930	1,082	438	8	857	5,595	950
상호금융	1,064	92	53	34	38	250	597
여신전문	184,360	74,559	11,375	37,966	15,341	45,026	93
대부	1,225	652	242	-	296	35	-
합계	231,198	79,607	18,171	44,439	21,467	61,921	5,593
비중	100.0	34.4	7.9	19.2	9.3	26.8	2.4

주: 채무조정요청률은 총 개인 연체채권(원금 3천만 원 미만) 수 대비 누적 채무조정 요청 건수 비율
 자료: 금융감독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내부 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하였고, 금융회사별 내부기준 마련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흡 사항을 개선토록 하였다⁶⁷⁾.

향후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요청 정보를 충분히

67)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운영하여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초기 금융업권의 「채무조정 내부기준」 마련 여부를 수 차례에 걸쳐 점검하였으며, 2025년 3~4월 중 금융회사에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연체 관리, 채권 추심, 추심 위탁, 채권 양도, 채무조정 업무 실태를 자체점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2026년 3~4월 중 6개 금융회사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 개인 연체채권 관리 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제출했던 개선계획 이행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제공하고, 채무조정 절차가 법령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개인채무자보호 법 제41조⁶⁸⁾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기관별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채무조정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일반 시중은행은 개인사업자대출119, 신용대출119 제도, 업계 자율적인 채무조정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을 지원해 왔다. 그리고 개인채무자보호법이 2024년 10월 시행된 이후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 부담경감, 과도한 추심 금지 등을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이 전까지 주로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에서 이루어지던 채무조정에 더해,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금융권 전반의 자체 채무조정 지원 실적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의 자체 채무조정 사례를 보면, 2025년 기준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중소기업은행이 4,822건이었지만 대외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45,174건에 달했다. 한국산업은행은 개인대출 신규 취급 중단 정책으로 채무조정 대상 채권이 적었지만 자체보다 대부분 외부에서 채무조정이 이루어졌다⁶⁹⁾.

68)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감독·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이하 “채권추심회사등”이라 한다)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5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채무조정의 요청을 거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9. 제3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69) 한국산업은행은 채무조정 가능대상 계좌 수(약정 기준 3천만원 미만) 2024년말 28건, 2025년말 11건으로 해당 계좌는 연체 등이 없어 채무조정 불가하며, 개인대출 잔액은 지속적으로 축소중에 있다고 한다.

[중소기업은행 및 한국산업은행 개인금융부실채권 자체 채무조정 현황]

(단위: 명, 억 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중소 기업 은행	부실 채권	채무자 수(a)	10,532	14,725	10,646	10,799	13,174	19,402	23,797	21,952	
		채권액	4,132	5,132	3,946	3,003	3,742	6,175	9,117	10,069	
	자체 채무 조정	신청채무자 수(b)	1,697	3,093	3,946	4,535	4,382	4,853	3,927	4,859	
		체결 채무자 수	1,697	3,093	3,946	4,535	4,382	4,853	3,925	4,822	
		대상채권액	292	534	393	367	686	1,804	1,983	819	
		채권조정액	241	454	313	264	584	1,693	1,887	704	
		신청비율(b/a)	16.1	21.0	37.1	42.0	33.3	25.0	16.5	22.1	
		채무조정감면율	17.5	15.0	20.4	28.1	14.9	6.2	4.8	14.0	
	대외 채무 조정	신청채무자 수	9,438	10,557	11,936	13,392	18,052	35,619	42,927	45,174	
		체결 채무자 수	6,929	7,839	9,243	9,911	12,256	24,663	32,075	34,387	
		대상채권액	2,814	3,539	3,401	3,662	3,065	6,050	6,844	6,823	
		채권조정액	1,205	1,355	1,208	1,285	1,418	2,361	2,809	3,155	
	한국 산업 은행	부실 채권	채무자 수(c)	398	386	344	288	228	205	185	107
			채권액	65	59	52	44	35	41	32	15
자체 채무 조정		신청채무자 수(d)	5	2	3	-	-	-	-	-	
		체결 채무자 수	1	-	1	-	-	-	-	-	
		대상채권액	2	-	0.1	-	-	-	-	-	
		채권조정액	2	-	0.1	-	-	-	-	-	
		신청비율(d/c)	1.3	0.5	0.9	-	-	-	-	-	
		채무조정감면율	0	0	0	-	-	-	-	-	
대외 채무 조정		신청채무자 수	74	59	39	32	18	13	8	6	
		체결 채무자 수	49	45	32	25	16	9	7	4	
		대상채권액	8	9	5	4	2	1.0	0.8	0.7	
		채권조정액	5	5	4	2	1	0.5	0.4	0.2	

- 주: 1. 중소기업은행 개인금융 부실채권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정이하여신 기준으로 작성
 2. 한국산업은행 부실채권은 연말 대출원금 잔액 기준
 3. 채무조정 감면율 = (채무조정대상 채권액 - 채무조정채권액) / (채무조정대상 채권액)
 자료: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중소기업은행 및 한국산업은행 개인금융부실채권 채무조정 감면율 범위]

구분	채무조정 범위	비고
중소기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채무자: 최소 50% ~ 최대 87.5% 연대보증인 등: 최소 75% ~ 최대 8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취약계층: 채무부담액에 20~30% 곱한 비율 추가감면
한국산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환유예,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등 지원(채무감면 없음) 	-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채권매각에 비해 채무조정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추가적인 관리비용이 발생하고, 금융회사에 종합적인 부실채권 처리 시스템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⁷⁰⁾. 그리

고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의 자체 채무조정 실적이 저조한 것은 신용회복위원회에 비해 채무감면 혜택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개별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방식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아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금융회사가 자체 채무조정에서 채무감면율을 신용회복위원회보다 낮게 적용하면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감면율을 더 높게 적용하면 채권 회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와 유사한 수준의 채무조정안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려면 금융회사 스스로 신용회복위원회 중심의 채무조정 관행에서 벗어나 기관 특성과 차주의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채무조정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중심의 사적 채무조정 체계를 금융회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사적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⁷¹⁾.

다만, 부실 우려 차주 또는 잠재적 채무조정 수요자의 상당수가 다중채무자라는 점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금융회사가 수행하기 어려운 채무자의 신용교육 등에 있어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회사 간의 효과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70) 오태록, “금융기관 자체 채무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 「금융브리프 포커스」, 33권 20호, 한국금융연구원, 2024.9.28.

71) 개별 금융회사 입장에서 대출 이후 지속적으로 채무자의 신용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채무조정 등의 다양한 조치를 진행하되, 다중채무자인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구조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자료: 구정한이규복, 「사적 개인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20.2.)

(2) 공공기관 개인금융부실채권의 지속적인 조정·정리 및 채무조정 필요

금융위원회는 2017년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에서 금융공공기관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가 조정·정리보다는 형식적인 채권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고, 기관별 이해관계와 상이한 관리방식으로 인해 효율성과 형평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상환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 대한 기관의 자율적인 채무조정 기능을 활성화하고, 과잉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 위탁 추심 회사의 불법·과잉 추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의 상각 기준을 구체화하여 적기에 정리하고 상각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캠프에 매각하여 일원화해 관리하는 방안을 계획하였다. 또한 채권 회수·관리 업무에 대한 직원 면책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채무조정 노력 성과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부실채권 관리 모범사례 발굴·공유 및 상각채권 일원화 관리	① 채무조정: 기관 자율의 채무조정 기능 활성화 - 제도 안내 의무화 및 온라인 신청 채널 구축 - 원리금감면 관련 제도 개선, 장기분할상환 기간 확대 - 사고·실직 등의 차주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 도입·강화 ② 추심회수: 과잉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변제의욕 고취 - 불법·과잉추심에 대한 위임기관 관리·감독 강화, 평가체계 정비 - 원금부터 우선 변제하도록 변경 ③ 상각·매각: 회수 가능성 없는 채권 정리로 관리부담 완화, 다중채무자 채무조정 실효성 제고 - 상각기준을 공적기관 취지에 맞게 구체화 - 상각 채권은 원칙적으로 캠프 매각으로 일원화 ④ 시효관리: 무분별한 시효연장 개선, 시효 완성시 채무자에게 공개·안내
부실채권 관리 인센티브 구조 개선 및 인프라 구축	① 인센티브 구조 개선: 채권 회수관리 직원 면책근거 마련 - 공공기관 경영평가지 채무조정 성과 및 부실채권 정리 실적 반영 ② 부실채권 관리 인프라 구축 : 모범사례 지속 공유, 제도개선 점검 - 금융공공기관 통합 부실채권 통계 시스템 구축(캠프)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 2017.3.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개인 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이 미흡하고 금융권의 회수극대화 관행이 지속되면서 채무자 보호에 공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정부는 최근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2026.2.)을 발표하고,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고객관리책임 강화,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개인금융채권”이란 금전의 대부, 대위변제와 이런 행위로 발생한 채권의 양수, 그 밖의 어음할인 등을 말한다⁷²⁾. “채권금융회사”는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은행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개인채무자보호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채권금융회사이면서 정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은행 등 13개 기관이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채권금융회사 중 정부 공공기관 현황]

구분	공공기관명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2호가목 「은행법」 등에 따른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2호나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재단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같은 법률 시행령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7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금융채권”이란 채권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말한다.

가. 금전의 대부

나. 대위변제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로 발생한 채권의 양수

라. 그 밖에 어음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은행법 등에 따른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관은 제외하고, 기술보증기금 등 10개 공공기관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상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한국장학재단과 근로복지공단을 포함하여, 총 12개 공공기관의 개인금융부실채권 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부실채권은 통상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을 의미하지만, 이 보고서에서 정의하는 “개인금융부실채권”이란 채무자로부터 개인금융채권의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채권 등을 말한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등은 정책자금용자의 연체로 부실채권을 보유하며,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은 보증부 대출 등이 연체되면 대위변제 후 구상채권을 보유하게 되고,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 등의 연체로 구상채권을 갖게 된다. 그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근거 법률과 내부 규정에 따라 개인금융부실채권에 대한 정의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관리공사법”)73)과 같은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부실채권’이란 금융회사 등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원리금, 지급보증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 회수 조치나 관리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거나 채무자로부터 채권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채권 등을 말한다.

각 기관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공공기관은 개인금융부실채권에 대해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개인채무자(가계, 개인사업자 등)와 채무관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금전채권(구상채권, 특수채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7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부실채권”이란 금융회사등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원리금, 지급보증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도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채권

나. 채무자의 경영 내용, 재무상태 및 예상되는 현금의 흐름 등으로 보아 채권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제22조에 따른 이사회가 인정하는 채권

[공공기관 개인금융부실채권의 정의]

구분	정의
기술보증기금	「개인금융채무자 구상권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대위변제 등을 원인으로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채무조정규정」에 따라 공사가 대위변제 등을 원인으로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서민금융진흥원	개인금융부실채권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구상채권 관리규정 구상권이란 진흥원이 보증채무를 이행 한 후에 채무관계자에 대해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채권을 의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고관리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사고채권 중 회수된 채권을 제외한 채권으로 채권의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거나 채무자로부터 채권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채권
신용보증기금	「구상권관리규정」에 의거 신용보증기금이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채무관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금전채권(구상채권, 특수채권)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법」에 의거 공사의 고유 업무 수행으로 인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인금융부실채권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상각 전 채권을 의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5조(구상권의 행사)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채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령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원리금, 지급보증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거나 채무자로부터 채권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 채권관리규정」 제2조 제1호 구상권이란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에 제2호의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채권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채권 관리규칙」에서 “부실채권”이란 학자금대출의 이자 또는 원금(분할상환금 포함)의 상환 약정기일에 약정금액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권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채권과 구상채권을 의미
근로복지공단	개인금융부실채권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첫째,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부실채권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상각과 소각·매각 실적이 미흡한 편으로 나타나 금융위원회는 장기연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개인금융부실채권 조정·정리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의 분석 대상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금융부실채권액은 2025년 기준 약 44.4조 원이며, 관련 채무자는 약 238만 명(건)에 이른다⁷⁴). 3천만 원 미만 채무자는 222만 명(건), 부실채권액은 17.6조 원으로 전체 채무자의 93.0%, 전체 채권액의 39.6%를 차지한다.

[공공기관 개인금융부실채권 보유 현황(2025년말 기준)]

(단위: 명(건), 억 원, %)

구분	전체		3천만 원 미만		채무자 비중 (C/A)	채권액 비중 (D/B)
	채무자 수 (A)	채권액 (B)	채무자 수 (C)	채권액 (D)		
기술보증기금	7,336	10,175	449	617	6.1	6.1
한국무역보험공사	3,908	19,730	251	39	6.4	0.2
서민금융진흥원	948,364	43,391	948,364	43,391	100.0	10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51,859	31,371	240,592	25,141	95.5	80.1
신용보증기금	65,515	28,948	56,808	10,906	86.7	37.7
주택도시보증공사	22,836	101,843	2,299	689	10.1	0.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269	5,088	26	3	0.5	0.1
지역신용보증재단	330,169	71,239	322,812	49,174	97.8	69.0
한국자산관리공사	572,690	104,774	505,218	37,558	88.2	35.8
한국주택금융공사	50,912	21,630	16,143	2,026	31.7	9.4
한국장학재단	72,893	4,314	72,889	4,312	100.0	100.0
근로복지공단	51,762	1,938	51,762	1,938	100.0	100.0
합계	2,383,513	444,451	2,217,613	175,794	93.0	39.6

- 주: 1. 부실채권은 개인금융채무자(가계, 개인사업자) 기준이며, 3천만 원 미만 부실채권은 3천만 원 미만 부실채권(원장)을 한 개 이상 보유한 채권자와 채권액 합계를 의미
 2.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채무자가 아닌 계좌 수 기준
 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사회계 기준(담보채권 제외)이며,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등 정책사업 수행에 따른 관리채권은 제외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74) 공공기관별로 개인금융부실채권의 정의와 집계 기준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수치 산출이 어려우므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부실채권의 대략적인 규모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개인금융부실채권은 2018년 28.0조 원에서 2025년 44.4조 원으로 16.4조 원이 증가했다. 이러한 개인금융부실채권의 증가는 코로나19 당시 확대된 정부의 정책자금유자와 보증대출이 최근에 들어 상환시점이 도래하였고, 고금리 기조 유지되면서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부실채권의 증가에 대응해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의 상각 기준을 구체화하여 적기에 정리하고, 상각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캠프에 매각하여 일원화해 관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상각 채권 비중은 2018년 23.3%에서 2025년 16.6%로 감소했고, 미상각채권 비중은 76.7%에서 83.4%로 오히려 증가했다.

[공공기관 전체 개인금융부실채권 연도별 보유 현황]

(단위: 명(건), 억 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기술보증 기금	채무자 수	10,167	10,065	9,514	8,208	7,657	7,563	7,391	7,336
	채권액	10,105	10,814	10,867	10,079	9,916	9,939	9,709	10,175
	상각	6,424	6,893	7,086	6,750	6,710	5,983	5,104	4,772
	미상각	3,681	3,921	3,781	3,329	3,206	3,956	4,605	5,403
한국무역 보험공사	채무자 수	5,574	3,940	3,635	3,582	3,533	3,591	3,693	3,908
	채권액	21,082	18,903	18,339	19,772	19,535	19,409	20,173	19,730
	상각	5,278	3,530	3,362	3,561	3,661	3,577	3,590	4,002
	미상각	15,804	15,373	14,977	16,211	15,874	15,832	16,583	15,728
서민금융 진흥원	채무자 수	80,600	136,538	186,901	231,330	277,150	441,042	702,243	948,364
	채권액	6,047	9,618	12,377	14,723	16,841	26,479	35,916	43,391
	상각	-	753	1,227	2,222	2,035	4,874	7,859	11,153
	미상각	6,047	8,865	11,150	12,501	14,807	21,606	28,057	32,238
소상공인 시장진흥 공단	계좌 수	1,247	2,712	5,106	10,205	30,598	89,979	197,458	251,859
	채권액	696	1,364	2,083	3,016	5,302	13,339	23,783	31,371
	상각	-	-	-	147	147	1,136	2,142	4,881
	미상각	696	1,364	2,083	3,016	5,302	13,339	23,783	31,371
신용보증 기금	채무자 수	42,382	38,962	35,767	35,307	36,921	48,699	62,040	65,515
	채권액	26,677	26,205	24,738	22,704	21,311	23,687	27,361	28,948
	상각	18,261	17,941	16,965	14,821	13,197	11,533	11,141	10,840
	미상각	8,416	8,264	7,773	7,883	8,114	12,154	16,220	18,108
주택도시 보증공사	채무자 수	255	920	1,507	1,823	3,262	9,218	19,128	22,836
	채권액	391	1,747	4,024	6,994	14,514	55,375	96,869	101,853
	상각	-	-	-	-	-	-	-	-
	미상각	391	1,747	4,024	6,994	14,514	55,375	96,869	101,853
중소벤처 기업진흥 공단	채무자 수	6,626	7,056	7,361	8,093	7,646	7,184	5,718	5,269
	채권액	7,844	7,781	7,834	7,859	7,151	6,722	5,444	5,088
	상각	2,712	3,173	3,678	2,373	1,565	1,364	2,187	1,202
	미상각	7,844	7,781	7,834	7,859	7,151	6,722	5,444	5,088

(단위: 명(건), 억 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지역신용 보증재단	채무자 수	286,411	299,792	307,188	300,168	288,345	299,677	321,605	330,169
	채권액	39,429	41,003	43,040	44,194	45,526	54,113	64,949	71,239
	상각	19,357	19,069	19,991	21,115	21,885	22,216	22,384	23,182
	미상각	20,072	21,934	23,049	23,079	23,641	31,897	42,565	48,059
한국자산 관리공사	채무자 수	1,134,720	1,449,658	1,110,741	1,007,337	936,551	986,808	908,988	572,690
	채권액	144,781	184,787	158,361	153,861	146,562	144,616	147,528	104,774
	상각	5,307	6,693	7,855	12,296	8,470	14,747	10,672	9,304
	미상각	139,474	178,094	150,506	141,565	138,092	129,869	136,856	95,470
한국주택 금융공사	채무자 수	97,742	78,652	63,139	55,056	51,826	50,137	50,935	50,912
	채권액	18,478	15,623	13,789	13,246	14,105	16,430	18,870	21,630
	상각	7,884	5,483	3,907	3,880	4,810	5,203	5,091	4,184
	미상각	10,594	10,140	9,882	9,366	9,295	11,227	13,779	17,446
한국장학 재단	채무자 수	64,684	68,528	69,317	67,628	67,568	68,202	69,618	72,893
	채권액	3,985	4,102	4,000	3,830	3,874	3,910	4,083	4,314
	상각	66	85	131	142	303	305	300	264
	미상각	3,919	4,017	3,869	3,688	3,571	3,605	3,783	4,050
근로복지 공단	채무자 수	16,001	17,523	18,912	20,809	24,389	29,384	33,111	51,762
	채권액	599	656	708	779	913	1,100	1,240	1,938
	상각	510	576	610	651	717	786	861	924
	미상각	89	80	98	128	196	314	379	1,014
합계	채무자 수	1,746,409	2,114,346	1,819,088	1,749,546	1,735,446	2,041,484	2,381,928	2,383,513
	채권액	280,114	322,603	300,160	301,057	305,550	375,119	455,925	444,451
	상각 (비중)	65,799 23.3	64,196 19.7	64,812 21.3	67,958 22.4	63,500 20.7	71,724 19.0	71,331 15.5	74,708 16.6
	미상각 (비중)	217,027 76.7	261,580 80.3	239,026 78.7	235,619 77.6	243,763 79.3	305,896 81.0	388,923 84.5	375,828 83.4

- 주: 1. 부실채권은 개인금융채무자(가계, 개인사업자) 기준
 2. 신용보증기금 개인사업자 일반보증 기준
 3. 서민금융진흥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계좌 수 기준
 4.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사회계 기준(담보채권 제외)이며,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등 정책사업 수행에 따른 관리채권은 제외했으며, 타 공공기관의 상당한 부실채권을 인수한 내용임
 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내부 규정에 따라 부실채권에 상각 채권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전체 부실채권액에서 제외하면서, 전체 기관의 부실채권액 합계와 '상각+미상각' 부실채권액 합계와 차이가 있음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그리고 공공기관이 개인금융부실채권의 상각 후에 소각하거나 매각한 실적은 2018년 1.0조 원에서 2024년 3.8조 원, 2025년 8.1조 원으로 증가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부실채권액 대비 소각·매각액 비율은 2018년 3.7%에서 2025년 18.3%로 증가했다. 2025년 공공기관의 개인금융부실채권 크게 매각액이 늘어난 이유는 2025년에 출범한 새도약기금이 출범하면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부실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다량 매각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개인금융부실채권 연도별 소각액·매각액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기술보증기금	매각액	672	631	1,100	1,273	625	983	960	1,519
	소각액	1,658	488	399	176	665	1,064	1,699	563
한국무역보험공사	매각액	-	1,629	-	-	-	-	-	-
	소각액	167	1,036	965	467	535	583	629	432
서민금융진흥원	매각액	-	-	624	554	836	115	507	1,017
	소각액	-	-	-	-	-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매각액	-	-	-	-	257	2,068	4,849	6,349
	소각액	-	-	-	-	-	-	-	-
신용보증기금	매각액	115	98	38	72	264	2,107	2,924	2,647
	소각액	321	196	215	180	216	275	391	435
주택도시보증공사	매각액	-	-	-	-	-	24	-	-
	소각액	-	-	-	-	0	0	2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매각액	1,689	-	1,899	1,727	1,869	1,205	1,074	2,072
	소각액	8	324	174	123	281	487	1,228	846
지역신용보증재단	매각액	369	633	284	246	264	5,433	9,746	12,222
	소각액	1,474	2,374	1,950	2,527	3,093	3,092	3,401	3,789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액	-	-	-	-	29	106	116	36,554
	소각액	52	7,593	5,815	6,041	11,325	8,218	8,684	10,737
한국주택금융공사	매각액	2,421	1,741	757	-	350	1,360	1,067	945
	소각액	1,445	2,196	1,586	1,492	1,252	1,115	982	1,273
한국장학재단	매각액	-	-	-	-	-	-	-	-
	소각액	-	-	-	-	-	-	-	-
근로복지공단	매각액	-	-	-	-	-	-	-	-
	소각액	-	-	-	-	-	-	-	-
합계	매각액(a)	5,266	4,732	4,702	3,872	4,494	13,401	21,243	63,325
	소각액(b)	5,125	14,207	11,104	11,006	17,367	14,834	17,016	18,077
	합계(a+b)	10,391	18,939	15,806	14,878	21,861	28,235	38,259	81,402

- 주: 1. 개인금융부실채권은 개인금융채무자(가계, 개인사업자) 기준
 2. 신용보증기금은 개인사업자 일반보증 기준
 3.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계좌기준
 4.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각액은 정부정책사업(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에 채권 매각한 금액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공공기관 연도별 개인금융부실채권액 대비 소각액·매각액 비중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개인금융부실채권액(a)	280,114	322,603	300,160	301,057	305,550	375,119	455,925	444,478
소각·매각액(b)	10,391	18,939	15,806	14,878	21,861	28,235	38,259	81,402
비중(b/a)	3.7	5.9	5.3	4.9	7.2	7.5	8.4	18.3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이처럼 공공기관의 개인금융부실채권의 조정·정리가 미흡하면서, 연체 기간 5년~10년 이하의 개인금융부실채권은 364,213건, 5조 7,601억 원(13.0%)이며, 특히 10년 초과 개인금융부실채권은 319,143건, 6조 1,669억 원(13.9%)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기관 개인금융부실채권 연체 기간별 현황(2025년말 기준)]

(단위: 건, 억 원, %)

구분	5년 미만		5년~10년 이하		10년 초과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기술보증기금	7,818	7,648	2,331	1,818	1,039	709	11,188	10,175
한국무역보험공사	1,673	5,125	1,214	3,677	1,021	10,928	3,908	19,730
서민금융진흥원	845,250	38,265	103,114	5,126	0	0	948,364	43,39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47,183	29,200	4,676	2,171	-	-	251,859	31,371
신용보증기금	111,685	23,740	14,521	2,704	108,328	2,504	234,534	28,948
주택도시보증공사	56,951	100,559	1,827	1,293	2	1	58,780	101,84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157	5,070	3	18	-	-	6,160	5,088
지역신용보증재단	333,276	51,906	99,928	13,226	54,788	6,107	487,992	71,239
한국자산관리공사	386,521	41,150	67,814	24,290	118,355	39,334	572,690	104,774
한국주택금융공사	36,366	18,115	8,370	2,050	7,573	1,465	52,309	21,630
한국장학재단	169,633	2,610	51,372	965	22,095	474	243,100	4,050
근로복지공단	36,777	1,526	9,043	263	5,942	147	51,762	1,938
합계	2,239,290	324,914	364,213	57,601	319,143	61,669	2,922,646	444,184
비중	76.6	73.1	12.5	13.0	10.9	13.9	100.0	100.0

주: 1. 개인금융부실채권 건수(제외 수) 기준으로 집계하여 앞에 채무자 수, 채무액과 차이가 있음

2. 한국장학재단 자료는 상각 채권 제외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공공기관의 개인금융부실채권의 조정·정리가 미흡한 데에는 상각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모호한 측면이 있고,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채권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상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위변제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채권에 대해 상각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부실채권 상각 기준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모호한 기준을 담고 있다. 그리고 상각이 가능한 경우는 법원의 개인파산 등 면책결정, 채무조정 이행 완료, 채무자 사망, 소송 등으로 채권이 무효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으로 채권 소각에 준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은 개인금융부실채권에 대한 소각 기준을 부실채권의 소멸 시효 완성, 채무상환 전부 이행, 법원의 면책 또는 파산 결정 종결 등의 경우에 소각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부실채권의 상각 기준과 거의 차이가 없다.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장학재단과 근로복지공단은 개인금융부실채권에 대한 소각 규정이 부재하여 소각 실적이 없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소각 규정이 있음에도 2018년 이후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개인금융부실채권 상각 내부규정]

구분	개인금융부실채권 상각 내부규정
기술보증기금	<p>「구상채권 상각기준」 제3조(상각인정 기준) 구상채권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각할 수 있다. 다만, 재산보유 유무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채권이 무효로 된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	<p>「구상채권 상각기준」 제3조(상각인정 기준) 구상채권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각할 수 있다. 다만, 재산보유 유무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채권이 무효로 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p>「구상채권 상각업무처리세칙」 제3조(상각대상) 구상채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각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면책결정 또는 개인회생 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한 채무조정 이행 완료한 경우 3.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4. 구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의 사유로 채권이 무효로 된 경우 5. 상각 실시일 기준 최종 대위변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구상채권으로서 재산조사 결과 채무자가 실의 있는 재산을 보유하지 않는 등 구상채권의 행사가 실익이 없는 경우 6.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구상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기로 하는 채무조정에 대해 채무자가 합의한 경우 7. 그 밖에 법적절차,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구상채권의 행사가 실익이 없는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p>「채권관리 업무처리 규정」 제73조(채권의 상각대상 및 시기 등) ①규정 제33조에 의거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이 예상되는 정리대출금(전환대출의 대위변제금 등 구상채권 포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채권이 무효로 된 경우

구분	개인금융부실채권 상각 내부규정
신용보증 기금	<p>「구상채권상각기준」 제3조(상각대상)① 재지원단장(기업구조조정센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구상채권으로서 상각실시 연도말 기준 대위변제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상각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상금청구소 등에서 패소하는 등 채권이 무효로 된 경우 2. 채무관계자 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인: 폐업(사실상 폐업 포함)하였거나 청산종결(해산 및 해산간중 포함) 또는 파산종결·폐지된 경우 나. 자연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확정 또는 사망(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로 한정)한 경우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도시 보증공사	<p><상각 관련 규정 삭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24.2.29.)에 따라 구상채권 상각충당금 적립을 통해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는 기관에서 공사가 제외되어 구상채권에 대한 상각제도 운영 필요성이 사라짐</p>
중소벤처 기업진흥 공단	<p>「직접대출 및 대출금 관리규칙」 제165조(상각대상채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각대상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무자, 보증인 및 채무관련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 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또는 당해 연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될 채권 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4. 채무가 면제되었거나 무효로 된 채권 5. 법적절차나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 6. 실익검토표에 따라 회수실익이 없는 채권(폐업의 경우에 한함) 7. 그 밖의 관계법령 등에 의한 대손처리 대상채권
신용보증 재단중앙 회 (지역신용 보증재단)	<p>「구상채권상각기준」 제3조(상각인정 기준) 구상채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회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채권이 무효로 된 경우 <p>「구상채권 상각 세부업무처리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구상채권 상각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각일 기준 최종 대위변제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구상권으로서 「구상채권 상각기준」 제4조(상각부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수할 수 없다고 이사장(개인신용보증의 경우 중앙회장)이 인정하는 구상권을 상각대상으로 한다.
한국자산 관리공사	<p>「무담보채권 상각처리요강」 제4조(상각대상채권) ① 채권의 상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회수실익이 없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2. 주채무자가 법인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파산선고에 따라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 3. 주채무자가 개인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결정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 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5.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관계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회수 불가능한 채권 6. 채무관계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실종, 행방불명, 사업의 폐지, 사망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7. 회수기일을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30만 원 이하(주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구분	개인금융부실채권 상각 내부규정
한국자산 관리공사	<p>8.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5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 채권</p> <p>② 회수가능한 채무관계자가 있거나 채무관계자의 재산에 대한 법적조치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각하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상각대상채권별 상각조건 및 상각금액은 별표의 상각대상채권 세부기준에 따른다.</p>
한국주택 금융공사	<p>「구상채권 상각 세부업무처리기준」 제3조 (상각대상) 구상채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각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각 실시일 기준 대위변제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채권으로 지점장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 1. 27.)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채권으로 지점장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수급자에 대한 채권으로 지점장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구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의 사유로 무효로 된 경우
한국장학 재단	<p>「학자금대출채권 관리규칙」 제67조(부실채권의 상각대상 및 시기 등) ① 부실채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이 확정된 경우 2. 채무자가 사망한 이후에 채무관계자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하여 채권의 행사가 실익이 없는 경우 3. 채권이 무효로 된 경우 4. 재단법 제24조의10제2항, 제34조제1항 또는 특별법 제16조제3항에 의해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5. 특별법 제16조제2항에 의해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이 확정된 경우 7. 잔여 대출원금이 소송비용보다 작은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상각하기로 결정된 채권은 회계연도 말에 상각한다. 다만, 이사회가 상각일을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그 밖에 부실채권의 상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지침으로 정한다.</p>
근로복지 공단	<p>「근로자신용보증사업운영규정」 제42조(결손처분) ① 거점기관장은 영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상채권 결손처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결손처분을 하지 못한다.</p> <p>② 거점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채권으로 보아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공공기관 개인금융부실채권 소각 내부규정]

구분	개인금융부실채권 소각 내부규정
기술보증 기금	<p>「추심불능채권 관리기준」 제4조(관리종결 대상채권) ① 대위변제 후 3년 이상 경과한 추심불능채권을 관리종결 대상으로 하되, 제2조제1항제1호(주채무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포기한 채권)에 해당하는 추심 불능채권은 대위변제 후 5년 이상 경과시 관리종결 대상으로 할 수 있다.</p>
한국무역 보험공사	<p>「국내채권관리요령」 제148조(구상권 관리 및 행사의 종결) ① 구상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전이라도 구상권 관리 및 행사를 종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상이 전액 완료된 채무관계자 또는 채무관계자 전원이 이에 해당되는 채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구상권 행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무관계자 또는 채무관계자 전원이 이에 해당되는 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회생채무자의 회생절차의 종결과 종결후 인가된 회생계획상의 의무 전부 이행 또는 그 밖의 채무감면에 따른 상환약정 전부 이행 나. 개인파산·개인회생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 다. 법인인 파산채무자의 파산절차 폐지 또는 종결 라. 청산종결(해산 및 해산간주를 포함) 또는 국제청에 폐업 신고되었거나 사실상 폐업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로 법인 주채무자만 있는 채권 3. 채권이 무효로 된 경우 4.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구상권 행사(출자전환주식 처분을 포함한다)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채무관계자 또는 채무관계자 전원이 이에 해당되는 채권
서민금융 진흥원	-
소상공인 시장진흥 공단	<p>「소상공인 용자사업 운영요령」 제152조(시효관리 예외) ① 규정 제34조제3항에 의거 시효중단조치를 취할 실익이 없는 특수채권은 시효완성 전에 공단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권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시효중단조치를 취할 실익이 없는 특수채권 중 다음 각 호의 특수채권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채권을 포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무관계자가 사망하고 실익이 있는 상속재산(유증 포함)이 없는 경우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가 다시 도래하는 경우 3. 원금 없는 이자 채권 4. 법원으로부터 채무관계자(연대보증인 제외)에 대한 면책결정이 있는 경우 5. 법인이 해산간주 또는 청산 종결된 경우 6. 채무관계자 중 자연인이 없거나 자연인 모두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7. 채무관계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등 소재파악이 불가능하여 회수가 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보증 기금	<p>「채무관계자 및 소멸시효 관리기준」 제8조 ① 채무관계자 전원에 대하여 예상구상실익금액이 있는 재산이 없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실상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특수채권은 관리불능 심사를 통해 관리불능 채권으로 편입하고 특수채권 계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구상채권과 특수채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불능채권으로 편입할 수 없고, 제1호의 채무관계자 규제해제를 누락하고 심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유의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 채무관계자: 채무관계자 규제해제(사전 규제해제 제외).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로서 상속인에 대한 조치가 모두 완료된 경우로 한정한다.

구분	개인금융부실채권 소각 내부규정
주택도시보증공사	<p>「개인보증상품 채권관리규정시행세칙」 제32조(소멸시효의 완성) ① 영업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완성시킬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무면제(파산종결 포함) 등으로 채권행사를 할 수 없거나, 소송패소 등 그 밖의 사유로 채권이 원인무효 된 경우 2. 소멸시효 중단 소송비용 등으로 발생한 소송대지급금 채권 및 그 밖의 부채채권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의 실익이 없는 경우 3. 구상채권, 소송대지급금 채권 및 그 밖의 부채채권이 200만 원 이하이거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비용보다 적은 경우 4. 채무관계자의 소재, 재산상태 및 상환능력 등을 조사한 결과 채권전액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채권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p>② 소관부서장은 제1항 단서의 소멸시효완성 신청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멸시효완성 신청채권에 대한 적정여부 2. 채무관계자 등의 진위여부, 재산조사 및 관련 자료의 적정여부 3. 채권보전조치 실익분석 자료의 적정여부 4. 소멸시효완성 신청채권에 대한 관리사항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p>「직접대출 및 대출금 관리규칙」 제172조의2(채권의 포기) ① 채권의 포기 대상은 채무관계자에게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한 특수채권 중 주채무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2. 제168조제2항제10호,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시효중단조치를 포기한 채권* 3.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 확정된 채권 4. 법인 해산(간주) 또는 청산종결(간주)된 채권 5. 법인 파산절차가 종결 결정된 채권 6. 신용회복절차 또는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에 따른 채무부담액을 전액 상환한 채권 <p>*노령자(소멸시효 완성시점 기준 만 70세 이상)인 경우, 기초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급권자)로서 사실 확인 서류를 제출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으로서 사실 확인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따라 시효중단조치를 포기한 채권</p>
지역신용보증재단	<p>「추심불능채권 관리기준」 제4조 (관리종결 대상채권) ① 대위변제 후 3년 이상 경과한 추심불능채권을 관리종결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관리종결 대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무자가 구체적으로 채무상환을 요청한 경우 2. 예상구상실익 있는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발견된 경우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관리종결 대상으로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하거나 법인인 경우 절차 완료된 채권 2.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정상적으로 종결한 채권

구분	개인금융부실채권 소각 내부규정
한국자산 관리공사	<p>「인수채권정리업무규정」 제94조(채권포기대상) 채권포기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채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거나 회수가능 재산이 없는 상각채권 2. 채무관계인이 모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제계획인가 또는 파산선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된 채권 3. 매입대금 평가 없이 인수한 채권으로 사장이 정하는 채권 4. 이자만 남은 채권 중 주채무자 소유의 회수가능 재산이 없는 채권 5. 시효중단 소송 시 청구금액에서 제외한 채권 6.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자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 채권
한국주택 금융공사	<p>「주택보증 채권관리 업무처리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무상환(자체 채무조정 또는 사전 규제해제 포함) (2) 채무관계자 사망 또는 교체 (3) 채무관계자의 한정상속인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한정상속인이 법원의 한정승인결정문에 따라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확인될 것 (나) 피상속인의 실익있는 재산이 발견되지 않았을 것 (4) 소송패소 그 밖에 채무부존재가 증명된 경우 등 (5)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절차에서의 채무조정금액 상환 완료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가된 회생계획 전부이행. 다만,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는 제외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결정 확정. 다만, 별제권이 있는 경우 및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는 제외 (8) 소멸시효완성 (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 종료. 다만,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계획대로 이행된 경우에 한함
한국장학 재단	-
근로복지 공단	-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017년 금융위원회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강화 방향과 다르게 공공기관의 개인금융부실채권 보유 규모는 2018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이 확대되었고, 고금리 기조로 인해 개인채무의 상환여력이 악화된 측면도 있지만, 일부 공공기관에 있어 개인금융부실채권의 상각과 소각매각을 통한 적극적인 조정·정리 노력보다는 관행적인 부실채권 보유를 지속한 측면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⁷⁵⁾.

최근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1차 회의(2026.1.)에서 장기연체채무자의 신속

75)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취약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향후 5년간 2.2조원)

한 재기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보유 개인금융부실채권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일원화 관리 제도의 강화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회수가능성이 없는 개인금융부실채권의 신속한 정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별 개인금융부실채권 보유 현황과 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부실채권의 상각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 기간 단축, 한국자산관리공사 협약기관을 확대 등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요 공공기관은 개인금융부실채권에 대해 자체적인 채무조정보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등을 통한 대외 채무조정 지원 비중이 더 높았다. 또한 공공기관 자체 채무조정의 감면율은 대외 채무조정보다 상대적으로 낮았고, 채무조정 약정자의 실효율은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 공공기관은 효과적인 자체 채무조정체계를 마련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개인금융부실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체결 건수는 2018년 12.4만 명(건)에서 2025년 28.7만 명(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자체적인 대내 채무조정 비중은 2018년 45.7%에서 34.6%로 감소했고,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등을 통한 대외 채무조정 비중은 2018년 54.3%에서 2025년 65.4%로 증가했다.

[공공기관 개인금융부실채권 채무조정 체결 현황]

(단위: 명(건), 억 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기술보증 기금	대 채무자 수	378	456	343	303	256	201	181	151
	내 채권액	927	1,052	961	921	623	557	461	355
	대 채무자 수	633	721	689	571	429	435	433	392
	외 채권액	691	822	815	640	545	515	528	503
한국무역 보험공사	대 채무자 수	12	26	9	11	3	14	10	21
	내 채권액	33	50	18	13	4	32	22	29
	대 채무자 수	102	116	100	60	47	59	76	60
	외 채권액	269	256	410	303	111	139	130	171
서민금융 진흥원	대 채무자 수	911	2,615	2,777	4,548	9,672	11,339	16,652	20,504
	내 채권액	71	206	209	335	744	857	1,316	1,502
	대 채무자 수	8,941	9,669	10,914	19,628	22,535	36,607	55,838	65,007
	외 채권액	721	772	755	1,375	1,735	3,017	4,881	4,282
소상공인 시장진흥 공단	대 업체 수	43	241	456	445	224	309	20,956	33,729
	내 채권액	20	149	220	199	133	178	5,256	9,533
	대 업체 수	178	505	815	1,572	6,966	25,697	37,476	40,809
	외 채권액	86	256	242	350	1,406	5,694	8,204	8,469
신용보증 기금	대 채무자 수	672	616	463	389	398	452	886	965
	내 채권액	146	143	109	101	137	118	238	267
	대 채무자 수	551	313	263	755	2,565	4,081	5,635	5,419
	외 채권액	102	69	52	145	549	929	1,182	1,101
주택도시 보증공사	대 채무자 수	-	14	8	54	61	512	544	340
	내 채권액	-	16	11	61	120	1,262	1,345	668
	대 채무자 수	4	14	41	55	127	278	402	1,181
	외 채권액	8	25	61	112	443	874	1,115	2,762
중소벤처 기업진흥 공단	대 채무자 수	12	20	25	90	46	71	58	60
	내 채권액	5	11	19	52	26	55	34	34
	대 채무자 수	982	1,011	1,057	936	919	1,098	1,165	1,107
	외 채권액	1,245	1,163	1,340	1,293	1,092	1,359	1,324	1,127
지역신용 보증재단	대 채무자 수	11,924	11,717	15,985	12,252	10,664	9,357	10,623	11,038
	내 채권액	2,036	2,157	2,540	2,509	2,485	2,257	2,664	2,692
	대 채무자 수	17,899	19,476	19,132	17,301	17,659	27,400	32,074	29,895
	외 채권액	2,993	12,592	3,613	3,848	4,584	8,961	10,271	8,708
한국자산 관리공사	대 채무자 수	26,699	25,979	18,782	19,556	16,734	16,105	14,294	19,580
	내 채권액	3,666	3,615	2,716	3,107	2,628	2,322	2,333	2,945
	대 채무자 수	32,355	37,431	44,690	45,458	38,889	37,890	37,824	25,502
	외 채권액	5,257	5,768	6,410	7,097	6,284	5,846	6,179	4,111
한국주택 금융공사	대 채무자 수	3,217	3,418	3,228	3,409	2,690	2,697	2,998	4,737
	내 채권액	1,434	3,480	1,090	1,149	1,046	1,238	1,944	3,244
	대 채무자 수	1,479	1,573	1,618	1,358	1,299	1,342	1,936	2,126
	외 채권액	410	439	475	394	457	544	868	930
한국장학 재단	대 채무자 수	12,879	13,575	17,206	11,738	8,796	8,955	7,430	8,170
	내 채권액	1,064	978	1,079	761	582	586	537	693
	대 채무자 수	-	-	-	-	3,127	3,350	3,201	3,946
	외 채권액	-	-	-	-	218	230	226	275

(단위: 명(건), 억 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근로복지 공단	대 채무자 수	63	97	123	87	88	69	64	33
	내 채권액	2	4	4	4	4	3	4	1
합계	대 채무자 수	4,273	4,264	4,361	5,184	6,717	8,609	9,628	11,814
	외 채권액	172	172	176	209	271	347	388	476
합계	대 채무자 수	56,810	58,774	59,405	52,882	49,632	50,081	74,696	99,328
	내 채권액	9,404	11,861	8,976	9,212	8,532	9,465	16,154	21,963
	대 채무자 수	67,397	75,094	83,685	92,886	101,287	146,887	185,750	187,342
	외 채권액	11,954	22,335	14,360	15,785	17,713	28,523	35,412	33,091
	전체 채무자	124,207	133,868	143,090	145,768	150,919	196,968	260,446	286,670
	전체 채권액	21,358	34,196	23,336	24,997	26,245	37,988	51,566	55,054
(비중)	대내	45.7	43.9	41.5	36.3	32.9	25.4	28.7	34.6
	대외	54.3	56.1	58.5	63.7	67.1	74.6	71.3	65.4

- 주: 1. 채무자 수와 채권액은 채무조정 신청일 기준으로 채무자 수는 채무조정 체결완료건, 채권액은 채무조정 신청 당시 채무조정대상 채권액 기준
 2. 대내채무조정은 공공기관 자체 채무조정, 대외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개인파산,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등을 포함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내 채무조정은 업체수 기준
 4. 한국장학재단은 대내채무조정은 건수로, 대외채무조정은 인원수로 관리
 5. 서민금융진흥원은 채무조정은 건수로 관리하며, 대외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기준
 6. 전체 채무자와 채권액은 대내채무조정과 대외채무조정의 합계이며, 비중은 채무자수 기준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주요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르면 자체 채무조정의 채무원금 감면율이 25%~80% 범위에 분포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은 90%까지 감면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채무원금 감면 없이 손해금률/지연배상금률 감면을 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의 채무조정은 채무원금 감면이 없이 이자율 감면이 지원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채무원금 감면이 없이 분할 상환만 지원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채무원금 감면이 없이 분할상환과 한시적으로 이자율 감면이 지원되고 있다.

[공공기관 개인금융부실채권 대내 채무조정 감면을 적용 규정]

구분	부실채권 감면을 범위	비고
기술보증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채무자: 최소 45% ~ 최대 70% • 연대보증인 등: 최소 60% ~ 최대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취약계층: 70% ~ 90%
한국무역보험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채무자: 최대 50% ~ 70% • 연대보증인 등: 최대 75% ~ 최대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취약계층 또는 청년 : 7.5%p~10%p 추가
서민금융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상각완료 채권 • 내용 : 상각 이후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감면율을 높여 상환부담을 최소 70%~최대 90% 까지 원금감면 지원 • 세부대상 및 감면율 : 기초수급자 등(생계·의료급여, 90% 감면), 70세 이상자 등(80% 감면),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법정차상위계층 등(7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관계자의 재산에 대한 구상 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총 채권액에서 구상실익가액을 차감한 잔여채권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차주 • 내용 : 최대 7년 장기분할상환 및 1%p 금리감면* * (금리감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영애로(매출감소, 중·저신용 등)가 확인되는 차주에 한하여 적용 	-
신용보증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채무자: 최소 40% ~ 최대 70% • 연대보증인 등: 최소 50% ~ 최대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취약계층: 70% ~ 90%
주택도시보증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25% ~ 최대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배려계층: 70% ~ 9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최대 50% ~ 70% •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취약계층: 80% ~ 90%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역신용보증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채무자: 최소 40% ~ 최대 70% • 연대보증인 등: 최소 50% ~ 최대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취약계층: 70% ~ 90%
한국자산관리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 채무조정지수(채무관계자의 소득, 연령, 연체기간을 고려한 채무조정지수)에 따른 최소 30% ~ 최대 60% 감면을 적용 • 연대보증인: 채권인수 당시의 채무관계자 수로 안분한 인수채권액*에서 감면을 적용 • * 원금 1천만원, 채무관계자 2인, 감면율 60%의 경우, (1,000만원/2)×60% = 채무부담액 300만원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70%~90% • 특수채무관계자(사망자, 실종자, 특수채권 등): 60%~90%
한국주택금융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25% ~ 최대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배려계층: 70% ~ 90%
한국장학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보증학자금 대출: 손해금 50% • 일반학자금 대출: 지연배상금 25% ~ 60% · 2019년 이전: 6% → 4.5% · 2020년 1학기: 가산금리 2.5% → 1% · 2020년 2학기 이후: 가산금리 2.0% →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취약계층: 손해금 및 지연배상금 최대 100%
근로복지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할상환 또는 일시납으로 채무상환예정액을 전액상환하면 지연이자 일부 면제 • 일시상환시: 지연이자 9%→연3% • 분할상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발생지연이자 연 9%→연6% - 향후 발생 지연이자 연9%→연6~2%(약정초입금에 따라 상이)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공공기관의 자체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원금 감면율을 살펴보면, 2025년 기준 평균 42.1%였고 최대 69.7%까지 분포하였다. 같은 해 기준으로 대내 채무조정 감면율은 평균 29.3%, 대외 채무조정 감면율은 54.8%로 대외 채무조정의 감면율이 더 높았다. 특히 채무원금 감면 규정이 있는 기관 가운데서도 서민금융진흥원의 2025년 평균 감면율은 9.3%(대내 10.3%, 대외 8.3%)로 가장 낮았다.

공공기관의 채무조정 평균 실효율은 2018년 29.5%, 2025년 6.9%로 조사되었다. 다만 실효율은 채무조정을 체결한 당해연도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실효 건수가 누적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수치가 낮아져 실효율이 개선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2018년 기준 평균 실효율은 29.5%였지만, 대내 채무조정 실효율은 33.3%, 대외 채무조정 실효율은 25.7%로 대내 채무조정이 7.6%포인트 더 높다. 이후 그 격차는 2023년 9.4%포인트, 2024년 10.5%포인트까지 확대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기관은 개인금융부실채권에 대해 대내 채무조정보다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대외 채무조정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는 다중채무자의 경우 공공기관의 자체 채무조정보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여러 기관의 채권을 함께 조정받는 것이 더 유리했을 가능성이 있고, 동시에 공공기관의 대내 채무조정 감면율이 대외 채무조정 감면율보다 낮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더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도 시사한다.

중요한 점은 대내 채무조정 실효율이 대외 채무조정 실효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격차도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기관의 자체 채무조정 감면율이 낮기 때문일 수도 있고, 공공기관 자체 채무조정 체계의 효과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으로 3천만 원 미만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자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부실채권 채무자의 93.0% 이상이 3천만 원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공공기관의 자체 채무조정 수요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자체 채무조정은 외부 채무조정보다 감면율이 낮고, 실효율은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위원회와 공공기관은 자체 채무조정 체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채무자에게 더 효과적인 채무조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개인금융부실채권 채무조정 감면율 현황]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기술보증 기금	평균 감면율	71.9	70.6	70.6	73.1	70.7	71.1	68.4	69.7
	대내 감면율	73.0	68.9	67.4	72.0	64.9	64.4	63.4	60.9
	대외 감면율	70.8	73.1	74.5	74.1	76.5	77.9	73.5	78.5
한국무역 보험공사	평균 감면율	50.4	73.5	74.3	68.6	46.3	72.1	53.1	50.4
	대내 감면율	45.5	74.0	66.7	69.2	25.0	68.8	40.9	24.1
	대외 감면율	55.4	73.0	82.0	68.0	67.6	75.5	65.4	76.6
서민금융 진흥원	평균 감면율	2.1	6.3	8.0	9.3	10.6	6.8	8.0	9.3
	대내 감면율	0.3	6.7	8.2	9.9	12.3	7.0	9.3	10.3
	대외 감면율	3.8	5.8	7.8	8.6	8.9	6.5	6.8	8.3
소상공인 시장진흥 공단	평균 감면율	90.7	88.7	86.4	80.9	48.6	55.3	59.3	69.5
	대내 감면율	-	-	-	-	-	-	-	-
	대외 감면율	90.7	88.7	86.4	80.9	48.6	55.3	59.3	69.5
신용보증 기금	평균 감면율	39.8	52.1	52.7	52.2	52.4	44.2	44.3	51.0
	대내 감면율	31.5	42.0	47.7	48.5	48.2	20.3	18.9	29.2
	대외 감면율	48.0	62.3	57.7	55.9	56.6	68.0	69.6	72.8
주택도시 보증공사	평균 감면율	5.7	16.5	6.0	6.3	1.4	0.9	2.1	0.4
	대내 감면율	-	-	-	-	-	-	-	-
	대외 감면율	5.7	16.5	6.0	6.3	1.4	0.9	2.1	0.4
중소벤처 기업진흥 공단	평균 감면율	63.0	63.9	75.2	66.4	64.5	66.2	58.9	59.9
	대내 감면율	40.0	45.5	63.2	53.8	46.2	56.4	50.0	47.1
	대외 감면율	85.9	82.4	87.2	78.9	82.8	75.9	67.7	72.7
지역신용 보증재단	평균 감면율	37.0	39.0	43.4	41.9	46.6	46.0	42.7	39.2
	대내 감면율	37.4	42.2	49.6	45.7	48.5	42.5	36.0	36.2
	대외 감면율	36.6	35.8	37.1	38.1	44.7	49.4	49.5	42.1
한국자산 관리공사	평균 감면율	67.0	66.9	65.9	64.6	63.9	65.45	66.2	67.5
	대내 감면율	66.6	64.0	61.9	59.2	56.3	60.3	62.2	64.9
	대외 감면율	67.4	69.7	69.9	70.0	71.5	70.6	70.1	70.0
한국주택 금융공사	평균 감면율	58.0	65.0	51.5	53.8	53.7	50.2	39.6	38.8
	대내 감면율	59.7	72.4	43.4	48.7	43.6	38.4	23.4	22.0
	대외 감면율	56.3	57.6	59.6	58.9	63.9	61.9	55.8	55.6
한국장학 재단	평균 감면율	12.3	10.0	10.8	11.0	14.9	22.1	22.2	24.0
	대내 감면율	12.3	10.0	10.8	11.0	9.6	22.5	21.4	27.7
	대외 감면율	-	-	-	-	20.2	21.7	23.0	20.4
근로복지 공단	평균 감면율	41.9	41.3	41.5	42.3	55.9	61.8	57.9	45.7
	대내 감면율	0.0	0.0	0.0	0.0	25.0	33.3	25.0	0.0
	대외 감면율	83.7	82.6	83.0	84.7	86.7	90.2	90.7	91.4
전체 기관 평균	평균 감면율	45.5	48.7	48.6	47.3	43.5	46.0	42.3	42.1
	대내 감면율	36.6	38.7	38.1	38.0	34.5	37.6	31.9	29.3
	대외 감면율	54.4	58.8	59.0	56.7	52.4	54.5	52.8	54.8

- 주: 1. 채무조정 감면율 = (채무조정대상 채권액 - 채무조정채권액) / (채무조정대상 채권액)
 2. 채무조정대상 채무원금은 채무원금 이외에 발생손해금(연체이자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기관별 기준에 따라 집계
 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사회계 기준(담보채권 제외)
 4.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무조정은 분할상환 약정 체결로 채무감면 사항은 없음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공공기관 개인금융부실채권 채무조정 실효율 현황]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기술보증 기금	평균 실효율	26.6	22.7	18.3	19.9	26.5	17.3	10.3	3.2
	대내 실효율	27.2	25.2	19.5	21.8	29.7	16.9	10.5	3.3
	대외 실효율	25.9	20.2	17.1	18.0	23.3	17.7	10.2	3.1
한국무역 보험공사	평균 실효율	-	-	-	-	-	-	-	-
	대내 실효율	-	-	-	-	-	-	-	-
	대외 실효율	-	-	-	-	-	-	-	-
서민금융 진흥원	평균 실효율	43.9	38.6	35.1	36.8	38.4	40.2	32.2	15.4
	대내 실효율	60.0	52.0	47.3	49.6	54.5	60.9	50.9	27.2
	대외 실효율	27.8	25.2	22.9	24.0	22.3	19.5	13.5	3.6
소상공인 시장진흥 공단	평균 실효율	57.0	43.0	38.0	42.0	34.0	28.0	11.5	3.0
	대내 실효율	47.0	46.0	37.0	43.0	31.0	32.0	9.0	2.0
	대외 실효율	67.0	40.0	39.0	41.0	37.0	24.0	14.0	4.0
신용보증 기금	평균 실효율	27.0	21.2	20.9	21.0	19.9	18.4	12.0	4.8
	대내 실효율	28.9	27.9	26.6	29.6	26.9	29.2	19.3	8.8
	대외 실효율	25.0	14.4	15.2	12.3	12.9	7.6	4.6	0.8
주택도시 보증공사	평균 실효율	-	10.7	9.8	14.7	12.5	17.9	12.2	3.1
	대내 실효율	-	14.3	-	13.0	11.5	21.1	19.9	5.0
	대외 실효율	-	7.1	9.8	16.4	13.4	14.7	4.5	1.1
중소벤처 기업진흥 공단	평균 실효율	12.5	17.0	15.0	10.0	11.0	12.5	27.0	15.5
	대내 실효율	17.0	20.0	16.0	6.0	11.0	13.0	38.0	18.0
	대외 실효율	8.0	14.0	14.0	14.0	11.0	12.0	16.0	13.0
지역신용 보증재단	평균 실효율	37.3	32.7	25.2	28.1	28.5	27.3	23.5	15.0
	대내 실효율	47.3	40.5	28.1	32.0	33.0	38.0	37.0	23.8
	대외 실효율	27.3	24.9	22.2	24.1	24.0	16.5	10.0	6.2
한국자산 관리공사	평균 실효율	20.3	18.9	16.8	14.6	14.45	12.3	8.1	3.3
	대내 실효율	22.2	21.1	17.5	15.2	15.3	13.4	8.9	3.0
	대외 실효율	18.3	16.7	16.1	14.0	13.6	11.2	7.3	3.6
한국주택 금융공사	평균 실효율	27.5	28.5	25.6	19.6	18.0	14.4	7.3	1.0
	대내 실효율	48.6	47.7	40.9	30.2	29.5	23.3	11.3	1.7
	대외 실효율	6.3	9.3	10.2	9.0	6.4	5.5	3.2	0.3
근로복지 공단	평균 실효율	15.8	20.6	14.4	16.0	12.8	14.1	7.8	10.3
	대내 실효율	6.4	5.2	6.5	6.9	5.7	11.6	9.4	15.2
	대외 실효율	25.3	36.1	22.2	25.2	19.9	16.7	6.3	5.4
한국장학 재단	평균 실효율	28.0	17.0	12.0	9.2	8.9	6.4	4.9	1.2
	대내 실효율	28.0	17.0	12.0	9.2	1.1	0.1	0.0	0.0
	대외 실효율	-	-	-	-	16.6	12.7	9.8	2.3
전체 기관 평균	평균 실효율	29.5	25.6	22.0	21.4	20.4	18.9	14.2	6.9
	대내 실효율	33.3	28.8	25.1	23.3	22.7	23.6	19.5	9.8
	대외 실효율	25.7	22.3	18.8	19.4	18.1	14.2	9.0	3.9

- 주: 1. 채무조정체결 연도 기준 실효율(실효건수/채무조정체결 건수)(예시: 2018년 채무조정 체결 후 2025년 실효되는 경우 2018년 실효건수에 포함)
 2. 평균 실효율은 대내 채무조정 실효율과 대외 채무조정 실효율의 산술평균
 3.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실효건수 데이터가 부재
 4.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사회계 기준(담보채권 제외)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가. 새출발기금 및 새도약기금 채무조정제도

(1) 새출발기금 운영방식 개선 필요

금융위원회는 당초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규모를 30조 원으로 계획하였다.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2024.7.3.)에서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채무조정 규모를 2026년까지 ‘40조 원+a’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2022년 당시 채권 매입액, 채권매입가율, 예상 부도율 등을 조정하여 채권 매입에 필요한 정부출자금 규모를 4.01조원으로 변경하였다⁷⁶⁾. 하지만 2025년 제2차 추경에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해 예상 부도율이 33%로 조정되면서 정부 출자금은 4.48조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새출발기금의 재원 조달 계획을 정부 재정 출자 4조 4,80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채 발행 9조 1,200억원 등 총 13조 6,000억원으로 변경하였다.

[새출발기금 채권 매입 계획 변경 내역]

구분	당초 계획('22.10.~)	2025년 예산('24.9.)	2025년 제2회 추경('25.6.)
채무조정 전체규모	30조 원	40조 원+a	40조 원+a
채권 매입 규모	30조 원	33.4조 원= 40조 원 × 83.5% (채권 매입 비율: 83.5%)	33.4조 원= 40조 원 × 83.5% (채권 매입 비율: 83.5%)
채권매입 소요재원	18조 원 = 30조 원 × 60% (예상매입가율: 60%)	13.6조 원= 33.4조 원 × 40.7% (예상매입가율: 40.7%)	13.6조 원= 33.4조 원 × 40.7% (예상매입가율: 40.7%)
정부 출자	3.6조 원 = 18조 원 × 20% (예상부도율: 20%)	4.01조 원= 13.6조 원 × 29.5% (예상부도율: 29.5%)	4.48조 원= 13.6조 원 × 33.0% (예상부도율: 33.0%)
캠코채 발행규모	14.4조 원 = 18조 원 - 정부출자금	9.59조 원 = 13.6조 원 - 정부출자금	9.12조 원 = 13.6조 원 - 정부출자금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76) 구체적으로 채무조정 규모를 40조 원+a로 하고, 채권 매입 비율 83.5%, 예상매입가율 40.7%, 예상 부도율 29.5%로 하여, 정부 출자금 규모(예상 손실비용 규모)는 4.01조 원으로 증가하였고, 나머지 9.59조 원은 캠코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계획이었다.

2025년 말까지 새출발기금의 자원 조달 실적을 보면, 정부 재정 출자는 2조 9,100억 원(현물 5,000억 원 포함), 한국자산관리공사채는 3조 4,700억 원이 조달 되어 총 6조 3,800억 원이 마련되어 당초 계획 대비 46.9% 수준이다.

[새출발기금 채권매입 자원 조달 계획 및 실적]

(단위: 억 원, %)

구분	계획규모 (A)	실적					합계(B)	계획대비 실적(B/A)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정부재정(출자)	44,800	11,000	2,800	3,300	12,000	29,100	65.0	
캠코(공사채)	91,200	-	3,600	15,600	15,500	34,700	38.0	
합 계	136,000	11,000	6,400	18,900	27,500	63,800	46.9	

주: 2022년 현물출자 5,000억 원, 2025년 제2회 추경 7,000억 원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첫째, 정부는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지만 계획 대비 지원 실적이 낮은 측면이 있는 바, 남은 사업기간 동안 지원 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출범 이후 4차례에 걸친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 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해왔다. 2025년말 기준 새출발기금 신청 채무자 수는 17.5만 명, 채무액은 27.7조 원이라고 한다.

[새출발기금 주요 제도개선 사항]

구분	기존('22.10월)	1차('24. 2월)	2차('24. 9월)	3차('25. 3월)	4차('25. 9월)
지원 대상	코로나19 직접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자영업자	'20. 4월 ~ '23. 11월 사업영위 소상공인·자영업자	'20. 4월 ~ '24. 6월 사업영위(+7개월)	'20. 4월 ~ '24. 11월 사업영위(+5개월)	'20. 4월 ~ '25. 6월 사업영위(+7개월)
신청기간	'22. 10월 ~ '25. 10월	'22. 10월 ~ '26. 12월(+15개월)			
원금감면	원금감면율 60~80%	원금감면율 최대 90%			
공공정보 해제	1년 이상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 해제	취·창업 성공 시 공공정보 즉시 해제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채무조정 강화	원금감면율(순부채) 60~80%				원금감면율(순부채) 90%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 개선	부동의 채권 기금 매각 후 약정				부동의 채권 약정 후 기금 매각(동의율 50%↑ 매각 제한)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채무조정 목표액을 2026년까지 33조 4,000억 원의 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2024년에는 채권액 매입 계획 7조 5,603억 원 대비 실제 매입 실적이 4조 2,302억 원으로 56.0%에 그쳤고, 2025년에도 계획 11조 5,850억 원 대비 실적이 6조 2,540억 원으로 54.0%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2025년 말까지 누적 채권 매입액은 13조 3,939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금융위원회와 새출발기금은 출범 이후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왔음에도, 2026년까지 채권액 매입 계획 총 33조 4,000억 원의 40.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연도별 새출발기금 채권매입 계획 대비 실적]

(단위: 억 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합계
채무 당초	60,000	90,000	90,000	60,000	-	300,000
조정 변경	217	20,696	94,200	144,300	141,300	400,713
계획 채권액(a)	2,952	26,145	75,603	115,850	113,450	334,000
채권매입액(b)	863	11,309	31,328	46,800	45,700	136,000
실적 채권액(c)	2,952	26,145	42,302	62,540	-	133,939
채권매입액(d)	863	11,309	19,204	28,091	-	59,467
채권액 비율(c/a)	100	100	56.0	54.0	-	40.1
채권매입액 비율(d/b)	100	100	61.3	60.0	-	43.7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채권매입 현황(2025년말 기준)]

(단위: 명, 억 원, %)

구 분	채무자수	채권액	매입액	비율
매입형(원금감면 방식)	101,327	88,908	25,152	42.3
중개형(금리인하 방식)	57,765	45,031	34,315	57.7
합 계	159,092	133,939	59,467	100.0

주: 중개형은 금융회사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안을 부동의한 경우 기금이 매입한 채권액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또한, 새출발기금 신청 채무자 17만 4,673명 중 채무조정 약정까지 체결된 채무자는 11만 4,419명으로, 신청 대비 지원 비율은 65.5%에 머물고 있다. 누적 신청자를 모두 지원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채무액은 27조 7,327억 원으로, 전체 계획 33조 4,000억 원 대비 83.0% 수준에 불과하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 현황(2025년말 기준)]

(단위: 명, 억 원, %)

구 분	새출발기금 신청		약정체결			신청대비약정 비율(B/A)
	신청자(A)	채무액	약정자(B)	채무액	평균 감면율	
매입형	111,367	152,914	57,491	52,354	원금 72%	51.6
중개형	72,131	124,413	56,928	45,735	이자율 5.2%p	78.9
합계	174,673	277,327	114,419	98,089		65.5

주: 매입형과 중개형 신청자 합계는 중복 차주를 제거하여 단순 합계와 다를 수 있음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가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채무조정 규모를 다소 과다하게 산정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채무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동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를 면밀히 살펴보고, 남은 사업 기간과 그간의 채권액 매입 실적을 고려하여 지원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새출발기금의 중개형 방식은 금융기관의 부동의로 인해 채권매입 비용이 증가하고 채무조정 체결이 지연되었으며, 채무조정 체결 이후 채무자의 실효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사업 설계상의 미비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방식은 부실 차주는 매입형, 부실우려차주는 중개형으로 구분해 운영하였다. 매입형은 부실 차주를 대상으로 새출발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직접 매입한 후,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추어 원금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반면 중개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금융회사와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여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중개형에서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안에 부동의로한 경우, 해당 채권을 새출발기금이 매입한 후 다시 채무조정안을 체결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방식 비교]

구분	중개형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매입형 채무조정(한국자산관리공사)
지원방식	금융회사의 동의를 거쳐 채무조정 지원(비동의 시 기금 매입하여 지원)	새출발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신청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지원
대상채권	연체우려 또는 연체 90일 미만 부실우려차주 신용·담보·보증채무, 부실차주 담보채무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 신용·보증 채권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금조정: 없음 금리조정: (연체 30일 이하) 9% 초과 고금리는 9%로 조정, (연체 30일 초과) 조정금리 적용 * 취약차주에 한하여 연체 30일 이하도 조정금리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금조정: 순부채의 60~80% 감면 (저소득·취약차주 최대 90%) 금리조정: 이자·연체이자 전액감면
만기연장	최대 1년 거치(부동산담보는 3년), 최대 10년 분할상환(부동산담보는 20년) * 저소득(매입형만 해당)·취약차주의 경우 최대 거치3년 최대 20년 분할상환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은 2025년 12월까지 채무자 15.9만 명의 개인 연체채권 13조 3,939억 원을 5조 9,467억 원에 매입하였다. 새출발기금 매입형(연체 90일 이상)은 88,908억 원의 채권을 25,152억 원에 매입하였고, 새출발기금 중개형(연체우려 또는 연체 90일 미만)은 45,031억 원의 채권을 34,315억 원에 매입하였다.

[새출발기금 금융회사 업권별 채권 매입 누적 현황(2025년말 기준)]

(단위: 명, 억 원)

구분	합계			매입형			중개형		
	채무자수	채권액	매입액	채무자수	채권액	매입액	채무자수	채권액	매입액
공공기관	58,799	15,880	4,697	56,345	15,203	4,236	4,615	677	461
보증기관	103,181	44,075	17,496	79,839	33,012	9,663	33,128	11,063	7,833
은행	95,037	15,358	6,334	78,232	11,183	3,070	27,027	4,175	3,264
저축은행	47,065	17,360	10,389	32,893	6,505	1,779	18,379	10,855	8,610
여신전문	120,987	36,803	17,979	99,917	20,632	5,746	57,816	16,171	12,233
보험업	8,637	1,379	485	8,476	1,246	360	177	133	125
상호금융업	8,255	3,084	2,087	7,715	1,127	298	1,029	1,957	1,789
합계	441,961	133,939	59,467	363,417	88,908	25,152	142,171	45,031	34,315

- 주: 1. 중개형은 금융회사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안을 부동의한 경우 기금이 매입한 채권액
 2. 총 채무자수와 매입형·중개형 채무자수는 다중채무자의 중복신청을 합한 수치이며, 중복을 제외한 실제 전체 채무자수는 159,092명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중개형의 채무조정안 동의율은 평균 32.4%로 낮은 수준이다. 기타 기관을 제외하면 보험업계가 96.0%로 가장 높았고, 여신금융업계는 12.9%로 가장 낮았다. 그 다음은 은행 36.4%, 저축은행 37.6%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새출발기금 금융회사 업권별 채무조정안 동의 현황(2026년 3월 기준)]

(단위: 건, %)

구분	동의희신 대상(A)	동의처리건(B)	부동의처리건(C)	동의율(B/A)	부동의율(C/A)
은행	181,992	66,294	115,698	36.4	63.6
상호금융	10,386	8,180	2,206	78.8	21.2
저축은행	51,622	19,386	32,236	37.6	62.4
보험	6,905	6,631	274	96.0	4.0
여신전문	242,435	31,377	211,058	12.9	87.1
기타기관	41,536	41,196	340	99.2	0.8
합계	534,876	173,064	361,812	32.4	67.6

주: 채무조정안 동의 현황은 새출발기금 중개형 방식에 해당함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이 같은 현상은 새출발기금 중개형 채무조정안에 금융회사가 부동의하더라도 결국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금융회사는 관리가 어려운 채무조정에 동의하기보다 해당 채권을 새출발기금에 상대적으로 높은 매입가율로 매각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출발기금 설계 당시 채권매입가율을 40.7%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실제 채권매입가율은 평균 44.4%였고, 특히 중개형의 채권매입가율은 평균 76.2%로 매입형의 28.3%보다 약 두 배 이상 높았다.

새출발기금 중개형 채권은 부실우려차주 채권으로 매입형인 부실 차주 채권보다 가치가 높아 매입가격 역시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개형은 원래 부실우려차주의 채무조정 방식이었음에도 금융회사의 부동의율이 높아지면서 추가적인 채권 매입비용이 발생하였다. 더불어 부동의 채권을 다시 매입하는 절차가 추가되면서, 채무자의 최종적인 채무조정 체결까지 지연되는 문제도 함께 나타났다.

그리고 채무조정 체결 이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실효율은 2023년 기준 매입형이 25.3%, 중개형이 42.2%이었으며, 2023년 이후 모든 연도에서 매입형보다 중개형의 실효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출발기금 업권별 채권매입가율(2025년말 기준)]

(단위: %)

구분	합계	매입형	중개형
공공기관	29.6	27.9	68.1
보증기관	39.7	29.3	70.8
은행	41.2	27.5	78.2
저축은행	59.8	27.3	79.3
여신전문	48.9	27.8	75.6
보험업	35.2	28.9	94.0
상호금융업	67.7	26.4	91.4
합계	44.4	28.3	76.2

주: 채권매입가율 = 채권매입액 / 채권액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실효율 현황]

(단위: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매입형	-	25.3	7.6	0.3
중개형	39.0	42.2	27.4	6.1

주: 여기에서 말하는 실효율이란 해당연도 채무조정 확정자 중 2025년말 시점 실효자 수 비율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중개형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5년 9월 제도를 개편하였다. 채무자가 신청한 채권 중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를 얻는 경우, 모든 신청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약정을 일괄 체결하고, 부동의 채권에 대한 기금 매입 절차는 약정체결 이후 사후적으로 진행하도록 변경하였다.

또한 전체 채권기관 중 50% 이상이 채무조정에 동의할 때는 부동의 채권이 발생하더라도 새출발기금이 이를 매입하지 않고 기존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제도를 바꾸었다.

새출발기금의 제도개선으로 채무조정 신청 건수와 약정체결 건수가 증가하여 채무조정 약정율과 실효율이 유동적일 수 있지만, 중개형 방식은 금융기관의 높은 부동의를, 채권매입에 따른 높은 비용 부담, 채무조정 약정 처리 지연, 채무자의 높은 실효율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는 제도개선 이후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새도약기금 채권매입 및 채권 소각 촉진 방안 마련 필요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 출범을 위해 2025년도 제2회 추경에서 4,000억 원을 편성하고, 2025년 8월에 '새도약기금'을 설립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의 매입 대상인 연체 7년 이상 연체채권 약 34조 원 중 5,000만 원 이하의 채권 총액은 약 16조 4,000억 원(113만 4,000명)으로 추산하였다.

새도약기금의 소요 예산은 8,4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였다. 이 중 4,000억 원은 정부 추경 예산(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금)으로 나머지 4,400억 원은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출연금⁷⁷⁾을 통해 충당하기로 하였다.

새도약기금은 2025년 10월 출범 이후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했으며 2026년 10월까지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인수하는 계획으로 추진되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 추경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	(B-A)/A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	400,000	-	△400,000	순감

주: 2025년 제2회 추경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첫째, 새도약기금은 2026년 10월까지 채권매입을 계획하고 있으나,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채권매입과 채권소각 실적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기 연체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와의 협약 체결을 확대하여 매입 및 소각 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다.

2026년 3월말 기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도약기금 대상채권 보유기관 총 2,753개사 중 2,736개사와 협약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3월말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대상채권 차주 수 65만명의 채권액 8.3조원을 인수하였다.

2025년 10월에 1차 매입채권 차주 중 상환 능력 심사제외대상⁷⁸⁾인 7만 명의 채권 1.1조 원에 대해 2025년 12월에 1차 소각을 진행하였고, 2026년 3월에 2차

77) (은행) 3,600억 원, (저축은행) 100억 원, (여전사) 300억 원, (생보) 200억 원, (손보) 200억 원

78)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수급자(보훈대상자)

로 13.3만 명의 채권 6,286억 원을 소각하였다.

새도약기금 출범 6개월이 지난 현재 채권매입목표(추정치) 대비 매입 실적 비율은 50.3%, 채권매입액 대비 채권소각액 비율은 21.3% 수준이다. 특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 지연되면서 채권매입과 소각 대부분이 공공기관 채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새도약기금 업권별 금융회사 채권 매입 및 소각 누적 현황(2026년 3월말 기준)]

(단위: 만 명, 억 원)

구 분	매입 실적		1차 소각실적		2차 소각실적		누적 소각실적	
	차주 수	채권액	차주 수	채권액	차주 수	채권액	차주 수	채권액
공공기관	35.1	58,539	6.7	11,305	7.6	1,680	14.3	12,985
은행	3.7	5,417	-	-	0.8	824	0.8	824
보험	1.7	1,665	-	-	0.4	306	0.4	306
여신전문	14.8	10,489	-	-	3.9	2,461	3.9	2,461
저축은행	1.7	723	-	-	0.4	157	0.4	157
대부	7.2	4,893	-	-	1.3	858	1.3	858
상호금융	0.8	773	-	-	-	-	-	-
기타	-	4	-	-	-	-	-	-
합 계	65.0	82,503	6.7	11,305	13.3	6,286	20.0	17,591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새도약기금 계획 대비 매입 및 소각 실적 비교(2026년 3월말 기준)]

(단위: 만 명, 억 원, %)

구 분	지원목표(추정치)(A)	채권매입액(B)	채권소각액(C)	매입비율(B/A)	소각비율(C/B)
차주수	113.4	65.0	20.0	57.3	30.8
채권액	164,000	82,503	17,591	50.3	21.3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새도약기금은 장기연체채권 매입을 위해 2,736개 금융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신용회복지원협약 금융회사의 39.0% 수준이다. 새도약기금은 매입 대상 채권인 장기연체채권 보유 금융회사와 협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신용회복지원협약과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연체채권을 다수 보유한 대부업권의 참여가 미흡하였고, 그 밖에 자산관리회사와 유동화전문회사 등과의 협약 체결도 이루어지지 않아 채권매입 실적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⁷⁹⁾

79)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명에 따르면 대부업권은 캠프에서 제시하는 채권 매입가율이 낮

[신용회복위원회 및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협약체결 현황(2026년 3월말 기준)]

(단위: 개, %)

구분	신용회복지원 협약 기관 수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협약기관 수	비율	협약기관 수	비율
보증기관	28	21	75.0	-	-
은행	21	20	95.2	17	81.0
생명보험사	19	9	47.4	10	52.6
손해보험사	12	11	91.7	5	41.7
상호저축	79	79	100.0	47	59.5
여신금융	70	50	71.4	29	41.4
수협	91	90	98.9	90	98.9
산림조합	141	141	100.0	144	102.1
농협/축협	1,115	1,111	99.6	934	83.8
신협	897	751	83.7	330	36.8
새마을금고	1,431	1,207	84.3	1,085	75.8
증권/투신	5	-	-	-	-
이동통신사	3	-	-	-	-
소액결제사	19	-	-	-	-
알뜰폰	54	-	-	-	-
공공요금	1	-	-	-	-
공공기관	6	-	-	28	466.7
파산금융기관	38	-	-	-	-
대부업	2,371	-	-	15	0.6
사업수행기관	52	-	-	-	-
자산관리회사	208	-	-	2	1.0
유동화전문회사	327	-	-	-	-
기타	20	18	-	-	-
합계	7,008	3,508	50.1	2,736	39.0

주: 새도약기금의 협약 체결 공공기관 수가 신용회복지원협약 공공기관보다 많은 이유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새도약기금의 공공기관의 분류기준의 차이로 인한 것임(보증기관 대부분이 공공기관)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새도약기금은 2026년 10월까지 공공기관, 상호금융업 및 대부업권에서 보유한 채권을 중심으로 전(全) 금융회사의 대상 채권을 인수할 계획이다. 업권별 누락 채권(법조치채권 등)을 포함한 잔여 대상 채권은 일괄 매입, 대부 회사 보유채권은 영업 타격의 최소화를 위해 순차적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그리고 은행 차입을 가능토

아 새도약기금 협약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새도약기금 대상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가 다른 재무조정제도와 협약기관과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고, 다만 협약 체결 비중이 낮아 채권매입 실적이 다소 저조한 상태이지만 대부업체, 자산관리회사, 유동화전문회사와 매입협의를 지속하고 있어 매입실적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록 하는 등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준하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협약 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새도약기금 채권매입 일정]

2025년			2026년		
10월말	11월말	12월말	2월말	4월말	6월말~
캠코 국민행복기금 (인수 완료)	은행업권 생명보험 케이알앤씨 (인수 완료)	여전업, 손해보험 저축은행, 신보 (인수 완료)	지역신용 보증재단/ 상호금융업/ 대부사 등 (인수 완료)	상호금융업/ 공공기관 등	전업권 누락채권 매입
대부회사 대상채권 수시 인수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정부는 상록수⁸⁰⁾ 장기연체채권의 추심을 중단 조치한 것처럼 현재까지 파악된 2,753개 금융회사 외에도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있는지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후 새도약기금과 해당 금융회사와 협약 체결을 추진하여 정책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자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채무자의 사전동의 없이 상환능력 심사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장기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되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새출발기금과 다르게 새도약기금은 채무자의 별도 신청 절차가 없으며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와 새도약기금이 상환 능력을 심사 완료한 때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한다⁸¹⁾. 새도약기금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 심사 때에는 행정 데이터를 수집하여 채무자의 보유 재산과 소득을 바탕으로 상환 능력을 심사하여

80)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상록수’)는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카드사들의 대량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민간 배드뱅크로, 설립 후 23년째 추심과 회수 활동을 지속하였다는 문제가 지적되었고, 이에 2025년 5월 12일 정부와 금융회사는 상록수 보유 대상채권을 최단시일 내 새도약기금에 일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상록수 장기연체채권, 카드대란 23년만에 추심과 연체이자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2026.5.12.)

81) 국민들은 새도약기금의 채권매입 이후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 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 조회가 가능하다.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채권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새도약기금은 채권 소각과 관련하여 상환 능력 심사제외대상⁸²⁾은 정기적으로 소각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채무자 사망 및 파산면책 채권은 수시로 확인 후 소각할 예정이다. 반면 상환 능력 심사가 필요한 채무자는 채무자 소득, 재산, 금융·가상자산 자료 수집 및 상환 능력을 심사한 후 소각할 계획이다.

[새도약기금 장기연체채무자 상환능력 심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재산 관련 행정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상환능력 일괄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국세청[소득금액증명], 복지부[기초생활수급], 보건부[생활조정수당] 등 ○ (재산) 국토부[차량·토지], 해수부[선박], 행안부[지방세], 금융결제원[금융자산] 등 ○ (기타) 출입국사무소[출입국기록] 등 ■ 개인 파산에 준하는 소득 수준, 재산 이하 보유시 상환능력 상실자로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月 소득 154만 원 이하[*26년 기준]) ○ (재산)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재산 無 ○ (기타) 출입국기록 등 상환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도 추가 확인 	
[생계형 자산(예)]	
구분	세부내용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이하이고, 공시지가 2,000만 원 이하 농지, 양어장, 염전 • 상속받은 선산 등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자 소유의 주택가액 또는 거주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액 이하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10년 이상 / 1톤 이하 소형 화물자동차 등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가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는 차량
어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인으로 등록된 자가 소유한 1t 이하 생계형 어선
금융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0만 원 이하

자료: 금융위원회

기존에는 채무자의 상환능력 심사에서 부동산 정보, 납세 정보 등을 주로 활용해왔지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적금, 증권 등의 금융자산, 가상자산 보유내역까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의 소득·재산·금융자산·가상자산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 주체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새도약기금은 일괄적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특성상 채무자의 동의를 개별적으로 받는 것이 어렵고, 채무조정을 위한 신용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82)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장애인연금수령자, ③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수급자(보훈대상자) 등

예외를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새도약기금과 같은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의 개별 동의 없이 상환 능력 심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2026년 4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채무조정기구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처리 규정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안 현황]

의안명	의안번호 (제안일자)	대표발의	주요 내용	비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18515 (2026.04.22.)	정무위원장	채무조정기구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정보를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일괄적으로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	본회의 통과 (2026.4.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817 (2025.10.30.)	유동수의원	채무조정기구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정보를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일괄적으로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	대안반영폐기
	2214345 (2025.11.18.)	이인영의원	채무조정법인이 채무조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개인신용정보 등의 수집·활용 특례	
	2215327 (2025.12.18.)	김승원의원	신용정보회사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채무조정을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규정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새도약기금은 원리금 감면, 채권소각 등을 결정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조사(상환능력 심사)를 하는 경우,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⁸³⁾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예·적금, 증권 등 금융자산 및 가상자산 보유내역, 기타 소득·재산정보(과세·부동산정보 등) 등을 정보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정보를 제공받은 채무조정기구는 채무자(신용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고 채무조정기구의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한시적인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8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설 조항 주요 내용]

제7장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
 제44조의2(채무조정기구의 지정·고시)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신용정보주체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의 매입
2. 원리금의 감면 등 채무조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3. 매입한 채권의 보전·추심 또는 소각
4. 제1호의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자산·소득 등의 재산조사
5. 매입한 채권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제44조의3(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 ① 제44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이하 “채무조정기구”라 한다)은 같은 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정보회사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조정기구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식별정보를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하 조문 생략)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하위규정 정비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2026년 8월부터 시행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새도약기금에서 소각한 연체채권을 조사한 결과 50대 이상이 90%이고, 1천만 원 이하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연체 기간이 15년 이상 25년 미만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새도약기금의 주요 지원 대상은 15년 이상의 장기연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고령의 채무자들이다.

이에 새도약기금을 통해 장기간 연체로 어려움을 겪어온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신속히 도모하되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나. 채무자 도덕적 해이 방지와 성실상환자 형평성 제고

첫째, 채무조정제도는 채무불이행으로 경제활동이 곤란한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기능이 크지만, 이를 악용하는 일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최소화되도록 연체 원인과 상환 능력 등을 면밀히 심사하는 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채무조정은 지급불능에 빠진 채무자에게 생산활동의 유인을 제공하는 역할과 사회불안 요소를 감소시키는 사회보장제도의 기능이 있다. 사회보장 측면에서 보면 채무자는 의도하지 않은 사건으로 채무불이행에 빠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채무조정 제도는 사회보험 역할로 볼 수 있다. 한편 채무자가 재정적 파탄 상태에서 범죄에 노출되거나, 절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국가가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보다 채무조정에 드는 비용이 더 작을 수 있다⁸⁴⁾.

하지만 정부가 채무조정제도의 지원 대상을 지속 확대하면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효과가 높아지고 있지만,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5년 감사원이 실시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출발기금 운영 감사 결과를 들 수 있다. 감사원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가운데 변제능력이 있는 차주에게도 최소 60%의 원금감면이 이루어졌고, 차주의 재산조사 과정에서 가상자산, 증여, 비상장주식 등은 제도 미비로 조사하지 못했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새출발기금 운영과 관련하여 차주의 소득 수준을 고려한 원금 감면을 산정 기준을 보완하고, 채무조정 시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감면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원금 감면율에도 상환 능력이 보다 세분되어 반영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정보 확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재의 재산조사 방식도 보완할 계획이다.

84) 오윤해, 「개인채무조정제도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KDI, 2014.12.

[감사원의 새출발기금 운영 관련 주요 감사 결과]

- (원금감면율 산정방식) 새출발기금 신청자 채무조정 시 변제능력이 있는(변제가능률 100% 이상) 차주도 최소 60% 원금을 감면받도록 설계되어 변제능력이 있는 1,994명이 계 840억 원을 감면
- (재산조사) 원금 감면 등을 목적으로 사해행위(재산 숨기기) 가능성이 높음에도 가상자산, 증여 및 비상장주식 등에 대해 법 규정 미비 등으로 재산조사 미 실시
- 이에 새출발기금 신청 전후로 1천만 원 이상 가상자산 보유자 269명, 가족 등에게 1천만 원 이상 증여자 77명, 비상장주식 보유자 39명 등으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사해행위 가능성 존재

자료: 감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감사 보고서, 2025.11.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 (부실차주 채무조정 기준 개선) 소득 등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감면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원금감면율에도 상환능력이 보다 세분화되어 반영되도록 합리적 개선
- (재산조사 강화) 가상자산 및 비상장주식 정보 확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재의 재산조사 방식 개선 추진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위원회는 채무자의 부도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상환 능력을 심사하고, 채무조정 지원이 부적절한 채권⁸⁵⁾은 매입하지 않거나 지원 결격사유로 명시하며, 은닉재산 신고센터(www.newleap.or.kr)를 통해 부정감면자 발견시 감면 조치 무효화, 신용거래상 불이익 조치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새도약기금과 같은 배드뱅크형 부실채권 일괄 매입 방식에서는 채무가 도박·유흥·코인 투기 등으로 발생했는지, 아니면 실직·질병·사업실패 등 생활고로 인해 발생했는지를 구분하기 어렵다⁸⁶⁾⁸⁷⁾.

그리고 현재 새도약기금에는 대부업권의 참여가 미흡하므로, 시중은행 등에서 생활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워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취약계층은 채무 탕감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은행 대출금을 도박이나 유흥 등에 사용한 채무자

85) 사행성·유흥업 채권, 외국인 채권(단,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은 지원), 소멸시효 완성 채권, 금융질서문란자 채권 등

86) 대출기관은 개인사업 업종코드가 사행성 업종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지만, 대출기관이 채무자의 대출금 지출 내역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87)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 채권매입 시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제외하고 있으며, 투자목적의 대출상품은 채권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가 오히려 채무를 감면받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운영에서도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면밀한 채무 발생 원인 파악과 상환 능력 심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심사 때에 가용소득과 재산·채무 금액 등을 중심으로 평가되어 신청자의 나이·역량·미래소득 등 다양한 채무자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신청시에 신청자 동의를 받아 행정·금융 정보를 확인하고 금융회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지만 과소 소득 신고자와 유흥투기 등의 사행성 채무자를 확인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⁸⁸⁾.

채무조정제도 운영에 있어 채무불이행 상태의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기능을 유지하되, 이를 악용하는 일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체 원인과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정교한 심사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채무조정 확정 이후에도 채무자의 소득·재산 변동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허위 신고자를 적발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새도약기금과 같은 정부의 한시적 채무조정 지원은 일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키우고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으므로, 반복되는 정부 주도의 일회성 채무구제보다 금융회사의 선제적 연체채권 관리와 상시적 채무조정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 같은 정부의 채무탕감 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장기연체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원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에게는 심리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형평성을 해친다는 지적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채무조정을 통한 면책요건이나 변제 의무가 지나치게 관대하면,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위축되어 다른 성실 상환 채무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채무자의 상환 의지 역시 약화하여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조정 제도는 채권자 보호와 채무자 회생이라는 두 목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 출범과 함께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88) 신용회복위원회는 향후 금융마이데이터를 통한 채무조정 심사가 도입되면(2026년 6월) 채무조정 신청자의 예금보험투자대출 등 금융상품 정보를 통합조회 할 수 있어 상환능력 심사가 더욱 고도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년 미만 연체자 등 새도약기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연체자에게도 새도약기금 수준의 원금감면과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하는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또한 7년 이상 연체 후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총 5,500억 원 규모)을 3년간 지원하는 성실상환자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새도약기금 형평성 제고 방안]

구분	주요 내용
7년 미만 연체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년 미만 연체자 등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자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 한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개인연체자 ○ 지원내용: 기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의 채무조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체기간 5년 이상: 30~80% 원금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 연체기간 5년 미만: 신용회복위원회 수준의 원금감면(20~70%), 분할상환 기간(최장 8년) 적용 - 기타: 이자 전액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지원 ○ 시행시기: 2025년 11월부터 3년간
7년 이상 연체, 채무조정 이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500억 원 규모 특례 대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7년 이상 연체[개인] + 채무조정 후 6개월 이상 이행중 ○ 지원내용: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도) 1인당 최대 1,500만 원(상환기간이 길수록 한도 확대) - (금리) 年 3~4% 수준(상환기간에 따라 인하된 금리 적용) - (상환방식) 최장 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시행시기: 2025년 11월부터 3년간

자료: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2025.10.

위기 시 반복되는 일회성 채권 소각과 기금 매입은 추가 감면 기대감을 조성해 채무자의 상환 의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연체 발생 초기부터 선제적인 연체채권 관리체계를 갖추고 자체적인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해 채무자의 상환 의지를 높일 수 있는 구조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가. 채무조정제도 운영기관

(1) 신용회복위원회의 합리적인 기관 운영 방안 마련 필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면서 금융권은 자율 협약 형태로 신용불량자⁸⁹⁾를 등록하고 패널티 기준을 설정해 운영하였다. 그러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사실상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2005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신용불량자 등록 제도를 폐지하고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대체하였다. 한편, 2000년대 초반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한꺼번에 조정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2003년 신용회복위원회가 설립되었고, 2016년 서민금융법 제정으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지정되었다.

[신용회복위원회 일반현황 및 주요 기능]

구분	주요 내용
기관설립일	2016년 9월 23일
설립근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기관유형	비영리 특수법인(주무기관: 금융위원회)
조직구성	1사무국 4본부 7지역본부(50개 지부), 19부 18개팀
임직원수	정원 총 584명 (상임임원 1명, 정규직 519명, 계약직 64명)
설립목적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을 위한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지원 등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상담: 채무 상담을 통해 신용 및 채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 ▪ 채무조정: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지원 ▪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법원 개인회생·파산이 필요한 과중채무자의 신청 지원 ▪ 소액금융: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생활운영자금 대출, 소액 신용카드 발급 등 지원 ▪ 신용교육: 채무조정 이용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부채관리 요령, 신용의 중요성 등 교육 ▪ 신용복지컨설팅: 신용관리 서민금융 등 신용상승 솔루션, 복지제도 상담제공 ▪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금융·고용·복지 연계 지원 ▪ 소상공인 컨설팅: 채무조정 소상공인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89) 당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용불량자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채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된 기일 내에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정의하였다.

설립 초기에는 3개월 이상 연체된 민간금융회사 신용대출 채무자만이 채무조정 대상이었지만 이후 연체 기간별로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였고, 정책금융기관 채무, 주택담보대출 채무 등을 추가하였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지원 외에도 소액금융,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신용교육, 신용복지컨설팅,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소액신용카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신용교육 등 사업별 개요]

구 분	사업개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소액금융	채무조정 이용자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여 변제지 및 채무상환능력을 제고하고 경제적 재기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 및 금융회사 채무조정을 통해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자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기타 긴급자금 지원(최대1,500만원 한도, 연 2~4%, 5년 이내 분할상환, 대출 건 서울보증보험 가입(채권보전))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이 더 적합한 채무자에게 법률 구조 지원	취약계층(파산),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개인회생)	개인회생·파산 신청서 작성과 제반서류의 준비를 돕고, 법률구조기관 또는 법률지원단의 법률구조 및 비용 지원
신용교육	채무자의 연체 사전 예방 및 채무조정자의 실질적 재기지원	청소년, 일반인, 군인, 채무조정자 및 개인회생·파산자	부채관리 요령, 건전한 소비습관과 신용의 중요성, 금융사기 피해 예방, 채무자 구제제도 및 복지제도 안내 등
신용복지 컨설팅	채무조정자에게 재무관리 등 전문 상담사의 정기적인 컨설팅으로 채무조정 실효를 방지하고, 신용점수 회복을 통한 금융거래 정상화 지원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 중인 채무자	채무조정자에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밀한 재무진단과 전문가의 신용상담을 통한 신용복지컨설팅을 단계별 맞춤형 지원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채무자 맞춤형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빠른 신용회복과 재기 지원	채무조정 및 고용·복지 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 채무자	사회보장정보원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업무 상호 연계로 신용회복 및 고용·복지 우선 상담 제공
소액신용(체크)카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게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을 지원하여, 신용거래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한 금융소비자로의 조기 복귀 지원	개인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소액신용체크카드(한도 30만원) 및 소액신용카드(한도 100만 원)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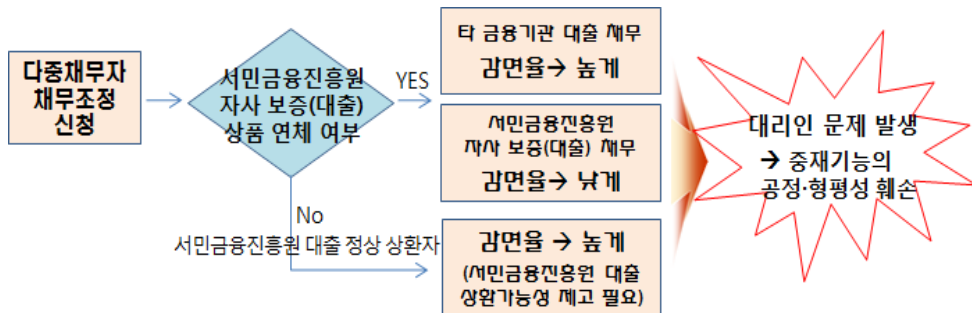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첫째, 역대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을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이 겸임해 왔는데, 이는 채무자와 금융회사 사이에서 채무조정 증재를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역할과 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역할 사이에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용회복위원회의 독립적인 기관장 선임체제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2016년 3월 기존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는 방식으로 서민금융법이 공포되었다. 이로써 정부가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2014.7.16.)에서 계획한 서민금융지원 총괄 기구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당시 정부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채무조정(증재)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보증(대출)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기관장 겸임과 업무조직의 통합에 관한 조항이었다. 정부안은 대출업무와 채무조정업무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채무조정 과정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출자자인 금융회사의 입장이 우선될 수 있어서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⁹⁰⁾.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이해상충 발생 사례 예시]



자료: 정부위원회,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5.3.

90) 예를 들어, 신용회복위원회는 기관장과 업무조직이 같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채무를 직접 감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및 부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위원장과 이사의 입장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입장이 아닌 중재자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나, 서민금융진흥원의 원장과 부원장의 입장에서는 채권자로서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서민금융진흥원이 채권상각에 소극적이거나 신용회복위원회가 타 금융기관과 달리 정책성 서민금융이라는 이유로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대출)채권의 감면에 소극적일 경우, 또는 타 금융기관들의 채무감면에만 적극적일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의 불만을 낳을 수 있다. (자료: 정부위원회,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5.3.)

이에 따라 정부위원회의 법률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다른 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신용회복위원회는 별도로 설립하되 위원장을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이 겸임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되었다.

또한 정부안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위원 구성에 서민금융진흥원의 원장과 부원장이 포함되어 있었고, 기타 위원을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영향력이 과도해질 수 있다고 보고 운영위원회의 추천 조항을 삭제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수정하였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과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을 겸임하는 방식으로 임면해 왔다. 이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간 이해 상충을 최소화하고, 채무조정 과정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높이려 했던 당초 법률 입법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역대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및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임면 현황]

연도	구분	위원장명	비고
2016~2018	서민금융진흥원 초대 원장	김운영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임
2018~2022	서민금융진흥원 2대 원장	이계문	
2022~2025	서민금융진흥원 3대 원장	이재연	
2026~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4대 원장	김은경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 지원과 채무조정제도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어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효과적인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법률이 정한 두 기관의 역할이 명확히 다른 상황에 기관장 겸임이 곧 협력체계 강화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반대로 기관장 겸임으로 인해 각 기관의 주요 정책 결정에 있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물리적으로 부족할 우려가 있다⁹¹⁾⁹²⁾.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법 제정 과정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기능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했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채무조정 기능의

91) 기관장이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일주일에 2~3일씩 나누어 근무한다고 설명하였다.

92)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법에서 기관장 겸임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서민금융 공급과 채무조정은 긴밀히 연계되어야 하 업무로서 서민금융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겸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을 별도로 임면하고 독립적인 운영체계 마련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구성 법률 조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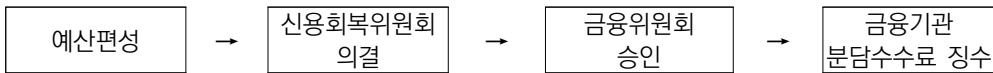
휴먼에듀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정부안, 2014.12.2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016.3.22., 제정)
<p>제3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진흥원의 원장이 겸임한다.</p>	<p>제6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2. 생명보험협회 회장 3. 손해보험협회 회장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회장 5.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호금융대표이사 7. 진흥원의 부원장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2. 생명보험협회 회장 3. 손해보험협회 회장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회장 5.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호금융대표이사 7. 진흥원의 부원장
<p>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는 사람</p> <p>가.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나. 소비자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p> <p>라. 그 밖에 금융·경제·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제4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사람</p>	<p>8. 소비자 보호 및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p> <p>가.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나. 소비자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마. 그 밖에 금융·경제·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p> <p>④ 위원회의 위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공정하고 균형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p>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둘째, 최근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증가와 대출상품 확대에 따라 수입이 늘어나면서 현금성 자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이를 고유 목적사업에 적시에 투입하기보다는 금융상품으로 운용하고 있어 주무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 수입과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운영 재원은 서민금융법 제76조⁹³⁾에 근거해 채무조정 지원 신청을 한 개인채무자의 신청비(5만 원)⁹⁴⁾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회수하는 채권액에 따라 분담하는 수수료로 구성된다. 2026년 금융회사 분담 수수료율은 3.88%이다.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회사 분담 수수료 징수 절차]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회사 분담 수수료율 연도별 현황]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수수료율	3.85	3.40	3.73	3.75	3.98	3.93	3.98	3.95	3.69	3.88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수입은 2017년 611억 원에서 2024년 1,498억 원까지 증가했다가 2025년 기부금 감소로 1,087억 원으로 감소했다. 수입은 금융회사의 분담 수수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2023년 이후 기부금⁹⁵⁾도 많이 증가했다. 그리고 단기금융상품 이자수익, 대출상품 이자수익 등도 증가했다.

9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수수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채무조정 지원신청을 한 개인채무자
 2. 제75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94) 질병, 재난 등의 사유로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채무 재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취약계층·최초 재조정 신청자는 신청비용을 면제한다.

95) 기부금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출연하였고, 주로 취약계층 자활 지원을 위한 취약 청년 건강보험료 지원,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지원 등으로 집행되었다.

2026년 기준 예산의 지출항목은 자본예산⁹⁶⁾ 151억 원, 인건비 547억 원, 경상경비 626억 원, 예비비 20억 원 등이다. 수입에서 지출을 제한 잉여금은 2019년 까지 적자였지만, 2020년부터 흑자가 발생하였고 2025년은 74억 원에 달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연도별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수입	운영분담수수료	369	394	432	446	460	462	671	747	826
	신용회복신청금	70	74	76	75	64	60	77	83	101
	기부금	91	107	111	115	134	122	329	566	30
	대출이자 수익	48	47	44	31	45	45	50	49	47
	금융상품 이자	12	14	16	7	14	14	31	43	48
	기타(환입액 등)	20	10	14	14	17	16	9	10	35
	수입 합계(A)	611	646	692	688	734	719	1,167	1,498	1,087
지출	사업수행비용	253	99	172	60	47	58	371	605	79
	일반관리비용	406	434	529	600	641	699	746	830	901
	법인세	-	-	-	0.6	0.2	1.2	1.1	29	△0.1
	기타(사업외비용)	-	0.1	-	-	-	-	0.1	-	33
	지출 합계(B)	659	533	700	661	688	759	1,118	1,464	1,013
잉여금(A-B)	△49	△87	△9	26	46	30	49	33	74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연도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생활비 등 긴급자금을 대출하여 채무조정 중도 탈락 방지와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상품은 2025년 4.5만 명에게 1,048억 원을 지원하였고,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 소액대출 공급 규모를 연간 4,200억 원, 지원 대상을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채무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 연도별 실적 현황]

(단위: 만 명, 억 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누계
지원자	17.3	2.2	2.3	3.0	3.9	4.5	4.2	4.7	4.5	46.6
지원금액	5,519	697	721	837	995	1,137	1,083	1,210	1,048	13,247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96) 자본예산은 임차보증금, 집기비품(사무자동화기기, 사무용가구, 전산시스템 등) 비용으로 집행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유동성 자산은 2023년부터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액 증가로 2023년 이전 1,000억 원대에서 2025년에는 2,340억 원을 상회한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대부분 보통예금 형태로 운용되며 주로 기관 운영비로 지출된다. 단기금융상품은 2025년 1,525억 원으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다⁹⁷⁾.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수요 증가에 따라 금융회사의 분담 수수료, 기부금, 대출상품 이자, 금융상품 이자 등이 늘어나면서 2025년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483억 원, 단기금융상품 1,525억 원으로 현금 규모가 2,008억 원으로 늘어났다.

[신용회복위원회 연도별 유동성 자산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현금및현금성자산(a)	423	401	632	705	513	449	859	1,116	483
변제금수납예금	144	159	133	127	111	124	138	137	242
단기금융상품(b)	450	390	215	340	385	360	408	650	1,525
선급보험료	25	27	29	36	47	60	60	62	63
미수금및미수익	31	3	3	4	5	9	13	17	20
선급법인세등	1	2	2	1	1	2	4	6	7
기타유동자산	-	-	-	-	-	-	-	1	1
합계	1,075	982	1,015	1,213	1,062	1,003	1,482	1,989	2,340
(현금성자산)(a+b)	873	565	543	742	627	809	1,267	1,766	2,008

주: 1. 변제금수납예금은 채무조정 신청인으로부터 수납한 변제금을 채권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임시로 보관하는 자금

2. 기타 유동자산은 선급금, 선급비용, 부가세대급금 등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연도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

이처럼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제도 운영을 통한 수입, 대출상품 확대에 의한 이자수익, 현금자산의 금융상품예치 이자수익 등으로 현금성 자산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는 기관 고유 역할인 채무조정제도 운영 이외에 소액금융 대출, 신용교육, 신용복지컨설팅 등을 추진하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서민금융 지원 기능이 일부 중첩되고 있다⁹⁸⁾.

97) 2025년 기준 단기금융상품 1,525억 원은 소액금융회계(지자체 차입금 관리 계정) 750억 원, 채무조정회계(기부금 및 운영 재원 계정) 450억 원, 신용보증회계 등 325억 원 등이다. 지자체 차입금은 지자체가 지역 내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소액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이자율 0%로 빌려준 자금이며 2017년 167억 원에서 2025년 약 740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자체 차입금 예치를 통해 발생한 이자 수익은 소액금융 지원사업 운영비로 집행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금융법에 근거한 공익특수법인으로 정부 재정 없이 금융회사의 분담수수료 등으로 운영되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에 미지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서민금융법 제69조⁹⁹⁾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는 매년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승인받아야 하며, 사업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서민금융법 제78조¹⁰⁰⁾에 근거해 금융위원회는 필요시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하거나 또는 검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2016년 신용회복위원회 설립 이후 업무계획을 제출받아 승인한 것 외에 신용회복위원회 종합감사를 2018년에 실시한 이후 별도의 감사를 진행한 바는 없다¹⁰¹⁾.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회사 수수료 수입 등으로 늘어난 수입이 신용회복위원회 설립목적과 역할에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의 관련 법률에 따라 민간에서 설립된 협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사례가 있고¹⁰²⁾, 신용회복위원회가 법률에 따라 독점적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¹⁰³⁾.

98)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해당 소액대출사업이 채무조정 사후관리업무에 하나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공급과는 대상과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입장이다.

9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등) ①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서 또는 예산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여 그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업무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외부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0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감독 등) ③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흥원등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흥원등의 업무상황이나 장부·서류·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01)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 종합감사를 2015년 12월, 2018년 5월에 실시하였다.

102)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지산기술협회, 한국해양조사협회 등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103)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재정 없이 채무자와 채권자 간 자율적 협약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공공기관 지정 시 정원·예산·사업계획에 대한 정부의 통제로 인해 채무조정 수요 급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며, 채권자와 채무자 간 중립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 재무건전성 개선 필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관리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업무, 금융취약계층의 재기지원, 국유재산관리 및 체납조세정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본금은 5조 219억원(법정자본금은 7조원)이며 주요 주주는 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15개 금융회사 등이다. 공사 조직은 5부분 39부서 12개 지역본부, 총 정원은 1,951명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공기관의 개인금융부실채권을 인수하여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을 설립하여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일반현황 및 주요 기능]

구분	주요 내용
기관설립일	1962년 4월 6일
설립근거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6조
기관유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주무기관	금융위원회
자본금	5조 219억원(법정자본금 7조원)
사업예산	2025년 결산 기준 9조 1,601억원(정부지원수입 8,984억원)
조직구성	5부분 39부서 12개 지역본부
임직원수	정원 총 1,951명 (상임임원 8명, 정규직 1,699명, 무기계약직 244명)
설립목적	부실자산의 정리와 개인채무자 및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국가기관 등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개발 등 업무를 수행
주요 기능 및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정리 등 금융회사 유동성 및 건전성 제고 ▪ 금융취약계층의 신용회복 및 서민금융 지원 등 가계 재기 지원 ▪ 기업자산 인수, 취약기업 구조조정 지원 등 기업 정상화 지원 ▪ 국공유재산 관리·개발, 체납조세 정리 등 공공자산 가치창출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출발기금과 같은 채무조정기구 운영과 더불어 기관의 설립목적에 따라 가계·기업 재기지원과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업 재원을 공사채 발행으로 조달하면서 공사의 금융부채가 증가하고 있어 장기 미회수자산 회수 강화,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증장기 재무건전성 제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채규모는 2021년 4조 4,693억원에서 2025년 11조 4,055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사의 부채비율은 2021년 163.5%에서 2025년 213.7%로 높아졌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주요 재무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예상)
자산	72,022	92,286	112,932	138,189	167,439
부채	44,693	53,129	71,447	92,529	114,055
자본	27,329	39,157	41,485	45,660	53,384
매출액	6,387	6,701	7,128	8,716	9,611
당기순이익	496	791	1,103	312	1,502
부채비율	163.5	135.7	172.2	202.6	213.7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영업이익은 300억원 내외로 정체되어 있다가 2025년 손익 개선 노력으로 1,200억원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나, 캠퍼의 가계 및 기업지원 사업 규모의 지속적 확대에 따라 차입금이 지속 증가하여 차입금 의존도가 65.2%에 달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재무건전성 지표 현황]

(단위: 억 원, 배,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영업이익	423	251	338	303	1,186
금융원가	768	1,046	642	1,773	1,307
이자보상배율	0.55	0.24	0.53	0.17	0.91
자기자본	27,487	40,289	42,560	46,911	54,357
장기차입금(기말)	33,087	37,704	47,854	69,249	85,569
단기차입금(기말)	6,533	11,898	22,134	23,621	32,894
차입금 의존도	52.8	50.2	58.4	63.1	65.2

주: 1.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원가

2. 차입금 의존도=차입금(단기차입금+장기차입금)/총자산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증장기 재무관리계획(2025~2029)에 따르면, 가계 부문 투자금액 확대에 따라 2026년 부채비율은 2025년 대비 29%p 증가하고, 이자 비용은 740억 원 증가하는 등 재무적 부담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채비율 악화에 대응해 합리적인 투자 계획과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부채손익관리 계획 수립으로 건전성을 높이고자 한다.

대규모 정책사업 수행으로 인한 부채 증가에 대응해 회수 강화와 투자효율화 등 재무개선 노력으로 부채비율을 최대 240% 이하, 영업이익은 200억원~600억원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자산 규모는 새출발기금 출자대여, 부실채권 및 기업자산 인수 등으로 인해 2029년 21.6조 원으로 예상된다. 부채 규모는 부실채권 매입과 가계·기업지원 투자 지속 등에 따라 2029년 14.9조 원, 부채비율은 223.4%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투자효율화 및 장기 미회수자산의 회수를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비용은 절감하는 등의 자구노력으로 공적 기능 수행과 재무 건전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2025~2029년 재무 전망]

(단위: 억 원, %, 배)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자산	195,446	220,014	221,710	220,360	216,057
부채	131,694	154,453	155,604	153,567	149,242
- 금융부채	126,062	148,560	149,804	144,930	137,268
• 공사채 등 (가계부문 투자)	122,075	143,173	143,929	138,416	131,362
- 비금융부채	5,632	5,893	5,800	8,637	11,974
부채비율	206.6	235.6	235.4	229.9	223.4
이자비용	3,676	4,416	4,549	4,419	4,145
영업이익	282	371	486	523	573
당기순이익	528	611	678	625	678
이자보상배율	0.08	0.08	0.11	0.12	0.14
수정이자보상배율	1.01	1.03	1.05	1.06	1.08

주: 1. 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 / 총이자비용

2. 수정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매출원가 포함 이자비용) / 총이자비용

3. 가계부문 투자는 정부 재정 출자금을 제외한 금액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증장기 재무관리계획(2025~2029년), 2025.9.

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체계

정부는 서민금융 이용자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 제공 시 고용, 복지를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2024년 6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¹⁰⁴⁾.

동 방안은 2024년 1월에 발표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¹⁰⁵⁾을 복지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핵심 내용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정책서민금융과 고용지원, 신용부채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이를 위해 복합지원 전담 인원을 확대하고, 지자체 등 유관 기관 간 협업 강화, 복지 위기가구 발굴,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복합지원 제공 강화 등이다.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 주요 내용〕

구분	기본 추진 방향 및 추진 과제	
금융-고용	복합지원 既 발표 방안 이행	① 고용지원 연계 대상 확대 ② 온·오프라인 연계 체계 구축 ③ 연계 가능 고용 지원제도 확대 ④ 환류 체계 구축
	신규 지원방안 발굴	⑤ 금융 컨설팅 지원 대상 확대
금융-복지	복합지원 서비스 접근성 제고	① 복지 대상자에게 신속 서민금융 상담 제공 ② 직원 상호 교육 활성화
	복지 혜택의 확대	③ 금융-정신건강지원 연계 확대·강화 ④ 서민금융 고객 대상 복지멤버십 가입 혜택 제공 ⑤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서민금융 정보 추가
금융-기타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① 서민금융 상담자에게 법률 플랫폼을 통한 법률구조 지원 ② 금감원-서금센터 간 양방향 전산 연계
인프라	고용-복지 연계 및 기관 간 협력 강화	① 업무 시스템 고도화 ② 고용-정신건강 연계 지원 강화 ③ 협업 교육 강화 ④ 통합사례관리 강화 및 협의체 상호참여 확대

자료: 관계기관 합동,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 2024.6.27.

104) 2024년 3월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국민입장에서 해결이 시급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협업과제 11개”를 선정하였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상호 금융감독 협업체계 구축’의 2개 과제의 주관부처로 선정되었다.

105)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이 이루어지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지원 상담이 이루어지는 고용복지센터의 업무연계를 통해 ‘금융·고용 복합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용복지 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 출장소를 설치하고, 상담직원 교육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정책서민금융상품 보증료 인하 등을 추진하였다. (자료: 관계부처 합동,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2024.1.24.)

첫째, 정부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으로 취약계층의 금융 여건이 개선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간 연계 고도화를 통해 '예방적 금융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이 나온 배경은 그간 금융·고용·복지 지원이 부처별로 운영되어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서민·취약계층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지속되었다는 데 있다. 이에 범정부 차원에서 서민·취약 계층의 복합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고용·복지를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주요 추진 경과 (요약)]

- (24.1월) 금융위·노동부 MOU 체결,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발표
- (24.4월) 범부처 협업조직 복합지원팀 출범
- (24.6월) 금융-고용에 복지까지 연계하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 발표
- (24.12월) 복합지원 1주년 성과점검 및 「복합지원 고도화 방안(복합지원2.0)」 발표
- (25.3월) 「복합지원 현장 운영 내실화 방안」 발표 및 현장 간담회 개최
- (25.4월) 금융위-부산·광주 복합지원 업무협약 체결로 '찾아가는 복합지원' 개시
- (25.8월) 복합지원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 (25.9월) 금융위-전북도 복합지원 업무협약 체결

자료: 관계기관 합동, 「2026 복합지원 힘이 되는, 희망을 잇는 연계」, 2025.12.16.

2024년 3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전산 연계가 개시되어, 금융-고용 연계가 증가하였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복합지원 인원은 2024년 7.8만 명에서 2025년 13.8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인원]

(단위: 명)

구분	2024년	2025년(3분기)	누적
복합지원 인원(a+b)	78,379	137,616	215,995
금융-고용 연계 인원(a)	19,877	57,555	77,432
금융-복지 연계 인원(b)	58,502	80,061	138,563
금융-고용-복지 연계 인원	6,292	24,907	31,199

자료: 관계기관 합동, 「2026 복합지원 힘이 되는, 희망을 잇는 연계」, 2025.12.16.

그리고 복합지원 도입 취지에 따라 무직·비정규직, 연 소득 2,500만 원 이하 등의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되었다. 그리고 금융-고용-복지 복합 지원자를 분석한 결과 비이용자에 비해 고금리 대부 잔액이 전반적으로 감소했고, 연체자 비중 및 채무조정 실패자 비중도 전반적으로 낮았다고 한다.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이용자 중 취약계층 비율]

구분	무직·비정규직 비율				소득 취약계층 비율			
	복합지원 前	→	복합지원 後	복합지원 前	→	복합지원 後		
금융-고용	56%	(1,298명)	79%	(59,033명)	75%	(1,734명)	80%	(59,718명)
금융-복지	62%	(15,258명)	68%	(77,249명)	78%	(18,955명)	76%	(86,942명)

자료: 관계기관 합동, 「2026 복합지원 힘이 되는, 희망을 잇는 연계」, 2025.12.16.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이용자 금융 여건 변화]

구분	非복합지원	복합지원		
	금융 단독	금융-고용	금융-복지	금융-고용-복지
고금리 대부잔액	△33.9%	△37.5%	△30.0%	△44.4%
3회 이상 연체자 비중	10.3%	5.5%	8.8%	5.2%
채무조정 실패자 비중	4.9%	2.0%	4.2%	1.8%

주: 1. 고금리 대부잔액: 대부업권 대출액, 저축은행 신용대출액, 장기간카드대출액 등(평균금리약 18%/年 이상)

2. 채무조정 실패자: 변제 계획 3개월 이상 미이행 등의 사유로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자

자료: 관계기관 합동, 「2026 복합지원 힘이 되는, 희망을 잇는 연계」, 2025.12.16.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금융·고용 복합지원을 위한 업무 연계 전산망을 구축하고 복합지원이 필요한 민원인의 연계 및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그러나 금융·고용 지원제도가 복잡해 현장에서 즉각적인 상담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서민금융·채무조정제도 매뉴얼 제작·배포, 센터 간 출장 상담 창구 설치 및 인력 교류, 상호 간 교육 등으로 복합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연계·협력을 도모해왔다.

하지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수에 비해 기관 간 상호 인력파견 출장소 운영이 다소 미미하고¹⁰⁶⁾, 상담 인력의 금융·고용 제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도 온라인 교육에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복합지원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혜택이 한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인센티브 발굴은 필요해 보인다¹⁰⁷⁾.

106)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서민금융지원센터 간 출장소는 상시적이지 않고 주 1회 정도 운영되고 있다.

107) 서민금융진흥원은 공공데이터 21종을 복합지원에 도입해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상담을 제공하고, 복합지원 연계 매뉴얼을 배포하여 상담 소요시간을 크게 감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연계·협업 활성화를 위한 고용노동부 추진사항]

- (오프라인 연계·협업) 고용서비스 및 서민금융의 복합지원 활성화를 위해 '24.3월부터 기관 간 상호 인력운영(상주 및 출장근무 형태) 고용→금융 13개소, 금융→고용 18개소(26.4. 기준)
- (온라인 연계·협업) ①업무연계 전산망(워크플러스)을 활용해 복합지원이 필요한 민원인 연계 및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24.3월), ②고용·금융 간 양방향 온라인 연계시스템 구축·고도화(24.8월)
- (제도정비 및 복합지원자 혜택)
 - (고시 개정)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2유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유형(취약계층)을 추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 면제(24.2월)
 - * 정책서민금융 이용확인서 발급건수: ('24) 2,454건 → ('25) 5,458건
 - *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국취제도 참여자: ('24) 353명 → ('25) 476명
 - (금융부담완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시 서민금융상품 보증료 인하(24.3월), 채무조정이 확정된 중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체납보험료 일부(50만원) 지원(26년 시행 예정)
- (상담사 교육) 서민금융제도의 이해를 위해 관련 교육과정(온라인, 22개 과정)을 노동부 교육포털에 탑재·운영 중(24. 3월)

자료: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센터수	인력	센터수	인력		센터수	인력	센터수	인력
서울	6	91	11	1,006	강원	4	28	7	176
인천	2	34	3	244	경북	4	25	9	250
대전	1	24	1	150	경남	3	25	10	303
대구	2	31	5	272	충남	3	16	6	176
부산	3	55	4	347	충북	2	18	5	143
울산	1	12	1	100	전북	3	22	7	203
광주	2	28	2	170	전남	2	16	5	121
세종	-	-	1	24	제주	1	10	1	79
경기	11	130	24	1,143	합계	50	565	102	4,907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 부처 간 협업을 통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으로 취약계층의 금융 여건이 개선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복합지원을 위한 업무인력연계 및 상담 인력 교육 강화, 복합지원 연계 혜택 확대 등을 지속하여 성과 창출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취약계층의 서민금융제공, 채무조정지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증설과 상담 인력의 증원에 앞서 지역별 상담 인력 재배치, 상담 인력 역량 강화, 상담 서비스 편의성 강화 등을 우선 시행하고 이후 상담센터와 상담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서민금융지원법 제29조의2(108)에 근거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홍보 및 안내 등을 맡고 있다. 센터는 서민금융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2(109)에 따라 센터장 1명과 전문인력 1명 이상을 두고 운영해야 한다.

같은 법률에 근거하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역별 센터를 배분하여 개별 운영하고 있다. 각 기관에서 담당 센터의 운영 예산을 부담하되, 기관별 인력이 함께 근무하는 형태이다.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를 두고 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센터는 50개, 총 근무 인원은 565명이다. 2025년 기준 상담 건수는 연간 76.3만 건에 이른다.

10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센터(이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진흥원
 2.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② 제1항에 따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2.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3. 그 밖에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등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방법) ①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서민의 금융생활 및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이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1. 센터장 1명과 서민의 금융생활 및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두어 운영할 것
2. 서민의 금융생활 및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의 지원 실적을 기록·관리할 것
3.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운영기준을 준수할 것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건수 현황]

(단위: 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상담 건수	2,046	17,490	72,993	219,404	143,304	171,594	516,384	550,093	763,326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총 50개 지역 센터 중 신용회복위원회가 26개, 서민금융진흥원이 24개를 맡고 있다. 총 근무 인력 565명 중 신용회복위원회 333명, 서민금융진흥원 142명이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2025년 기준 최소 292.2억 원에 달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수, 상담 건수 및 인력 현황(2026년 3월 현원 기준)]

(단위: 개, 명)

구분	센터 수			상담 건수	센터 인력 현황						
	신복위	서금원	합계		신복위		서금원		미소 금융	기타	
					계약직	계약직					
서울	6	4	2	174,758	91	57	12	25	13	9	0
인천	2	1	1	86,494	34	19	2	11	5	4	0
대전	1	0	1	33,223	24	14	2	4	1	1	5
대구	2	1	1	38,927	31	22	2	7	4	2	0
부산	3	2	1	68,119	55	37	6	13	6	5	0
울산	1	1	0	7,155	12	8	1	2	1	2	0
광주	2	1	1	24,851	28	14	3	9	4	5	0
경기	11	6	5	151,059	130	76	13	31	15	23	0
강원	4	2	2	28,505	28	14	4	7	3	7	0
경북	4	2	2	25,468	25	12	4	7	4	6	0
경남	3	1	2	28,365	25	15	4	6	3	4	0
충남	3	1	2	26,467	16	11	3	4	1	1	0
충북	2	1	1	19,610	18	10	2	4	2	4	0
전북	3	1	2	21,693	22	9	3	6	3	7	0
전남	2	1	1	15,246	16	9	2	4	2	3	0
제주	1	1	0	13,386	10	6	1	2	1	2	0
합계	50	26	24	763,326	565	333	64	142	68	85	5

주: 신복위는 신용회복위원회, 서금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을 의미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비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신용회복위원회	인건비	18,369	17,884	19,100	22,102	23,754
	임대료	1,795	1,887	2,111	2,297	2,412
	관리비	1,371	1,435	1,579	1,714	1,765
	수도·광열비	62	78	113	124	135
	소계	21,597	21,284	22,903	26,237	28,066
서민금융진흥원	경상운영비	-	-	78	150	280
	임대료	282	401	620	711	879
	소계	282	401	698	861	1,159
합계	21,879	21,685	23,601	27,098	29,225	

주: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상운영비는 미산출,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인건비는 미산출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는 2026년 업무계획에서 채무조정 수요가 많은 지역에 5개 센터 증설과 상담 인력 60명, 지원인력 15명 등 75명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새도약기금 출범으로 장기연체자 상담 수요와 자영업자·소상공인,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취약계층 종합지원 상담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수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	2025	2026안	증감
센터수	33	42	45	50	...	50	55	+5
센터인력	149	157	179	210	...	326	431	+60

주: 서민금융진흥원 인력 제외, 신용회복위원회 소속 인력 현황(연도별 연말 기준), 2026안은 미확정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2022년 이후 매년 연체자가 증가하면서 센터 방문 상담과 채무조정 신청자가 함께 증가하고 있어 효과적인 상담 수요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지역별 상담 수요와 지역별 접근성 등을 고려할 수 있지만, 각 센터당 상담 인력에 있어 계약직 비율, 신용상담사 비율에 센터 간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50개 센터당 상담 인력은 평균 11.3명인데, 서울, 경기와 광역시 센터는 평균 16.0명, 그 외 지역의 광역지자체는 센터당 평균 7.7명에 불과하다.

충남은 센터 인원이 평균 5.3명으로 가장 적지만, 인원당 평균 상담 건수는 1,654건으로 대전(평균 24.0명, 1,384건), 부산(평균 18.3명, 1,239천건), 대구(평균 15.5명, 1,256천건) 보다 많다. 이처럼 일부 지자체는 센터 수, 인력이 적지만 계약직 인력 비율은 높고, 전문인력 수가 적어 상담 품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인력 및 상담건수 현황]

(단위: 개, 건, 명, %)

구분	센터 수			센터인원당 평균 상담건수	센터 인력 구성 현황					
	신복위	서금위	센터별 상담건수		센터 총인원		계약직		신용상담사	
					센터별 인원	비율	센터별 비율	비율		
서울	6	4	2	1,920	91	15.2	25	28.0	39	41.8
인천	2	1	1	2,544	34	17.0	7	21.8	16	45.4
대전	1	0	1	1,384	24	24.0	3	12.5	9	37.5
대구	2	1	1	1,256	31	15.5	6	22.1	13	41.4
부산	3	2	1	1,239	55	18.3	12	23.0	26	44.1
울산	1	1	0	596	12	12.0	2	16.7	5	41.7
광주	2	1	1	888	28	14.0	7	26.0	7	21.9
경기	11	6	5	1,162	130	11.8	28	22.8	55	42.1
강원	4	2	2	1,018	28	7.0	7	26.4	9	27.1
경북	4	2	2	1,019	25	6.3	8	32.6	8	28.6
경남	3	1	2	1,135	25	8.3	7	28.9	10	35.6
충남	3	1	2	1,654	16	5.3	4	38.9	8	36.1
충북	2	1	1	1,089	18	9.0	4	40.0	8	40.0
전북	3	1	2	986	22	7.3	6	30.5	5	15.2
전남	2	1	1	953	16	8.0	4	25.4	7	45.2
제주	1	1	0	1,339	10	10.0	2	20.0	5	50.0
합계	50	26	24	1,351	565	11.3	132	26.0	230	37.1

주: 1. 센터별 계약직 비율과 센터별 신용상담사 비율은 50개 센터의 산술평균값임

2. 상담건수는 2025년 기준, 센터 인력 현황은 2026년 3월 기준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인력 운영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

(단위: 개, 명)

구분	센터별 평균 인원	센터별 평균 계약직 비율	센터별 평균 신용상담사 비율
서울, 경기, 광역시	16.0	21.6	39.5
기타 광역지자체	7.7	30.3	34.7
전체 센터	11.3	26.0	37.1

주: 서울, 경기, 광역시(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와 기타 광역지자체(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로 구분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방식은 전면 예약제 도입으로 사전에 상담할 수 있는 일자와 시간을 예약하고 직접 방문해야 한다. 직접 방문 상담방식 외에 비대면 전화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와 서민금융진흥원(1397)이 다른 번호로 운영되고 있고, 온라인과 모바일 앱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기관별로 서비스하며 메뉴 소개, 상담 신청 정도에 그치고 있다¹¹⁰⁾. 센터 직접 방문 상담은 제한된 상담 인력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고,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생계유지로 인해 평일 근무 시간 방문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¹¹¹⁾.

[신용회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상담 방식 현황]

구분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센터방문 상담	전면 예약제(전화 또는 모바일로 예약 후 방문)	
전화상담	1600-5500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
온라인 및 모바일앱 상담	상담은 불가능. 채무조정 방문상담신청, 소액대출 신청, 신용복지건설링 신청 등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와 서민금융진흥원 앱(잇다)를 통해 1:1채팅상담, 보증부대출 및 복지지원 신청 등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지역 센터 증설과 상담 인력 증원을 우선하기보다는 센터의 지역별 수요와 업무량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센터의 인력 재배치, 야간·휴일 방문 상담을 통해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상담 전화, 온라인·모바일 상담 기능을 통합하고, 간단한 상담은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등 효과적인 상담 서비스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신용회복위원회 비대면 상담 서비스 확대 계획]

- 핀테크사와 연계 강화를 통한 신용상담 활성화('26년 중)
- 사이버상담부 바로상담 상시 운영('26.2분기)
- 소액금융 대면/비대면 균형지원 강화('26.3분기)
- 콜센터를 통한 비대면 업무처리 범위 확대('26.하반기)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110) 서민금융진흥원은 상담 앱을 통해 고용, 복지, 채무조정 분야의 비대면 복지지원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구현하여 평일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111) 방문 상담 시간과 요일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야간 상담이나 휴일 상담이 없어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방문 상담하는데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최근 우리 경제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이른바 '3고(高)' 현상이 지속되면서 서민 경제의 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가계 및 자영업자, 다중채무자와 저신용자 등의 누적된 부채는 금리 인상기와 맞물려 채무 상환의 어려움이 증가하면서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전이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포용적 금융 정책 차원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 범위와 지원내용을 강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등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분석 결과 정부의 채무조정제도 설계와 운영체계의 미흡으로 취약계층과 장기연체 채무자에 대한 당초 계획 대비 지원 실적은 다소 미흡했다. 장기간 연체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에 대부업권 등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도 부족하였다. 그리고 정부가 한시적인 특별 채무조정을 반복하면서 일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지속 관리할 필요성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포용적 금융 정책 실현 관점에서 채무조정제도의 주요 분석 결과와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정부는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 활동 복귀를 위해 채무조정의 채무 감면율과 상환 기간의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늘어난 채무부담을 고려하여 '취약 채무자 특별면책 제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이후 서민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은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한 평균 채무 감면율은 2021년 이후 큰 변동이 없었으며, 평균 채무 상환 기간은 2018년 78.8개월에서 2025년 90.3개월까지 증가했다.

특히 2030 청년층은 학업비와 주거비 마련, 자산 투자 과정에서 과도한 부채를 짊어지게 된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취약 채무자 특별면책 제도'에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 등에게만 국한하고 있어, 신속한 경제적 재기 의욕이 높은 청년층은 이 제도에 제외되어 있다.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가 청년층에게 3년의 변제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 기간을 단축하거나 청년 특례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경제적 활동 복귀를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채무조정 이후 성실 상환 중인 청년층에게 7년이 넘는 장기 상환 기간을 단축하여 결혼, 출산, 취업 등 생산적인 경제 활동 복귀를 돕는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채무감면 비용보다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보인다.

둘째, 정부는 채무조정 대상에 금융 채무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및 비금융 채권까지 포괄하는 통합 채무조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채무자의 주거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채무조정 이용자는 금융 채무만 연체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 통신비, 수도·전기요금 등 기초 생활과 직결된 공공요금 등도 약 40% 가량이 체납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은 채무조정 이후에도 체납된 공공요금으로 공공서비스 이용이 제약되어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나 현행 채무조정 대상이 금융기관 대출에만 집중되어 있고 최근 통신비, 전기요금 등이 일부 포함되었지만, 건강보험료, 수도요금, 세금 등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은 관련 법률과 조례 개정이 우선 필요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재정 악화 등이 면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관계 부처, 지자체 간의 협업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 과정에서 국세와 지방세, 사회보험료 등에 대한 감면과 분할 납부 혜택 등의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중장기적으로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는 비금융채권과 공공요금, 세금에 대한 합리적인 채무조정 방안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최근까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서민의 주거 안정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의 지원 실적은 극히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서민들이 주거지를 잃고 거리로 내몰지 않도록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에 금융회사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전향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규정한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회수 가능성이 낮은 개인금융부실채권이 적기에 조정·정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2024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이후 개인 채무자의 금융회사 채무조정율은 평균 5.92%로 아직은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채무조정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추가 관리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자체 채무조정보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의존하는 편이며,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지원 내용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차별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회사는 신용회복위원회 중심의 채무조정에서 벗어나 원채권자인 금융회사의 특성과 채무자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 중심의 개인 채무조정 체계에서 벗어나 개인 채무자 연체 관리에서부터 채무조정까지 금융회사의 선제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다중채무자와 취약계층 등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채무자조정을 보완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5년말 기준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부실채권이 44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 채무자의 93.2%가 3천만원미만, 5년 이상 연체 채권이 23.4%에 달하고 있지만 소각과 매각은 소극적으로 이행되고 있다. 공공기관은 개인금융부실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상각처리하고 소각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신속히 매각하는 등 공공 부문이 먼저 개인금융부실채권의 정리를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민간 금융권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부는 채무조정으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되 일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채무자 상환능력에 대한 정교한 심사체계를 구축하고, 대부분의 성실 상환자에게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균형있고 공정한 채무조정제도가 운영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등의 특별 채무조정이 빈번해질수록 '빚을 안 갚아도 정부가 해결해 준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 그리고 일부 채무자의 경우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가상자산 등 확인이 어려운 자산으로 은닉할 가능성이 확

인되었다. 이러한 일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는 성실하게 빚을 갚아 나가는 대다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어 정교한 채무조정 심사 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채무조정의 초점을 무조건적인 채무원금 감면보다는 채무자 여건을 고려하여 상환부담을 낮추어 '성실 상황'에 중점에 두고 일정 기간 이상 꾸준히 빚을 갚는 채무자에게는 금리 인하폭을 확대하거나 신용 점수 회복을 앞당겨주는 인센티브 제공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고의적인 연체나 재산 은닉이 발견될 경우 즉시 채무조정을 취소하고 강력한 패널티 부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채무조정제도가 단순히 채무감면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엄격한 사후 관리를 통해 공정한 채무조정제도로 운영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금융취약계층 지원 채무조정제도 운영 평가

발간일 2026년 6월 30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편 집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 · 2070 · 3114)
인쇄처 (주)디자인여백플러스(tel 02 · 2672 · 1535)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9-11-6799-258-1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6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86-002305-01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